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71-01

연 구 보 고 서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26-12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Institutional reform of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Corps

연구책임자: 이 규 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5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vi

Abstract ····· xv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Ⅰ. 연구의 배경 ····· 3

Ⅱ. 연구의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 방법 ····· 6

1. 국내외 문헌 및 정책보고서 분석 ····· 6

2. 법관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 7

3. 비교법적 분석, 시사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 7

제2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 및 현황 ····· 9

제1절 연혁 및 운영 근거 ····· 11

Ⅰ. 서설 ····· 11

Ⅱ. 연혁 ····· 12

1. 1988년 가칭 '법원경찰대' 설치 법안 제출 ····· 12

2.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법원경찰대 창설 검토 ····· 13

3. 인적 구성 ····· 13

가. 법정방호 ····· 14

나. 청사방호 ····· 14

4.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 14

가. 법원조직법 개정(2005. 12. 23. 법률 제7730호) ····· 14

나. 채용 및 교육 · 훈련 ····· 15

5.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 변경 ····· 16

가. 법원보안관리대(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12188호) ····· 16

나. 인적 구성 ····· 16

Ⅲ. 설치 및 운영의 근거 ····· 16
1. 헌법 ····· 16
2. 법원조직법 ····· 17
3. 대법원 규칙 ····· 19
4. 대법원 예규 ····· 21
5. 기(旗)에 관한 예규 ····· 23
6. 보고지침 ····· 23
Ⅳ. 보안관리 권한의 근거 ····· 24
1. 법정경찰권(법정질서유지권) ····· 24
가. 근거 ····· 25
나. 내용 ····· 26
2. 청사관리권 ····· 27
가. 근거 및 지휘체계 ····· 27
나. 내용 ····· 29
3. 권한의 범위 ····· 30
가. 시간적 범위 ····· 30
나. 장소적 범위 ····· 30
제2절 운영 현황 ····· 32
Ⅰ. 인적 구성 및 근무 현황 ····· 32
1. 인적 구성 ····· 32
가. 직렬 구성 내력 ····· 32
나. 구성원 ····· 33
2. 근무 현황 ····· 35
가. 직렬별 근무 인원 ····· 35
나. 업무별 근무 인원 ····· 37
Ⅱ. 물적 설비 현황 ····· 41
1. 개요 ····· 41
2. 보안장비 및 운용 매뉴얼 ····· 42
가. 전국 법원 보안장비 현황 ····· 42
나.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 ····· 45
3. 유형력 행사 기준 ····· 46
4. 물적 설비 현황 분석 ····· 46
Ⅲ. 제복 ····· 47
1. 현황 ····· 47
가. 대원복 상의 ····· 48
나. 대원복 하의 ····· 49

다. 대원복 재킷 ····· 50
라. 모자와 넥타이 ····· 51
마.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 52
바.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 ····· 53
2. 착용 모습 ····· 54
가. 하복, 춘추동 · 하복 재킷,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 54
나. 춘추 · 동 점퍼, 춘추 · 동복 ····· 55
3. 지급 방법 ····· 55
제3절 사건 · 사고 발생 및 대처 현황 ····· 56
Ⅰ. 사건 현황 및 분석 ····· 56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현황 ····· 56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발생 비율 ····· 57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발생 건수 추이 ····· 57
4. 대표적 주요 사례 ····· 58
가.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폭언, 욕설 ····· 58
나. 재판 진행 중 소송관계인 등에 대한 폭언, 폭행 ····· 59
다. 법정에서 무단 녹음 및 녹화 행위 ····· 60
라. 청사 내 각 실 · 과 사무실 등에서 소란 ····· 61
마. 법정구속 시 도주행위 ····· 61
5. 사건 분석 ····· 62
Ⅱ. 대처 현황 및 분석 ····· 63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 63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처리 결과 비율 ····· 64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추이 ····· 64
4. 결과 분석 ····· 65
Ⅲ. 법정 외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현황 및 조치 ····· 65
Ⅳ. 형사처벌 사례 ····· 66
1. 개요 ····· 66
2. 주요 사례 ····· 66
3. 사례 분석 ····· 73
제4절 청사방호 대책 현황 ····· 75
Ⅰ. 2016년 안전한 근무환경 TFT ····· 75
1. 배경 ····· 75
2. 대책 및 성과 ····· 75
Ⅱ. 2019년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T ····· 76

1. 배경 ····· 76
2. 대책 및 성과 ····· 76
Ⅲ. 2023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 77
1. 배경 ····· 77
2. 대책 및 성과 ····· 77
Ⅳ. 2024년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 78
1. 배경 ····· 78
2. 대책 및 성과 ····· 78
Ⅴ. 소결 ····· 78

제3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문제 ····· 81

제1절 조직운영상 비효율성 ····· 83
Ⅰ. 직렬 구성의 다원성 ····· 83
1. 법원경위 ····· 83
가. 법원조직법상 법정 사무 집행기관 ····· 83
나. 형사소송법상 권한 ····· 84
2. 방호원 ····· 85
3. 청원경찰 ····· 85
가. 제도 개관 ····· 85
나. 직무 범위 ····· 86
Ⅱ.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 87
1. 직렬 상호 간 업무 불균형 ····· 87
2.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 업무 ····· 88
3. 승진 불균형으로 인한 지휘체계의 취약성 ····· 89
4. 인터뷰 내용 ····· 90
Ⅲ.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 91
1. 지휘 · 감독 체계 ····· 91
2. 업무관리 · 감독 체계 ····· 92
가.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 ····· 92
나. 비상계획 업무와 법원보안관리 업무 ····· 93
3. 인터뷰 내용 ····· 94
Ⅳ. 분석 ····· 95
제2절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 ····· 96
Ⅰ. 근거 및 기준 ····· 96

1. 근거 ····· 96
2. 기준 ····· 96
3.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비교 ····· 97
Ⅱ. 요건의 불명확성 ····· 102
1. 포괄적 규정 ····· 102
2. 경찰청과 비교 ····· 103
가. 규칙 제정(경찰청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 103
나. 3대 원칙 ····· 103
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 ····· 104
3. 인터뷰 내용 ····· 106
Ⅲ. 분석 ····· 108
제3절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및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 109
Ⅰ.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 109
1. 법정경찰권의 한계 ····· 109
2. 청사관리권의 한계 ····· 110
3. 인터뷰 내용 ····· 110
Ⅱ.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 112
1. 구조적 한계 ····· 112
가. 사건 대응형 TFT ····· 112
나. 책임부서의 필요 ····· 112
2.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 112
가. 시설물 확충에 집중 ····· 112
나. 제도 개선 방안 필요 ····· 113
제4절 제복 ····· 113
Ⅰ. 의미 ····· 113
1. 제복 디자인의 구성요소 ····· 114
가. 상징성 ····· 114
나. 기능성 ····· 114
다. 심미성 ····· 114
2. 착용 효과 ····· 115
Ⅱ. 대한민국 경찰 제복 ····· 115
1. 서설 ····· 115
2. 변천 ····· 115
3. 제복 개선 ····· 116
Ⅲ.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 117

1. 인터뷰 내용 ····· 117
2. 개선 요청 의견 ····· 118
Ⅳ. 분석 ····· 118

제4장 외국 법원 및 국내 기관의 보안조직 현황 ····· 121

제1절 서론 ····· 123
제2절 주요국 법원 보안조직 현황 ····· 124
Ⅰ. 미국 ····· 124
1. 현황 ····· 124
가. 연방법원의 보안담당기관 ····· 124
나. 연방마샬(U.S. Marshals Service) ····· 124
다. 보안장비 ····· 126
라. 유형력 행사 ····· 127
마. 미국 법무부 부서 공통 유형력 사용 정책 ····· 130
2. 시사점 ····· 132
Ⅱ. 영국 ····· 133
1. 현황 ····· 133
가. 잉글랜드 · 웨일스 ····· 133
나. 사법절차와 법원 운영에 관한 법률(Courts Act 2003) ····· 135
2. 시사점 ····· 136
Ⅲ. 독일 ····· 137
1. 현황 ····· 137
가. 법정보안관리대 ····· 137
나. 권한체계의 법적 근거 ····· 140
다. 유형력 행사의 근거 ····· 141
라. 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 147
마. 유형력의 행사 요건 ····· 148
바. 비례성의 원칙 ····· 149
사. 사법경찰적 권한 행사 ····· 150
2. 시사점 ····· 150
Ⅳ. 일본 ····· 151
1. 현황 ····· 151
가. 법정 및 청사보안 업무 ····· 151
나. 유형력 행사 수단 ····· 153

2. 시사점 ····· 154
제3절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 현황 ····· 155
Ⅰ. 국회 ····· 155
1. 방호체계 ····· 155
가. 국회경위직 ····· 155
나. 국회방호직 ····· 156
다. 국회경비대 ····· 156
2. 임무 및 권한 ····· 156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57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58
Ⅱ. 행정부(중앙행정기관 · 정부청사) ····· 158
1. 방호체계 ····· 158
2. 임무 및 권한 ····· 159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59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0
Ⅲ. 헌법재판소 ····· 160
1. 방호체계 ····· 160
2. 임무 및 권한 ····· 161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61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2
Ⅳ. 검찰청 ····· 162
1. 방호체계 ····· 162
2. 임무 및 권한 ····· 163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 163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 163
Ⅴ.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이 주는 시사점 ····· 164
1. 법적 근거 마련 ····· 164
2. 유형력 행사 규정의 구체성 ····· 166
3. 비상대비와 청사보안 업무의 조직 분리 ····· 168

제5장 개선방안 ····· 171

제1절 법원경찰대 도입 방안 ····· 173
Ⅰ. 서설 ····· 173
Ⅱ. 도입 시 제반 검토사항 ····· 174

1. 권력분립의 문제 ····· 174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 175
가. 제도 배경 ····· 175
나. 사법경찰권 부여 ····· 175
다. 특징 ····· 176
라. 수사권 ····· 176
3. 신변보호 조치 규정 도입 ····· 177
4.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 178
5.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 178
가. 경찰원조의 실질화 ····· 179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집행원조 ····· 179
6. 지휘체계 구성 ····· 180
가. 지휘체계 ····· 180
나. 정책 총괄부서 ····· 180
7. 인권침해 방지 및 부당소송 지원 대책 마련 ····· 180
가. 인권침해 방지 ····· 180
나. 부당소송 및 고소 · 고발로부터 대응 ····· 181
8. 인터뷰 내용 ····· 182
Ⅲ. 도입 방안 ····· 184
1. 수사권 포함 여부 ····· 184
2.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 185
3.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여부 ····· 186
4. 청원경찰의 증원 배치 방안 ····· 187
Ⅳ. 소결 ····· 188
제2절 조직운영상 개선방안 ····· 190
Ⅰ. 다원적 구성원의 통합 ····· 190
1. 기능적 통합 ····· 190
가.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 ····· 190
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 ····· 194
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 195
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 196
2. 직렬 간 정원 통합 ····· 196
가. 직렬 통합 ····· 196
나. 인터뷰 내용 ····· 198
다. 직급 간 정원 조정 ····· 199
Ⅱ.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의 체계화 ····· 200

1. 지휘계통의 체계화 ····· 200
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 필요성 ····· 200
나. 전임제 법원보안관리대장 및 부대장 설치 ····· 200
다. 인터뷰 내용 ····· 202
라.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 ····· 202
2. 업무관리의 체계화 ····· 204
가. 의미 ····· 204
나. 인터뷰 내용 ····· 204
다. 개선 방안 ····· 205
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07
3. 소결 ····· 211
제3절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 마련 ····· 212
Ⅰ.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 ····· 212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212
2. 인터뷰 내용 ····· 213
3. 규정 사항 ····· 214
가. 청사관리권의 장소적 범위 확장 ····· 214
나. 제2조 정의 ····· 215
다. 제3조 적용범위 ····· 216
라. 제4조 권한행사의 기본원칙 ····· 216
마. 직무 범위의 정비 및 추가 ····· 216
바. 보안장비의 사용 ····· 217
사. 보호장비의 사용 ····· 218
아. 직무질문 ····· 219
4. 제정안 제안 ····· 221
Ⅱ.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 ····· 224
1. 제정 취지 ····· 224
가. 제정의 목적 ····· 224
나. 제정의 필요성 ····· 225
다. 기본 방향(핵심 원칙) ····· 225
라. 주요 내용 ····· 225
마.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차별성 ····· 226
2. 제정안 제안(1안)
–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 227
3. 제정안 제안(2안)
– 현행 법원조직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 238

가. 대법원 규칙 제정권 ····· 238
나. 범위 ····· 238
다. 주요 내용 ····· 238
제4절 제복의 개선 ····· 247
Ⅰ. 고려사항 ····· 247
1. 제복 개선의 판단 기준 ····· 247
2. 인터뷰 내용 ····· 248
Ⅱ. 국내 기관별 제복 개선 사례와 시사점 ····· 249
1. 개선 사례 ····· 249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 249
나. 소방공무원 제복 재질 개선 연구용역 ····· 249
다. 해양경찰청 ····· 249
2. 시사점 ····· 250
Ⅲ. 제복 개선의 추진방향 ····· 250
1. 기본방향 ····· 250
2. 단계적 추진 방안 ····· 251
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행 ····· 251
나. 업무별 조건 및 근무환경 분석 ····· 252
다. 디자인과 소재의 구성 ····· 252
라. 의견수렴 절차 ····· 252
3. 추진의 우선순위 ····· 253

제6장 결론 ····· 255

참고문헌 ····· 260

표 목차

[표 1]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급별 인원 현황(명) [2025. 7. 1. 기준] ····· 32
[표 2] 전국 고등법원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 37
[표 3] 전국 주요 지방법원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 38
[표 4] 전국 지방법원 주요 지원의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 40
[표 5] 공용장비 현황 [2025. 8. 31. 기준] ····· 42
[표 6] 개인장비 현황 [2025. 8. 31. 기준] ····· 44
[표 7]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 ····· 45
[표 8] 유형력 행사 기준 ····· 46
[표 9] 대원복 상의 ····· 48
[표 10] 대원복 하의 ····· 49
[표 11] 대원복 재킷 ····· 50
[표 12] 모자와 넥타이 ····· 51
[표 13]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 52
[표 14]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 ····· 53
[표 15]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현황(건) ····· 56
[표 16]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건) ····· 63
[표 17] 지휘감독 체계 및 근거 ····· 91
[표 18]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93
[표 19]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유형력 행사 비교 ····· 98
[표 20] 경찰청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식표 ····· 104
[표 21] 대상자 행위에 따른 단계별 물리력 수단 및 대응수준 ····· 105
[표 22] 독일 법원보안 관련 권한 체계표 ····· 140
[표 23] 법원조직법 개정안 ····· 194
[표 24] 형사소송법 개정안 ····· 196
[표 25]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 ····· 203
[표 2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08
[표 27]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21
[표 28]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1안) ···· 227
[표 29]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2안) ···· 239

그림 목차

[그림 1] 공용장비 사용 모습 ····· 43
[그림 2] 개인장비 사진 ····· 44
[그림 3] 하복, 춘추동 · 하복 재킷,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착용 모습 ····· 54
[그림 4] 춘추 · 동 점퍼, 춘추 · 동복 착용 모습 ····· 55
[그림 5]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발생 비율(%) ····· 57
[그림 6]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발생 건수 추이 ····· 57
[그림 7]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처리 결과 비율(%) ····· 64
[그림 8]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추이 ····· 64
[그림 9] 경찰관 근무복 변천과정 ····· 116

국문 요약

이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현황과 법적 · 조직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조직운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과 설치 · 운영 근거, 보안관리 권한 및 실제 운영 실태(인력 · 장비 · 제복 · 사건대응)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문제(조직운영상 비효율, 유형력 행사 기준의 불명확성, 보안관리 권한 및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 제복 · 장비 운용상의 비효율)를 분석한 뒤, 주요국 법원 보안조직과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체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선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부터 중 ·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계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에 관한 실태 진단 결과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직렬 구성의 다원성으로 인한 사무분담의 편차와 승진의 불균형이 현장 지휘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안업무가 비상대비 · 재난안전 기능과 통합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보안업무의 전문성 · 지속성 ·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안업무 전담 기능(정책기획 · 지휘 · 교육 · 평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형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현장대응이 방어적 · 소극적으로 흐르거나 사후책임 위험이 커져 초기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확한 규범 체계와 표준화된 절차 정비가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복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상징성, 직무수행의 기능성과 현장 안전을 함께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현장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단기 개선과 조직의 정체성과 근무유형을 반영한 중 · 장기적 재정비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4장의 국내외 비교검토에서는 주요국(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및 국내 기관(국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검찰청) 보안조직 운영현황의 분석을 통해 권한 부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형력 행사 기준을 단계화 · 세분화하며, 경찰을 비롯한 외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보안업무와 비상대비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 · 조정하는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이후 개선방안(조직 · 인력 · 지휘체계 정비, 유형력 행사 기준 명문화, 보안장비 체계 개선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종합하면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적 선택지로서 법원경찰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되 제도 설계의 난점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직렬 통합 및 인사 · 승진구조 개선을 통한 지휘체계 보강, 보안업무 전담부서 및 책임 있는 관리 · 감독 체계 확립, 유형력 행사 기준 · 절차 및 보안장비 사용기준의 규범화(법률, 규칙 등 다층적 정비), 교육훈련 · 사후평가 · 인권보호 장치의 체계화, 현장기능 중심의 제복 개선안 등 단계적 개선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보안의 예측 가능성 · 정당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균형 잡힌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법원조직법, 법원보안관리대, 법정경찰권, 청사관리권, 보안장비, 법원경찰대, 유형력 행사, 제복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Institutional reform of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Corps

Lee, Gyuheon
Research Officer, JPRI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Corps and its legal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s, and to present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for improvement so that the judiciary can respond effectively to the various security threats that have recently emerged in courtrooms and courthouse facilitie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organizes the Corps' history as well as the legal grounds for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scope of its security-related authority, and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s (personnel, equipment, uniforms, and incident response). It then analyzes the key issues identified in the course of operations—namely, inefficiencie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unclear standard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limitations in security authority and courthouse protection measures, and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uniforms and equipment. Based on a comparative review of court security organiz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the operational systems of relevant domestic institutions, the study derives implications and, on that basis, proposes feasible improvement tasks in a phased manner.

The diagnostic review finds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disparities in task allocation and imbalances in promotion opportunities arising from a fragmente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tructure may lead to vulnerabilities in on-site command

and control. In addition, where security functions are operated together wi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disaster safety functions, it may be difficult to secure the specialization, continuity, and accountability required for security work. Accordingly,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dedicated security functions, including policy planning, command, training, and evaluation. With respect to the use of physical force, although there are situations in courthouses and courtrooms in which the exercise of coercive power is unavoidable, if the relevant standards and procedures are not sufficiently specified, responses in the field may become defensive and overly passive, or ex post accountability risks may increase, thereby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initial response.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argues that a clear normative framework and standardize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It also notes that uniforms should be understood as an element that simultaneously affects the symbolic identity of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Corps, the functionality of duty performance, and on-site safety. Accordingly, it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pursue a differentiated approach consisting of short-term improvements centered on items that can alleviate practical inconvenience in the field, together with mid- to long-term reorganization reflecting the organization's identity and patterns of duty performance.

Through the comparative review of majo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nd domestic i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osecution), the study draws implications pointing toward clarifying the legal basis for granting authority, tiering and further detailing standard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institutionally designing cooperative frameworks with external agencies (particularly the police), and rationally separating and coordinating security func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These comparative findings are subsequently used as supporting grounds for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reorganizing structures related to organization, staffing, and command and control; codifying standard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improving the security equipment system).

A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judicial police unit as a long-term option,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difficulties of institutional design and practical constraints. In the short term, within the scope of the current system, it

proposes phased improvements, including: reinforcing the command structure through the integration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and improvements to personnel and promotion structures; establishing a dedicated security department and an accountabl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formaliz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standards for the use of security equipment through a multi-layered normative framework, including statutes and court rules; systematizing education and training, post-incident evalu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and improving uniforms with a focus on on-site functions. Through these measures, the study seek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legitimacy of courtroom order maintenance and courthouse security, an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swift and balanced on-site responses.

Keywords: Court Organization Act, Court Security Management Corps, court police powers, courthouse management authority, security equipment, judicial police unit, use of physical force, uniform

제1장

서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 연구의 배경

2025. 1. 19. 대규모 불법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한 뒤 청사 내부로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집무실을 찾아다니며 신변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 방화를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1)]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2)] 2024. 5. 9.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하던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3)] 등 최근 법원청사 및 법정 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건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를 포함하여 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적인 행동은 법원 앞 청사 인근과 법정 내부는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및 민원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법원청사 및 법정 내외에서 돌발 ·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극단화된 사회적 대립과 왜곡된 정치 팬덤 문화는 새로운 사법부 보안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4)]

법원은 재판의 독립과 공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동시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소송관계인, 법원 방문인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고 법정 및 청사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보안관리 업무가 단순한 시설경비나 출입자 검색 차원을 넘어 사법작용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적 기능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법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히 시설물의 확충이나 일시적 대

1) 중앙일보, '짓밟힌 법치주의' (2025. 1.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608 (2026. 3. 4. 최종확인).
2) KBS뉴스, '판사 눈앞에서 피고인 흉기피습, 법원 보안검색 구멍' (2024. 8. 28.), https://www.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5977 (2026. 3. 4. 최종확인).
3) 아이뉴스24, '경찰,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50대 유튜버 구속영장' (2024. 5. 10.), https://www.inews24.com/view/1718304 (2026. 3. 4. 최종확인).
4)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 '사법부 보안강화 검토' 내부보고서 (2025), 2 부분에서 일부 재구성.

응조치만으로는 법원보안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불법시위대의 법원 난입 및 방화 시도 사건은 통상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았던 유형의 사례들로서 과거에 비하여 엄중한 보안침해 상황으로 분류하여 청사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II. 연구의 필요성

법원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위협에 대하여 법령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판절차 진행을 통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법원청사 인근 및 법정 내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들로 그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 법원보안관리대 창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종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이 있으므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는 물론 사건 당사자, 피고인, 증인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일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원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025. 3. 11.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법원경비대법')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8783)하였다.[5] 개정안은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법원경비대 목적에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

5) 법조신문, '법관 신변보호를' 박희승 의원 (2025. 3. 11.), '법원경비대법' 대표발의, https://www.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3 (2026. 3. 4. 최종확인).

서의 직무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 법안의 입법 취지를 통하여 국회에서도 법원 보안업무의 중요성과 현재 법원 보안관리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보고서는 법원보안관리대 제도의 형성 배경과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사건 · 사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국내 기관 및 주요 외국 사례와 비교 · 분석한 후 조직, 인력, 장비, 규정(특히, 유형력 행사 기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 목적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과 설치 및 운영 근거(법령, 규칙, 예규)를 정리하고 인적 구성과 근무실태, 보안장비 및 매뉴얼, 유형력 행사 기준, 제복 등 물적 기반을 포함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법정 및 청사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그간의 청사 방호대책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 업무관리 측면의 핵심 문제로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사무분담의 편차 및 승진 불균형으로 인한 지휘체계의 취약성,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의 불명확성, 법정경찰권 및 청사관리권 권한 범위의 한계,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제복 운영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법원보안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외국법원 보안조직의 법적 근거, 권한체계,

보안장비, 유형력 행사 기준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국내 기관별 청사보안 및 경비업무의 운용체계와 현황 등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법원보안관리 권한의 핵심인 법정경찰권 및 청사관리권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 등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를 중 · 장기적 선택지로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원적 직렬구조의 기능적 통합 및 인력구조(정원 · 직급) 개선, 지휘체계 보강(독립직제 도입, 부대장 설치 등) 및 업무관리의 체계화, 유형력 행사 요건 · 기준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 ·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복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실태점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개선 가능한 품목부터 정비하고 필요시 추진단 운영 또는 TFT를 구성하는 등 제한된 예산과 행정역량 아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정책보고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 법관 및 실무담당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국내외 문헌 및 정책보고서 분석

국내외 법령 및 판례, 경찰, 행정, 보안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국 법무부, 영국 법무부, 독일 연방법무부, 일본 법무성 등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히 대법원보안관리대로부터 각종 보고서, 통계자료, 위기 대응 매뉴얼 등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담당관실의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 및 인원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법관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문헌 등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한 실무사례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재판장, 법원보안관리대장(총무과장), 재판참여관, 법원경위, 청원경찰, 보안관리주무관,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집행관, 경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을 인터뷰하고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비교법적 분석, 시사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의 제도운영 현황과 입법례를 분석하는 데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조사위원들과 협업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김성화 조사위원이, 독일은 양승욱 조사위원이 각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관련 논문 등을 조사하여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 기관별 방호체계 및 임무와 권한 등 보안조직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위협으로부터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지켜냄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판절차 진행을 통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 및 현황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혁 및 운영 근거

I. 서설

법원은 헌법상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의 안전과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절차는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방청객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상시적으로 출입하고 대면하는 공개적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폭언, 소란, 우발적 충돌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재판의 진행 자체가 지연·중단될 뿐만 아니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소송관계인, 방문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사법에 대한 신뢰에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기능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서는 법정질서 유지와 청사보안·경비를 전담하는 조직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법원보안관리대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의 질서유지와 위험 방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원 내부의 보안·경비 담당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법원보안관리대의 핵심적 의의는 법정·청사의 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 재판관계인과 방문자의 안전 확보, 재판 진행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재판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사법행정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은 단순한 시설경비를 넘어 재판절차의 특수성과 법원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질서유지, 현장대응, 위험관리 기능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법원 보안·경비 조직은 법원 내부의 수요와 제도적 논의를 거쳐 정비·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보안조직의 설치 및 권한 행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1월 2일부터 전국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되는 등 제도적 전환점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청사 내 급박한 위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 및 보안장비 사용과 관련된 권한 구조가 논의·정립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은 사법권의 독립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 · 인사 보장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외부의 위력이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 제도적 독립을 함께 전제로 한다. 법정 내 폭력 · 협박 또는 청사 내 안전위협이 반복되거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할 경우 재판의 자유로운 심리 · 진행이 사실상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적정한 권한 · 임무 설정과 운영체계의 정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법정질서 유지와 청사관리 등 보안관리 권한의 체계 속에서 보안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혁과 현황을 정리한 뒤 보안관리 권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법원보안관리대의 형성 과정을 연혁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어 인적 구성 및 명칭 · 조직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의 구조와 한계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혁

1. 1988년 가칭 ‘법원경찰대’ 설치 법안 제출

사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행정부로부터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1988년 법원경찰대 설치안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기존 ‘정리’와 교도관이 맡고 있던 법원 구내 및 법정 질서유지를 법원경찰대가 전담하여 법정소란 행위자에게 긴급체포권을 행사하고, 증인 및 피고인 등이 출정하지 않을 때 이들을 강제로 구인하며, 법정소란자에 대한 감치처분을 집행하는 등 소송절차상 필요한 임무를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법원경찰대(가칭)’ 설치 법안을 제출하였다.[6] 이 법안은 당시 일반경찰권에 대한 권한침해의 문제제기 등으로 철회되었다.[7]

---

6) 동아일보, 「‘법원경찰대’ 창설추진」, 석간 1면 (1989. 9. 2.),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890902&mode=19890902%2F0001646337%2F1 (2026. 3. 4. 최종확인).
7)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45.

2.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법원경찰대 창설 검토

대법원에서는 1993. 10. 21.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사법제도를 연구 · 창안, 기획하기 위하여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위원회 내에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은 각 안건에 관하여 분과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에서는 1988년 법원경찰대 설치 입법안이 철회된 이후 법정 내 소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사태를 대비하기에는 기존의 '정리' 및 청원경찰로는 미흡하므로 법원 내 법원경찰대를 창설하여 '정리' 업무와 법원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등 비교법적 연구를 더하여 법원경찰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관 창설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개방형 의견조사에서 시기상조의 우려가 있다는 건의로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8)]

3. 인적 구성[9)]

당시 법원의 법정 및 청사방호, 경비업무는 정리[10)](현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이 각 해당구역의 방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리'는 재판관련 해당부서(민사과, 형사과 등)소속으로, 방호원은 총무과(사무과) 소속으로, 청원경찰은 비상계획관 또는 총무과(비상계획담당)에서 관리하는 등 그 소속과 관리부서가 다른 이유로 법정보안과 청사방호의 유기적인 대응 · 대처 및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

8)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제1집 (1993), 63-66;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혁 법률안 검토자료 (1994), 14.

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8-9 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

10) 법원경위 명칭 연혁: 정리(법원조직법 제정 시 ~ 1995. 2. 28.) → 법정경위(1995. 3. 1. ~ 2005. 12. 13.) → 법원경위(2005. 12. 14. ~ 현재).

가. 법정방호

'정리'가 법관의 명에 따라 법정질서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직제상 일반경찰과는 원칙적으로 다르고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다. 그 외 재판기능의 보조적인 업무로 법원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서류의 송달 실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법정 내에서 제복을 착용할 뿐 보안장비는 갖추지 않았다.

나. 청사방호

(1) 방호원

법원청사로 통하는 현관 입구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민원인에 대하여 청사 안내 등을 포함한 법원 내부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화재 등 위기상황 시 대피안내 및 초동 대응을 하였고, 필요시 경찰과 협력하여 청사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원경찰

법원 청사 정문을 비롯한 외곽 초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정문출입로의 교통통제와 주차질서 유지가 주된 업무였다.

4. 법원경비관리대 창설[11)]

가. 법원조직법 개정(2005. 12. 23. 법률 제7730호)

2004. 9. 6.부터 2005. 12. 26.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및 청사보안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법정의 안전을 포함한 법원청사의 방호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과 물리적 시스템의 보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5. 12. 23.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06. 1. 2.부터 전국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인력은 청사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을 통합하여 대

1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06. 1. 2.),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353&gubun=6 (2026. 3. 4. 최종확인).

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의 조직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법원청사 내에서의 급박한 위해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도록 하는 등(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항)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나. 채용 및 교육 · 훈련

기존의 법정, 법원청사 내외부의 각 보안구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법원경비관리대를 신설하고 임기 10년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으로 선발하였다.

선발절차는 각 고등법원 관내 근무예정 지역별 신규채용 인원을 정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실시하였다. 서류전형에서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 경력,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면접시험에서는 인성, 공직관, 전문성 및 현장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술 유단자, 경찰, 경비, 경호 관련 전공자 · 경력자 ·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하였다.[12)]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 법원경비관리대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각 기수별 교육과정을 통하여 법정보안과 청사방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교육 내용은 법정 및 청사보안, 민 · 형사재판 진행절차, 기본적인 법 이론교육, 실무수습 등으로 구성하였다.[13)] 중앙 차원의 신규교육 외에도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인 직무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였다. 예컨대 법정 소란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특이 민원인 대응훈련, 청사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14)]

---

12)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6호 법원경비관리대(별정직, 9급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공고 (2011. 7. 25.),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1&pageIndex=138&searchWord=&seqnum=461&utm (2026. 4. 1. 최종확인).

13)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새소식 / 제6기 신규 법원경비관리대과정 교육실시 (2011. 10. 31.), https://ed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150&gubun=41&pageIndex=60&scode_kname=&searchWord=&seqnum=287&utm (2026. 4. 1. 최종확인).

5.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 변경

가. 법원보안관리대(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12188호)

'법원**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내의 방호라는 주된 업무를 표상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원경비관리대가 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섭하여 경비 외 법원보안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보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원경비관리대의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로 변경하였다.[15] '법원보안관리대'라는 명칭 변경 외에 법원조직법상 법원보안관리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나. 인적 구성

2013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호)으로 임용하고 채용 후 일정 기간(현재 약 3년 6월)이 경과하면 보안관리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 7. 1. 기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전체 인원은 법원경위(116명), 보안직(구 방호원 55명), 보안관리(657명), 별정직 보안관리대원(3명), 일반임기제 9호(196명), 청원경찰(34명)로 총 1,061명이 근무하고 있다.[16]

III. 설치 및 운영의 근거

1. 헌법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제108조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율성과 독자적으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 (2009. 4. 7.), https://slnam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12&gubun=41&pageIndex=85&searchWord=&seqnum=213&utm (2026. 4. 1. 최종확인).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4. 1.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6) 법원행정처 조직심의담당실 제공, 전국 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정 · 현원 현황(2025. 7. 1. 기준).

2.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방호를 위한 조직으로써 법원보안관리대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둔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58조는 법정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에서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못하도록 하고, 제60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제61조는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행위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으로 법원경위는 법원보안관리대를 구성하는 다른 직렬과 다르게 법원조직법 제64조에 별도의 설치 근거 규정이 있고, 법에 규정된 직무의 내용 또한 일반적인 법원보안관리대원과 차이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제3장 제1절 Ⅰ. 직렬 구성의 다원성으로 인한 문제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5편 법원직원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3. 대법원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구성, 조직, 임무, 주의의무, 교육, 근무기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근무기강)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호 생략)

③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대법원 예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지휘체계, 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출입자 검색, 재판전의 준비사항, 법정 질서유지 활동 및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이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3조(설치)

①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팀을 지휘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지휘체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보안관리대를 지휘한다.

③ 담당관 및 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지휘한다.
④ 조장은 담당관 및 팀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대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2.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을 소지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반입을 금지하거나 따로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
3.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농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4. 공무원증이나 출입증 등을 패용하지 아니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공무원증 등을 패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청사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5. 잡상인, 청사배회자,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직원 등에게 면회나 기부를 강요하거나 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는 조치
6. 법원청사에서 유인물, 도화, 전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배포행위를 금지하거나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시간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의 청사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사유, 신분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② 방문이 예약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시키고, 그 밖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 · 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판전의 준비)

① 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

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청객에게 법정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재판에 관한 집단적인 소란행위에 대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질서유지활동)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지하여야 한다.

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휴대폰 벨소리 · 옆 사람과 큰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부채질을 하는 행위,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
2.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몸을 젖혀 눕는 행위,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
3.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비의 휴대 및 촬영

②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관을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를 신속히 제압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할 염려가 있는 청사출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旗)에 관한 예규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보고지침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Ⅳ. 보안관리 권한의 근거

1. 법정경찰권(법정질서유지권)[17]

법정경찰권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 ·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지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법정질서유지권이라고도 한다.[18]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권한 기초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81조[19])과 **법원장의 청사관리권**(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경찰권의 보유 주체는 재판장이고 법정경찰권의 행사는 사법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소송지휘권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인 활동을 말한다.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은 법원의 권한임에도 재판장이 포괄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법정경찰권은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음에 반하여 소송지휘는 사건 실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0] 다만, 실무상 감치재판의 개시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재판장이 취하는 법정경찰권 행사의 일환일 경우[21]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행사는 소송지

---

17)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13-19.

18) 성낙인, 헌법학 (2022), 744.

19) 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 헌법재판소도 법원조직법 제59조(법정 내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화 등의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녹음을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위 법률조항 부분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재판장의 허가'는 재판장이 법정의 권위를 지키고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며 심리의 방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법정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사법행정행위**라고 볼 것이지, 법원이 소송의 심리를 신속 · 공평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법적 성격은 녹음허가신청인이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1. 6. 30. 선고 2008헌바81 결정 참조).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3.자 2003정로4 결정 참조.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이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으로서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제2위반사실 부분의 경우 변호인이 신문 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경찰권을 광의에서 볼 때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22]

가. 근거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 권한 및 행사할 권한의 내용 중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은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1981. 1. 29. 공포, 시행된 구(舊) **법원조직법**(법률 제3362호) 제54조에서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감치 등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형법상의 법정모욕죄 외에 법정소란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재판장에게 경찰관 파견요구 및 파견 경찰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규정하였다.

1981. 12. 18.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794호)」이 제정 및 공포되고, 같은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대법원 1981. 12. 16. 송무심의 제52호, 재일 81-8 예규)가 제정됨으로써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23] 그 후 1987. 12. 4. 공포되어 1988. 2. 25.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법률 제3992호)은 제61조에서 감치 등의 재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법에서 인정되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와 폭언, 소란 등의 행위 외에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한편, 감치의 집행과 구속 및 형의 집행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규칙도 일부개정(1988. 5. 4. 대법원 규칙 제1014호)하였다.[24] 또한, 법원은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판장의 행위지침 및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

재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적극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을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석명의 과정에서 항고인이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한 경우인 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점, 이렇듯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재 여부 및 그 제재의 종류, 집행의 시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22) 오관식, "법정경찰권", 고시계 제36권 제5호(411호), 국가고시학회 (1991), 131.

23) 법원행정처 송무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절차 해설 (1991), 1.

24) 법원행정처 송무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절차 해설 (1991), 1-2.

행위가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에 관하여 1991. 7. 11.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를 제정하여 재판장들이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내용

법정 내의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법정경찰권'이라고 한다. 이는 재판장에게 맡겨져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1항). 재판장은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예절을 갖춘 행동, 태도, 복장 등을 현저하게 결여한 사람이나 법정에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질서문란 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정경찰권의 행사자인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그 결정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25] 대표적인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으로 '입정금지명령'과 '퇴정명령'을 들 수 있다. 입정금지명령은 주로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퇴정명령은 주로 질서위반 행위자를 법정 밖으로 내보내어 질서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각 발해진다. 특히, 퇴정명령의 경우 일정한 소송법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26]).

법정의 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입정금지나 퇴정명령 외에도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이 재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예컨대,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입정명령, 재정명령, 착석명령, 기립명령, 발언금지명령 등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27] 특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으로 방청인에 대한 입정금지, 퇴정명령, 제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인 아닌 자 즉,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서유지 처분이라든가 방청인에 대한 위 규칙에 정한 이외의 처분은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자체에 의하여 가능하다.[28]

---

2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1-455.
26) 형사소송법 제330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질서유지를 위해 퇴정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7.
2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22), 400.

법정질서를 해치는 언동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 직접제재(감치, 과태료)를 가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제도의 정상적이고도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사법제도에 내재하는 고유권한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원 스스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이루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제도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29]

2. 청사관리권[30]

가. 근거 및 지휘체계

청사관리권은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재해방지 등에 관한 관리권한[31]으로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은 '청사관리관'으로서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보안 등 청사관리권을 가진다(법원청사 관리내규 제3조).[32]

청사관리권은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행사하는 사법행정권[33]이 발현되는 한 모습이고, 청사관리 중 보안 관련 행위는 공동체를 위한 '위험방지작용'으로서 실질적인 행정경찰작용[34]으로 볼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데(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4조), '각급 기관의 장'은 '청사관리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3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하고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하되,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

2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1.
3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23-26.
3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1.
32) **제3조(청사관리관)** ① 청사의 관리책임자(이하 "청사관리관"이라 한다)는 대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장, 지방법원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장,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시·군법원판사(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청사를 사용할 때는 등기소장), 등기소에 있어서는 등기소장으로 한다.
3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2025), 9.
'사법행정권'이란 법관이 담당하는 심판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운영·관리하는 모든 작용에 관한 것을 의미함.
34) 홍정선, 기본행정법(제7판), 박영사 (2019), 575.

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청사관리권한의 지휘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② 이 내규에서 "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사의 보존과 환경미화를 위한 행위
2. 화재예방, 설비관리, 방범 등 청사의 안전을 위한 행위
3. **청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
4. **청사 내에서의 보안을 위한 행위**

제3조(청사관리관)

① 청사의 관리책임자(이하 "청사관리관"이라 한다)는 대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장, 지방법원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장, 시 · 군법원에 있어서는 시 · 군법원판사(시 · 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청사를 사용할 때는 등기소장), 등기소에 있어서는 등기소장으로 한다.

② 동일청사를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급기관의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며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장이 청사관리관을 지정한다.

제13조(질서유지)

청사관리관은 청사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청사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퇴거를 명하고, 청사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시설물에 대하여는 반출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설치)
①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내용

청사관리관은 청사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 반입 등을 제지하여야 하고, 청사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거를,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시설물에 대하여는 반출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법원청사 관리내규 제13조). 따라서 재판이 행해지는 법정 내에서는 청사관리권과 법정경찰권이 경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사관리관은 재판독립과 심리공개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만 법정질서에 대한 방해가 예상되어 재판장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긴밀한 의견 조율을 거쳐 법정질서유지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강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35]

3. 권한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법정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법정에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정 중이거나 일시 심리를 중단한 경우처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에는 개정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전후의 시간'을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될 여지가 있으나 법정이 개정되기 전에 방청권 발행에 대한 결정이나 방청인을 입정시키는 문제, 재판 종료 후 방청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의 준비에 착수한 때부터 심리종결 후 잔무 정리를 종료한 때까지라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36] 반면, 청사관리권은 시간적 범위의 제한이 없다.

나. 장소적 범위

법정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내이지만, 법정 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정 밖에서의 행위(예컨대, 법정 밖 복도에서의 소란 등)인 경우에도 재판장이 직접 인식(법관의 오관에 의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범위 내)할 수 있는 한 법정경찰권의 대상이 된다.[37]

한편, 2021년 8월 17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영상재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7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3 제7항에서는 영상재판절차에서의 질서위반자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 절차는 법정질서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지침(재일 2021-2)」 제5조 제4항에서는 '영상법정'[38]에 법정경찰권이

3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2.
36)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4.
3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3.
38) '영상법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법원 내부 영상재판 관련 매뉴얼에서 '영상법정'을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과 음성을 송수신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가상의 온라인 공간으로, 물리적 법정(Physical Courtroom)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설명하

미침을 전제로 하여 “재판장 등은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 시작 전 참석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 없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금지됨을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제 법정경찰권의 효력은 물리적 법정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인 영상법정에까지 미친다고 보이고 나아가 ‘영상법정’과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가 불가분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법정경찰권의 효력은 영상법정 내뿐만 아니라 영상재판 참석자 등이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39] 반면, 청사관리권에서 ‘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법원청사 관리내규 제2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청사관리관의 청사관리권한은 청사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고 있다[법원행정처, 영상재판 매뉴얼 (2023), 4쪽 참조].

39)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56.

제2절 운영 현황

I. 인적 구성 및 근무 현황

1. 인적 구성[40]

[표 1]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급별 인원 현황(명) [2025. 7. 1. 기준]

직급 / 인원 / 구성원 (직렬,직류 등)	5급		6급		7급		8급		9급 (9호/청경)		총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법원경위	7	7	40	66	34	43	144	0	7	0	232	116
보안 (구 '방호원')			0	2	1	53	2	0	95	0	98	55
보안관리					10	0	89	294	519	363	618	657
보안관리대원 (별정직)									0	3	0	3
일반임기제 9호									0	196	0	196
청원경찰									40	34	40	34
총계	7	7	40	68	45	96	235	294	661	596	988	1,061

가. 직렬 구성 내력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경비관리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법원 보안업무를 담당해 왔던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임기 10년

40)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48. 법원행정처 조직심의담당관실 현행화 제공(2025. 7. 1. 현재 기준).

의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 12. 11. 개정, 법률 제11530호)으로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이 개정되어(2013. 12. 10. 개정, 대법원 규칙 제2507호) 기존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이었던 법원경비관리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안경비직렬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보안직렬 일반직이 신설되었다. 이후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보안관리 업무담당, 연봉등급 9호)으로 변경하여 선발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2014. 12. 30. 개정, 대법원 규칙 제2579호) 보안경비직렬과 보안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이다.[41]

나. 구성원

(1) 법원경위

법원경위는 1949. 8. 15. 법원조직법 제정 시부터 '정리'라는 명칭으로 법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무집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12. 14.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7725호)으로 명칭이 '법정경위'에서 '법원경위'로 변경되었다.

위 직급별 인원구성표의 현원을 살펴보면 법원경위는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아 법원경위 직렬의 8급, 9급은 각 0명으로 자연 감소하였으며 기존 인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으로 인하여 현원 5급(7명), 6급(66명), 7급(43명)을 합하면 전체 법원보안관리대(1,061명) 중 116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다.

(2) 보안직(구 방호원)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를 신설하면서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현재 6급 현원(2명), 7급 현원(53명), 8급 및 9급 현원(각 0명)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55명이 근무 중이다.

(3) 보안관리직

보안관리직류는 2005. 12. 14.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및 직렬

41) 법원보안관리대규칙 부칙(2014. 12. 30.) 제3조.

통합 정책 이후 2007년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으로 입직한 제1기 대원들이 2025. 7. 1. 기준 8급(보안관리서기)으로 근무 중이며 7급 현원이 없는 상태였으나, 2026. 1. 1.자로 7급 일반승진 발령(전국 29명)이 있었다.[42]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1,061명) 중 보안관리직 657명과 앞으로 전환될 일반임기제공무원(9호) 196명을 더하면 853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보안관리직의 늦은 승진은 구성원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높은 상황이다.

(4) 보안관리대원(별정직)

인원현황표의 보안관리대원(별정직) 현원 3명은 전환 미신청 또는 심사탈락 등의 사유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조에서 제21조에 따른 근속연수 연장을 통하여 계속 근무 중이다.[43]

(5) 일반임기제공무원(9호)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채용절차는 일반임기제공무원(9호)[인원현황표 기준 인원: 196명]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직렬로 전환하고 있다.[44]

(6) 청원경찰

청원경찰 또한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4명이 근무 중이다.

---

42) 정원표 상 7급 정원 10명은 2025. 7. 1.자 기준이었으나, 2026. 1. 1.자로 일반승진(보안관리서기에서 보안관리주사보) 발령이 있었음.

4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12.

44)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의3 여기서 '비다수인대상채용'이란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령상 정해진 일정한 경력 · 자격 또는 신분을 갖춘 제한된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채용방식을 말한다.

2. 근무 현황

가. 직렬별 근무 인원[45)]

(1) 법원경위

법원보안관리대 규칙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가 설치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 등 전국 80개 법원 중 법원경위(총 116명)가 3명 이상 근무하는 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8명), 서울중앙지방법원(5명), 의정부지방법원(6명), 인천지방법원(4명), 부천지원(3명), 수원지방법원(4명), 성남지원(5명), 춘천지방법원(3명), 대전지방법원(3명), 청주지방법원(5명), 대구지방법원(4명), 대구서부지원(4명), 부산지방법원(4명), 부산서부지원(3명), 광주지방법원(6명), 순천지원(3명), 전주지방법원(5명)을 포함한 17개 법원에서 7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1~2명이 근무하는 곳은 35개 법원에서 41명이고 나머지 28개 법원은 법원경위가 0명이다.

법원경위는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채용이 중단되어 자연감소되면서 각급 법원별 정원에 따라 그 빈자리는 보안관리직렬로 채워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직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보안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인력수급상 청사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는 곳도 있다.

(2) 보안직(구 방호원)

법원보안관리대 규칙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가 설치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 등 전국 80개 법원 중 보안직(55명 중)이 3명 이상 근무하는 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8명), 대전고등법원(3명)으로 2개 법원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1~2명이 근무하는 곳은 35개 법원에서 44명이고 나머지 43개 법원은 보안직이 0명이다.

보안직은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채용이 중단되어 자연감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직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사보안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에서는 인력수급상 법정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는 곳도 있다.

45) 법원행정처 조직심의담당실 제공(2025. 9. 30.기준) 현황에 따른 수치로 휴직 등의 사유, 시·군법원 인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일부 현원 수치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3) 보안관리직[일반임기제공무원(9호) 및 별정직 포함]

법원보안관리대 규칙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가 설치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 등 전국 80개 법원 중 보안관리직(856명 중)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법원으로 대법원(64명), 서울고등법원(56명), 대전고등법원(11명), 대구고등법원(13명), 부산고등법원(19명), 광주고등법원(13명), 수원고등법원(21명), 서울중앙지방법원(82명), 서울가정법원(22명), 서울동부지방법원(23명), 서울남부지방법원(26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명), 서울서부지방법원(18명), 의정부지방법원(15명), 고양지원(12명), 남양주지원(10명), 인천지방법원(30명), 부천지원(10명), 수원지방법원(28명), 안산지원(10명), 대전지방법원(14명), 대구지방법원(19명), 부산지방법원(14명), 울산지방법원(13명), 창원지방법원(15명), 광주지방법원(11명), 전주지방법원(12명)으로 27개 법원에서 6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10명 이하 근무하는 곳은 53개 법원에서 255명이다.

보안관리직은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채용이 중단된 법원경위, 보안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법정 및 청사보안 업무를 법원별 사정에 따라 1년 정도의 간격으로 보직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원의 특성 및 인력수급상 법정 또는 청사보안 업무를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곳도 있다.

(4) 청원경찰

법원보안관리대 규칙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가 설치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원 등 전국 80개 법원 중 청원경찰(34명 중)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12명), 대전고등법원(2명), 대구고등법원(2명), 부산고등법원(2명), 서울남부지방법원(2명), 청주지방법원(2명), 울산지방법원(2명)으로 7개 법원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근무하는 법원은 10개 법원 10명이며, 그 외 63개 법원은 청원경찰이 0명이다.

청원경찰은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채용이 중단되어 자연감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사보안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나. 업무별 근무 인원[46)]

(1) 전국 고등법원 현황

[표 2] 전국 고등법원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법원	구분	법원경위	보안	보안관리	별정직대원	청원경찰	계
서울고등법원	법정보안	8		15	2		25
	청사방호		8	34		12	54
	기타업무			2			2
소계		8	8	51	2	12	81
대전고등법원	법정보안			1.3			1.3
	청사방호		3	10.7		2	15.7
	기타업무						
소계			3	12		2	17
대구고등법원	법정보안			3			3
	청사방호	1	2	10		2	15
	기타업무						
소계			2	13		2	18
부산고등법원	법정보안			1.2			1.2
	청사방호		1	17.8		2	20.8
	기타업무						
소계			1	19		2	22
광주고등법원	법정보안			2.6			2.6
	청사방호		2	12.4			14.4
	기타업무						
소계			2	14			17
수원고등법원	법정보안			3.7			3.7
	청사방호			16.8		1	17.8
	기타업무			0.5			0.5
소계				21		1	22

46) 법원행정처 조직심의담당실 제공(2025. 9. 30.기준),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 제외.

서울고등법원(81명)의 경우 법원경위 8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보안직 8명과 청원경찰 12명이 청사방호를 전담하며, 보안관리직 53명은 법정보안(17명)과 청사 방호(34명+기타 2명)를 분담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17명)은 보안직 3명과 청원경찰 2명이 청사방호를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12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18명)은 법원경위 1명과 보안직 2명, 청원경찰 2명이 청사방호를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13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있다. 그 외 부산고등법원(22명), 광주고등법원(17명), 수원고등법원(22명) 등 각 청사규모에 따라 인원도 다르지만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각 직렬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고등법원 단위의 종합청사 형태는 청사방호를 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다.[47)]

(2) 전국 주요 지방법원 현황

[표 3] 전국 주요 지방법원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소속	구분	법원경위	보안	보안관리	별정직대원	청원경찰	계
서울중앙지법	법정보안	5		84			89
	청사방호						
	기타업무						
소계		5		84			89
대전지방법원	법정보안	1		15			16
	청사방호						
	기타업무						
소계		1		15			16

47)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3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하고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하되,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청사관리권한의 지휘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또한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청사를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급기관의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며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 기관의장이 청사관리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속	구분	법원경위	보안	보안관리	별정직대원	청원경찰	계
대구지방법원	법정보안	1.7		19.4			21.1
	청사방호						
	기타업무	0.3		0.6			0.9
소계		2		20			22
부산지방법원	법정보안	4		13.6			17.6
	청사방호						
	기타업무			0.4			0.4
소계		4		14			18
광주지방법원	법정보안	5	1	11			17
	청사방호						
	기타업무						
소계		5	1	11			17
수원지방법원	법정보안	3		26			29
	청사방호						
	기타업무						
소계		3		26			29

서울중앙지방법원(89명)의 경우 법원경위 5명과 보안관리직 84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대전지방법원(16명)은 법원경위 1명과 보안관리직 15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며, 대구지방법원(22명)은 법원경위 2명과 보안관리직 20명이 법정보안과 기타업무(서무)를 분담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18명)은 법원경위 4명과 보안관리직 14명이 법정보안과 기타업무(서무)를 분담하고 있고, 광주지방법원(17명)은 법원경위 5명과 보안직 1명, 보안관리직 11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9명)은 법원경위 3명과 보안관리직 26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있다. 청사방호는 각 고등법원 소속의 보안관리대가 전담하고, 각 지방법원의 법정보안은 소속 보안관리대가 전담하고 있다.

(3) 전국 지방법원 주요 지원의 현황

[표 4] 전국 지방법원 주요 지원의 업무별 인원 현황(명) [2025. 9. 30. 기준]

소속	구분	법원경위	보안	보안관리	별정직대원	청원경찰	계
부천지원	법정보안	3		3.4			6.4
	청사방호			4.6			4.6
	기타업무						
소계		3		8			11
안양지원	법정보안			6.2			6.2
	청사방호		2	1.8			3.8
	기타업무						
소계			2	8			10
원주지원	법정보안			2.9			2.9
	청사방호		1	1			2
	기타업무			0.1			0.1
소계			1	4			5
포항지원	법정보안	1.6		2.4			4
	청사방호	0.4		0.6			1
	기타업무						
소계		2		3			5
군산지원	법정보안	1		3			4
	청사방호			2			2
	기타업무						
소계		1		5			6

부천지원(11명)의 경우 법원경위 3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8명이 법정보안 및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있으며, 안양지원(10명)은 보안직 2명이 청사방호를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8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있다. 원주지원(5명)은

보안직 1명이 청사방호를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4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 기타업무(서무)를 분담하고 있다. 포항지원(5명)은 법원경위 2명과 보안관리직 3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군산지원(6명)은 법원경위 1명이 법정보안을 전담하고, 보안관리직 5명이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분담하고 있다.

II. 물적 설비 현황

1. 개요

법원보안관리대의 물적 설비는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 · 차단하며, 사건 ·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안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법원 공간은 국민이 상시 출입하는 공적 영역인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고도의 긴장 공간이므로 보안업무는 단순 경비를 넘어 위험도에 비례한 단계적 대응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때 보안장비의 적정한 구비와 운용기준은 위해물 반입 및 폭력행위의 억지, 현장 대응의 신속성 · 일관성 확보, 인권보장과 책임성 담보(사후 점검 · 보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보안장비란 법원청사 출입관리, 위해물 탐지, 상황감시, 비상대응 등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의미하며, 기능에 따라 대체로 검색 · 탐지 장비, 감시 · 통제 장비, 경보 · 비상대응 장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안장비는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용장비는 출입구 검색, 청사 · 법정 감시, 비상대응 등 조직 단위로 운용되며 다수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예: 소형화물 투시기, 문형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 비상벨 등).

둘째, 개인장비는 대원이 현장 근무 과정에서 휴대 · 착용하여 개인 단위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현장 제지 · 보호 및 연락체계를 보조하는 수단을 포함한다(예: 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대 등).

한편, 보안장비의 운용은 유형력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형력은 법정 · 청사에서의 질서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되는 물리적인 제지력 전반을 의미하고, 보안장비는 유형력 행사의 전(前) 단계인 위험의 탐지 · 예방부터 행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행사 후의 상황 통제 및 증거 · 기록 확보까지 연속선상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장비 운용 기준은 유형력 행사 기준과 결합하여 비례성 · 필요성 · 최소 침해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복 및 장구는 대원의 신분과 공적 권한의 표시, 현장 억지력, 그리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기능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국민에게는 법원의 보안 주체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대원에게는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요구하는 상징적 장치이며, 장구의 구성 · 착용 방식은 대원의 안전과 직무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도 물적 설비 현황 분석과 제복 현황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보안장비, 유형력 행사, 제복을 상호 연계된 체계로 파악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전국 법원에 배치된 공용장비 및 개인장비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어 보안장비의 운용 매뉴얼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장비 체계의 구성과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보안장비 및 운용 매뉴얼

가. 전국 법원 보안장비 현황[48)]

(1) 공용장비

[표 5] 공용장비 현황 [2025. 8. 31. 기준]

구분	소형화물 투시기	검색대		휴대용 스캐너	CCTV		비상벨	전기 충격기
		출입구	법정용		내부	외부		
수량(개)	129	151	146	736	5,751	1,139	5,638	61

48) 대법원보안관리대 제공 자료(2025. 8. 31. 기준).

(2) 공용장비 사용

[그림 1] 공용장비 사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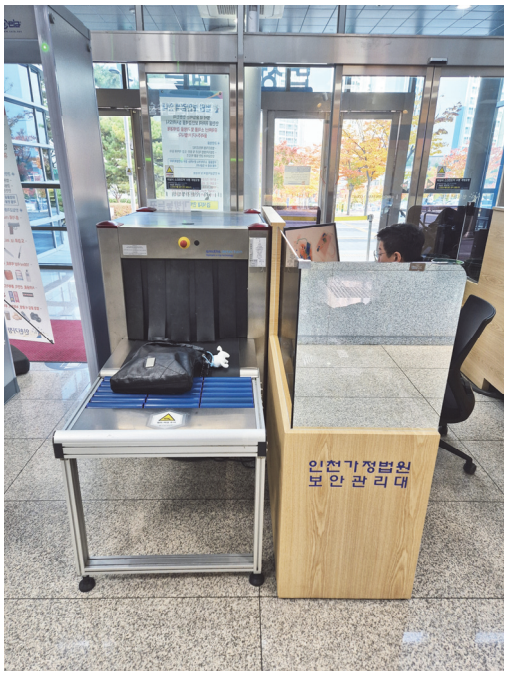

1. 소형화물 투시기



2. 휴대용 스캐너



3. 문형검색대(출입구 검색)



4. 전체 CCTV 모니터링(상황실)

(3) 개인장비

[표 6] 개인장비 현황 [2025. 8. 31. 기준]

구분	가스분사기	삼단봉	무전기	요대	호각
수량(개)	1,028	1,669	1,845	1,608	1,068

(4) 개인장비 사진

[그림 2] 개인장비 사진



1. 가스분사기



2. 삼단봉(경비봉)



3. 무전기



4. 요대

나.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

[표 7]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

소란행위 채증 (캠코더)	• 소란행위 발생 시 최초 근무자는 진정시킨 다음 청사 밖으로 유도(사무실 소란 시 직원과 신속하게 분리) ＊ 소란행위 자료 캠코더 및 휴대폰 이용 자료 확보 • 채증 자료는 일자별, 대상별로 보관 → 고발 시 자료 활용 ☞ 채증 시 당사자의 동의 불필요, 촬영여부 고지
무전기 운용	• 보안관리대원 근무자는 무전기를 전원 휴대(이어잭 포함) • 근무 교대 후 이상 유 · 무 보고 • 근무 자세는 정자세 근무로 방청객을 주시(이어폰 착용, 채증 장비 준비) ☞ 복장지침 준수 :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이어잭 착용
가스분사기 / 삼단봉 운용	• 『법관 및 법원직원의 생명 · 신체의 위해와 기타 법원안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삼단봉 및 가스분사기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고지 및 숙지사항】 – 단순 소란, 고성, 난동이 아닌 폭행, 위험물소지, 생명 및 신체의 위해 등 현저한 위험으로 판단되었을 시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하도록 한다. ＊ 유형력 행사 전 반드시 3회 이상 사전경고를 실시한다.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등 부득이한 경우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스분사기는 1m 이내 거리에서는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서는 안 된다(실명위험). – 가스분사기의 유효거리는 2~3m로 바람을 등지고 분사한다. – 소란 및 난동자가 흉기 및 위험물을 소지하고 위협할 경우 삼단봉을 사용하여 제압 – 보안 관련 장비는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장비일지에 기록

3. 유형력 행사 기준

[표 8] 유형력 행사 기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물적 설비 현황 분석

각급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3항 및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을 수행하고 있다. 청사 출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반입 금지품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사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용장비(출입구·상황실 중심)와 개인장비(현장 대응 중심)로 구성된 물적 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공용장비는 소형화물 투시기 129대, 문형검색대(출입구: 151대, 법정용: 146대), 휴대용 스캐너 736대, CCTV(내부: 5,751대, 외부: 1,139대), 비상벨 5,638개, 전기충격기 61대 등이 확보되어 있고, 개인장비로는 가스분사기 1,028개, 삼단봉 1,669개, 무전기 1,845대, 요대 1,608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장비 구성은 출입통제·검색(투시기/문형검색대/휴대용 스캐너), 상시 감시·기록(CCTV), 긴급상황 전파·초동대응(비상벨/무전기), 물리적 제지 수단(삼단

봉 · 가스분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보안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물적 설비의 보유 자체가 곧 안전의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의 구체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운용의 표준화와 실효성이 확보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49]은 무전기 상시 휴대, 복장지침 준수(가스분사기 · 무전기 · 삼단봉 등 착용),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최소한 범위 내 유형력 행사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원칙 수준의 안내에 머물러 구체적 상황별 사용 요건, 단계별 통제, 사후 관리 체계까지 포괄하는 정밀한 운영기준으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실무 담당자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 유형력 행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원 내 질서유지는 경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제기되는 바, 장비 운용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장비 부족 그 자체라기보다 유형력 행사기준의 불충분 · 불명확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부담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적 설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장비별 운용권한, 사용요건, 사후관리(기록 · 보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장비(삼단봉, 가스분사기)는 대인 제지 수단인 만큼 '최소 침해 · 비례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상황별 단계(언어적 제지-분리-퇴거-유형력 행사)의 구체화, 사용 전 · 후의 기록(사용 보고서) 등 요소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장비 확충과 별개로 물적 설비가 권한 행사의 매개가 된다는 특성상 법적 · 제도적 통제장치와 결합되어야 법적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유형력 행사와 관련한 법적 정당성,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장비 사용과 관련한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의 미흡에 대한 내용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후술하는 제3장 제2절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III. 제복

1. 현황

법원은 2005년 기존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을 통합하

49) 법원행정처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 (2022), 274.

여 법원경비대를 창설하면서 이들에 대한 복제를 규정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제정 2006. 3. 16. 행정예규 제653호)를 제정하였다.

이 예규에는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복제의 종류와 제복의 지급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법원행정처장이 예산 및 기타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 착용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하고 있다.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대원복 상의

[표 9] 대원복 상의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남자 대원복 상의 (춘추, 하, 동복)	– 폴리에스텔 (50%) 자연섬유 (50%) – 흰색	○ 긴소매 – 와이셔츠 식 깃에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달고 소매 끝은 카우스 식으로 하며 단추 2개씩 단다. ○ 반소매 – 와이셔츠 식 깃에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단다. ○ 공통 – 가슴 좌우에 겉 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단추를 단다. – 좌측 가슴주머니 위에 흉장걸이를 단다. – 어깨에 표장지를 붙이고 단추를 단다. ○ 하복은 긴소매 및 반소매로 한다.	  〈춘추, 하, 동복 긴소매〉  〈하복 반소매〉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여자 대원복 상의 (춘추, 하, 동복)	– 남자대원복과 같다.	– 남자대원복과 같이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한다.	생략
질서계도 사회복무 요원복 상의 (하, 추동복)	– 면 · 폴리에스텔 혼방 – 연보라하늘색	〈추동복〉 – 남자대원복과 같다. 〈하복〉 – 남자대원복과 같이 하되, 반소매에 가슴 받이를 붙인 노타이 식 깃으로 한다.	 〈추동복〉  〈하복〉

나. 대원복 하의

[표 10] 대원복 하의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남자 대원복 하의 (춘추, 하, 동복)	–폴리에스텔 (50%), 울(50%) – 검정색	– 긴 바지로 하고,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 임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 주름 2개를 만든다. – 후면 좌우둔부에 속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측 한쪽에만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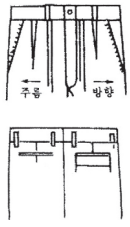 〈앞, 뒷면〉
여자 대원복 하의 (춘추, 하, 동복)	– 남자대원복과 같다.	– 남자대원복과 같이 하되, 길이로 붙임 옆주 머니를 달고, 좌측면에 지퍼를 단다.	 〈앞, 뒷면〉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질서계도 사회복무 요원복 하의 (하, 추동복)	– 울 · 폴리에스텔 혼방 – 진청색	– 남자대원복과 같다.	
남녀대원 점퍼 (춘추, 동복)	– 폴리에스텔 (100%) – 검정색	〈춘추용〉 – 형태를 나비 깃으로 하고, 전면에 앞채움 용 지퍼를 단다. – 허리 끝단 좌우에 스냅단추 2개를 달고, 복부 좌우에 속 붙임 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 좌측 가슴에 흉장걸이를 단다. – 어깨에 표장지를 붙이고, 단추를 단다. 〈겨울용〉 – 형태는 춘추용과 같으며, 안은 솜으로 누벼 겉과 분리되게 하고, 깃은 깃털을 붙여 이중으로 한다.	

다. 대원복 재킷

[표 11] 대원복 재킷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임신부복 (춘하, 추동복)	– 울 · 폴리에 스텔 혼방 – 진청색	– 민소매 원피스형으로 하고, 목둘레선을 여름용은 U자형으로, 겨울용은 V 자형으로 한다. – 전면 중앙에 한줄(여름용 2개, 겨울용 3개)로 단추를 단다. – 춘하복 좌측 가슴에 흉장걸이를 단다(동복 제외).	 (앞, 뒷면)
남자대원 재킷 (춘추동 · 하복)	– 울 · 폴리에 스텔 혼방 – 검정색	– 앞섶을 겹치지 않게 벌림 깃으로 한 싱글 버튼형으로 하고, 중앙에 단추 2개를 단다. – 가슴 좌측에 속주머니 1개를 달고, 복부 좌우측에 뚜껑 있는 속붙임 주머니 1개씩 단다. – 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가른다. –소매하단의 후부에 작은 단추 3개씩 단다. – 좌측 가슴주머니 위에 흉장걸이를 단다.	 (앞면)

종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여자 대원 재킷 (춘추동 · 하복)	– 남자대원복과 같다.	– 앞섶을 겹치지 않게 벌림 깃으로 한 싱글버튼형으로 하고, 중앙에 단추 3개를 단다. – 가슴 좌측에 속주머니 1개를 달고, 복부 좌우측에 뚜껑 없는 속붙임 주머니 1개씩 단다. – 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가르지 않으며 앞뒤 좌우에 다트를 1개씩 넣어 허리부분을 잘록하게 한다. – 소매하단의 후부에 작은 단추 3개씩 단다. – 좌측 가슴주머니 위에 흉장걸이를 단다.	 (앞면)  (뒷면)

라. 모자와 넥타이

[표 12] 모자와 넥타이

종 별	소재 및 색상	제식	도형
질서계도 사회복무 요원 방한복	– 폴리에스텔 (100%) – 검정색	– 안은 솜으로 누벼 겉과 분리되게 하고, 깃은 깃털을 붙여 이중으로 한다. – 어깨에는 표장지를 붙여 단추를 단다. – 좌측가슴에 흉장표시장을 붙인다.	 (앞면)
근무모 (공통)	– 폴리에스텔 (100%) – 검정색	– 후면에 사이즈 조절탭을 부착하고, 흰색으로 'COURT'란 문자를 자수 한다. – 모자전면 중앙에 모자마크를 단다.	
남녀대원용 넥타이	– 면 · 폴리에스텔 혼방 – 진청색	– 진청색 바탕에 흰색대각선 줄무늬를 넣는다. – 여자대원용은 남자대원용보다 폭을 1.1㎝ 좁게, 길이를 8㎝ 짧게 한다.	
질서계도 사회복무 요원용 넥타이	– 면 · 폴리에스텔 혼방 – 감색	– 남녀대원용과 같이 하되 줄무늬 없이 단색으로 한다.	

마.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표 13]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구분			법원경위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보안직 공무원		청원경찰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수량	기간	수량	기간	수량	기간	수량	기간	수량	기간
제복	춘추복	상의	2	2년	2	2년	2	2년	2	2년		
		하의	2	〃	2	〃	2	〃	2	〃		
	하복	상의	3	〃	3	〃	3	〃	3	〃	2	복무기간
		하의	2	〃	2	〃	2	〃	2	〃	2	〃
	추동복	상의									2	〃
		하의									2	〃
	동복	상의	2	〃	2	〃	2	〃	2	〃		
		하의	2	〃	2	〃	2	〃	2	〃		
	점퍼	춘추			1	3년	1	3년	1	3년		
		겨울			1	〃	1	〃	1	〃		
	재킷	춘추동	1	5년	1	5년						
		하	1	5년	1	5년						
	임신부복	춘하	2	임신기간	2	임신기간	2	임신기간	2	임신기간		
		추동	2	〃	2	〃	2	〃	2	〃		
	방한복										1	복무기간
	근무모				1	2년	1	2년	1	2년	1	〃
	넥타이		2	2년	2	〃	2	〃	2	〃	1	〃
	단화		1	〃	1	〃	1	〃	1	〃	1	〃
부착물	깃장		1	분실 등	1	분실 등	1	분실 등	1	분실 등		
	흉장		2	〃	2	〃	2	〃	2	〃	2	복무기간
	넥타이핀		1	〃	1	〃	1	〃	1	〃		
	계급장										2	복무기간
장구	가스분사기				1	근무기간	1	근무기간	1	근무기간		
	무전기		1	근무기간	1	〃	1	〃	1	〃	1	복무기간
	삼단봉		1	〃	1	〃	1	〃	1	〃	1	〃
	요대		1	분실 등	1	분실 등	1	분실 등	1	분실 등	1	〃
	호각				1	〃	1	〃	1	〃	1	〃

※ 명찰, 모자마크, 표지장 등 부착물은 제복에 부착 고정되며, 방한화, 방한장갑, 우의, 귀 덮개 등은 필요시 지급
※ 방한복, 간편복은 청사방호 법원보안관리대원(사회복무요원 제외)에게 필요시 지급
※ 보안직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필요시 재킷 지급

바.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

[표 14] 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

종별	소재, 제식, 부착위치 및 대상	도형
깃장	○ 소재 및 제식 : 황동에 금도금 법원마크 ○ 부착위치 : 춘추, 하, 동복 상의셔츠 오른쪽 깃 ○ 대상 :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제외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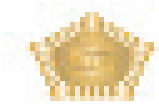
흉장	○ 소재 : 황동에 금도금(황색) ○ 제식 – 길이 7.8㎝, 너비 7㎝ – 방패모양 중앙에 법원로고 양각, 상단에 '대한민국법원' 하단에 '자유 · 평등 · 정의' 문자 양각 – 뒷면에 탈부착용 고리 부착 ○ 부착위치 : 춘추, 하, 동복, 점퍼, 재킷, 임신부복 좌측 가슴 (방한복 제외) ○ 대상 : 전 대원	
	○ 소재 : 황동에 니켈크롬 도금(은색) ○ 제식 : 대원용과 동일 ○ 부착위치 : 하, 추동복, 방한복 좌측가슴 ○ 대상 :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모자마크	○ 소재 및 제식 : 모자면에 금사(금실)로 자수 ○ 부착위치 : 근무모 전면 중앙 ○ 대상 : 모자착용 대상 대원	
표지장	○ 소재 : 투윌지 100% ○ 제식 : 지름 7.8㎝하고, 흰색바탕에 법원마크를 황, 청, 흑색 자수 – 상단에 '대한민국법원', 하단에 '자유 · 평등 · 정의' 문자 자수 ○ 부착위치 : 춘추, 하, 추동, 동복, 점퍼, 방한복 좌측 소매 상단에서 1㎝ 아래 (사회복무요원은 좌측에 사법부 표지장을, 우측에 사회복무표지장 부착) ○ 대상 : 전 대원	 (보안관리대원)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넥타이 핀	○ 소재 : 황동에 금도금 ○ 대상 :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제외 대원	

종별	소재, 제식, 부착위치 및 대상	도형
명찰	○ 소재 : 폴리에스텔 65%, 나이론 35% ○ 제식 : 흰색 또는 청회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 부착위치 : 춘추, 하, 추동, 동복 상의 우측주머니 상단 1㎝ 위, 임부복 우측 가슴 ○ 대상(흰색) : 보안관리대원 (청회색) :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 9㎝ → 홍 길 동 3.5 (보안관리대원) ← 9㎝ → 대 법 원 홍 길 동 Hong K. D. 3.5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계급장	○ 소재 : 마뜨지 100% ○ 제식 : 감색바탕에 초록 및 흰색 자수 ○ 부착위치 : 어깨표장지 ○ 대상 :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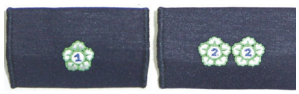

2. 착용 모습

가. 하복, 춘추동 · 하복 재킷,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그림 3] 하복, 춘추동 · 하복 재킷,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착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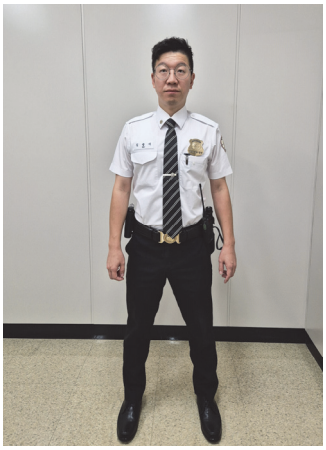

종류: 하복(상 · 하의)
수량: 상(3벌), 하(2벌)
지급주기[50]: 각 2년



종류: 춘추동 · 하복(재킷)
수량: 춘추(1벌), 하(1벌)
지급주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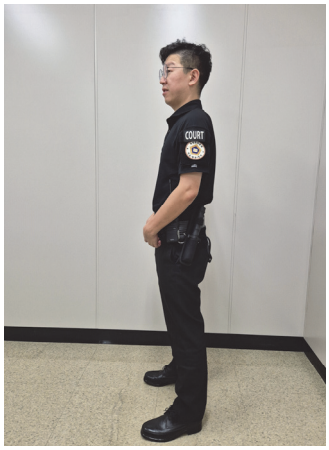

여름철 기능성 간편복
(인천가정법원)

나. 춘추 · 동 점퍼, 춘추 · 동복

[그림 4] 춘추 · 동 점퍼, 춘추 · 동복 착용 모습



종류: 춘추 · 동(점퍼 상의)
수량: 춘추(1벌), 동(1벌)
지급주기: 3년



종류: 춘추 · 동복(각 상 · 하의)
수량: 상(2벌), 하(2벌)
지급주기: 각 2년

3. 지급 방법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제복 및 장구류 지급 현황을 관리하며 각 지급주기에 따라 매년 소요량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 예산실로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실에서는 전국 법원 재무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복업체는 각급 법원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단화, 넥타이, 모자, 표지장 등은 전국 법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고 있다.

50)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일반부서의 경우 춘추 · 동 · 하복 근무복은 상 · 하의 각 1년에 1벌씩 지급하고 그 외 품목은 3년에 1벌씩 지급하고 있음. 법원보안관리대의 근무복의 경우 2년에 2벌 지급하므로 재킷 외(5년) 특별한 차이는 없음.

제3절 사건 · 사고 발생 및 대처 현황

I. 사건 현황 및 분석[51]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현황

[표 15]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현황(건)

구분	욕설 · 난동	폭행 · 상해	명령 불응	자해 · 자살	도주	녹화 · 녹취	응급 환자	기타	계
2015년	24	1	2	1	0	3	56	5	92
2016년	36	4	0	3	1	2	53	5	104
2017년	46	2	3	4	0	28	62	25	170[52]
2018년	42	5	0	1	4	18	48	5	123
2019년	33	1	0	3	3	4	30	10	84
2020년	21	1	0	0	2	9	56	1	90
2021년	14	9	0	2	1	1	32	0	59
2022년	40	6	0	0	1	0	31	0	78
2023년	40	2	0	1	1	4	5	0	53
2024년	33	3	0	5	2	1	43	2	89
합계	348	36	8	23	16	70	453	59[53]	1,013
비율	34.3%	3.6%	0.8%	2.3%	1.6%	6.9%	44.7%	5.8%	100%

51)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67-78 현행화 및 일부 재구성, 대법원보안관리대 제공 자료.

52) (2017년~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진행에서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 방청인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례.

53) 기타 59건: 과도한 호응 및 박수, 물건투척, 당사자 사칭, 음주방해, 증인신문 중 휴대폰 계속 울림, 재판 중 횡설수설, 그 외 법정질서 훼손행위 등임.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발생 비율

[그림 5]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발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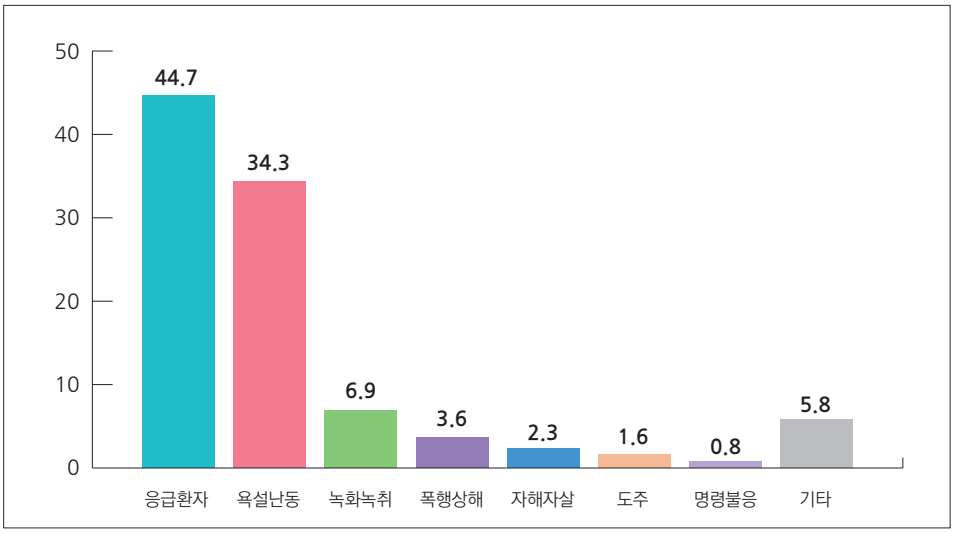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발생 건수 추이

[그림 6]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발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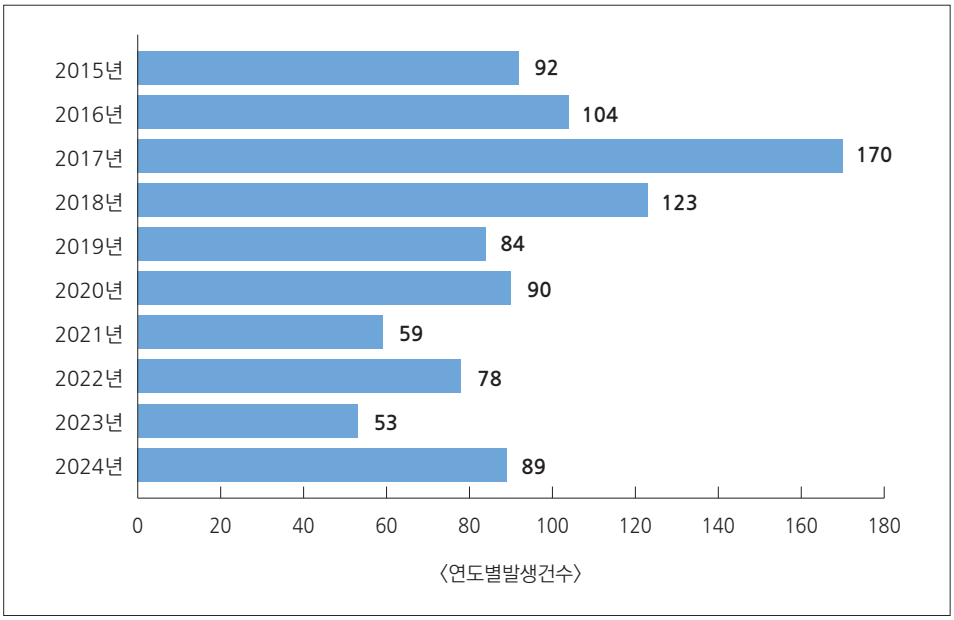

4. 대표적 주요 사례

가.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폭언, 욕설

서울서부 지방법원	일　시 : 2024. 12. 10. 장　소 : 민사법정 412호 내　용 : 선고 직전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원고가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전주지법 군산지원	일　시 : 2024. 10. 15. 장　소 : 302호 형사법정 내　용 :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위치시키자 큰소리로 이야기 하는 등 법정을 소란하게 하여 퇴정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소란을 피움 조　치 : 감치결정(5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일　시 : 2023. 10. 10. 장　소 : 서관 513호 법정 내　용 : 피고인이 선고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법정에서 고성을 지름 조　치 : 재판장의 퇴정명령(강제퇴정)
서울가정 법원	일　시 : 2023. 6. 9. 장　소 : 103호 법정 내　용 : 재판장이 법정모독죄로 감치될 수 있다고 3회 고지하였음에도 폭언과 소란의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함 조　치 : 과태료 결정(100만원)
인천가정 법원	일　시 : 2023. 11. 9. 장　소 : 203호 법정 내　용 : 보호소년이 처분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재판부에 욕을 하고 직원을 폭행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나. 재판 진행 중 소송관계인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서울북부 지방법원	일 시 : 2024. 12. 3. 장 소 : 602호 형사법정 내 용 : 피고인이 공판검사의 구형을 듣고 불만을 품고 소란행위를 하여 재판장에게 구두경고를 받고도 위협적인 행동을 함 조 치 : 감치재판(불처벌)
수원지법 안양지원	일 시 : 2024. 5. 2. 장 소 : 405호 법정 내 용 : 피고인으로 출석한 손○○(만취 상태)는 재판이 끝난 이후 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도 나가지 않고 법정 내에서 욕설 및 고성 등 소란행위를 함 조 치 : 재판장의 퇴정명령(강제퇴정)
광주지방 법원	일 시 : 2023. 1. 11. 장 소 : 202호 법정 내 용 :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자 “△△년 몸이나 팔아라”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 및 법정을 모욕하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제주지방 법원	일 시 : 2023. 3. 6. 장 소 : 302호 법정 내 용 :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법정 퇴정 거부 및 욕설과 폭력행위(꼬집기, 발로 차기 등)를 하며 퇴정을 명하는 재판장의 지시에 완강히 거부함. 조 치 : 소년원 남직원 2명과 함께 보안관리대원이 해당 학생을 호송 차량까지 들어 이동

다. 법정에서 무단 녹음 및 녹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 시 : 2024. 6. 3. 장 소 : 서관 525호 내 용 : 재판장이 녹음을 불허하였으나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숨기고, 녹음을 불허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움. 조 치 : 감치결정(20일)
제주지방법원	일 시 : 2024. 1. 18. 장 소 : 201호 법정 내 용 :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조 치 : 재판장의 퇴정명령(강제퇴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일 시 : 2024. 1. 23. 장 소 : 본관동문 검색대 내 용 : 청사 내 촬영장비 반입 및 청사 내부 촬영 시도를 하였고 관련규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인천지방법원	일 시 : 2024. 9. 19. 장 소 : 형사단독과 내부 및 6층 승강기 홀 앞 내 용 : 민원인에게 법원사무실 무단으로 촬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오히려 본인이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감금당했다고 주장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서울고등법원	일 시 : 2023. 3. 30. 장 소 : 동관 1층 회전문 앞 계단 내 용 : 라이브 방송이 불가하다는 보안관리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라. 청사 내 각 실 · 과 사무실 등에서 소란

서울고등법원	일　시 : 2024. 4. 19. 장　소 : 서관2층 종합접수실 내　용 :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접수실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접수증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일　시 : 2024. 4. 26. 장　소 : 서관2층 종합접수실 내　용 : 물건을 던지려 하고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행위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대구고등법원	일　시 : 2024. 12. 18. 장　소 : 신관 B2 내　용 : X-ray 검색 중 당사자 권○○의 가방에서 식칼(총길이 35㎝, 칼날 길이 25㎝)을 발견한 근무자가 칼을 회수하려고 하자 당사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얼굴 및 복부를 폭행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제압함 조　치 : 경찰출동 및 인계
수원지법 성남지원	일　시 : 2024. 4. 15. 장　소 : 형사과 내　용 : 형사사건의 판결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형사과에 방문한 민원인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 행위를 함 조　치 : 재판장의 퇴정명령(강제퇴정)

마. 법정구속 시 도주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　시 : 2023. 4. 18. 장　소 : 서관 509호 법정 내　용 : 법정구속 시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 조　치 : 보안관리대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교도관 인계

5. 사건 분석

위 자료는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전국 법원의 사건 · 사고 발생보고서를 매월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다. 최근 10년간 전국 법원의 법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는 1,013건으로 발생 빈도 순서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453건(44.7%), 욕설 · 난동 등 소란행위는 348건(34.3%), 무단 녹화 · 녹취 70건(6.9%), 폭행 · 상해 36건(3.6%), 자해 · 자살 시도가 23건(2.3%), 도주 16건(1.6%), 명령불응 8건(0.8%)이 발생하였다.

법정소란은 재판장의 심리진행 또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증언 도중 증언내용에 대한 항의가 주된 원인이며 그 형태는 욕설, 모욕, 폭행, 상해 등 폭력적인 행위에서 무단 녹화, 녹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판의 종국결과가 나오는 판결의 선고 시에 법정 소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참석하는 소송절차의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퇴정 후에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결과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소송에 참여한 다른 소송관계인에 대한 고성 및 항의 표시가 많았다. 방청석의 경우 정치적 사건이나 유명인의 소송사건에서 방청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군중심리에 편승하여 집단 소란행위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내 사건 · 사고 발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018년도의 특정사건[54]으로 인한 급증 외에는 53건에서 104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81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정 내 발생 빈도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건 · 사고는 응급환자로 원고, 피고(인), 증인, 소송관계인, 방청인을 포함하여 그 대상도 다양하고 대부분 재판 진행 중 과호흡 증상,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어지러움 증 호소, 복통 등 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응급상황인 경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경미한 경우는 안정을 취한 뒤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등 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빈도 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욕설과 난동으로 인한 소란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 건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성을 지르는 행위, 라이브 방송이 불가하다는 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도 불구하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진행에서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 방청인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례임.

고 이에 항의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보호소년이 처분결정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행위, 원고와 피고의 말다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경고 또는 퇴정명령으로 끝나지만, 그 행위가 지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인계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II. 대처 현황 및 분석[55]

1.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표 16]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건)

구분	퇴정 명령	감치 명령	과태료 처분	119신고 병원후송	경찰 등 인계	훈방/ 귀가조치	기타	계
2015년	2	15	2	48	0	18	7	92
2016년	3	8	0	50	7	30	6	104
2017년	34	17	10	55	2	45	7	170
2018년	13	8	6	35	7	47	7	123
2019년	4	8	2	30	1	29	10	84
2020년	4	8	1	40	8	16	13	90
2021년	4	3	0	30	8	14	0	59
2022년	1	5	1	21	14	33	3	78
2023년	7	3	0	38	3	2	0	53
2024년	12	7	0	42	6	20	2	89
합계	96	89	23	424	58	260	63[56]	1,013
비율	9.5%	8.8%	2.3%	41.8%	5.7%	25.7%	6.2%	100%

55)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79-88 현행화 및 일부 재구성, 대법원보안관리대 제공 자료.

56) 기타 63건: 귀가 후 형사고발, 법정구속, 소년보호소 임시 위탁, 경찰을 배치하여 추가 난동 대비, 법률상담소 안내, 검찰 고발, 교도관 인계, 자체 응급치료 후 훈방, 가해자 격리, 재판부 면담, 법원간호사 응급조치 후 안정, 응급조치 후 구치감으로 호송, 코로나 감염 의심자로 법정 내 소독, 직권으로 소송구조 신청 등.

2.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처리 결과 비율

[그림 7]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별 처리 결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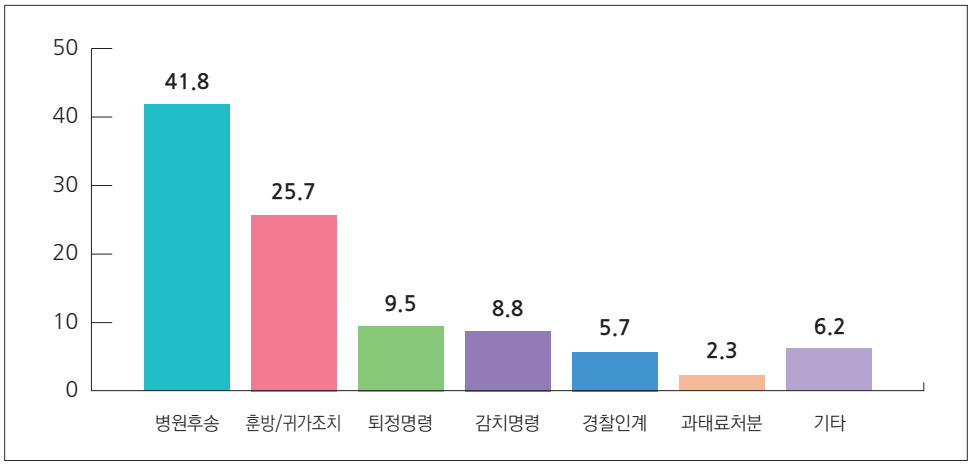

3.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추이

[그림 8] 최근 10년 법정 내 사건 · 사고 처리 결과 추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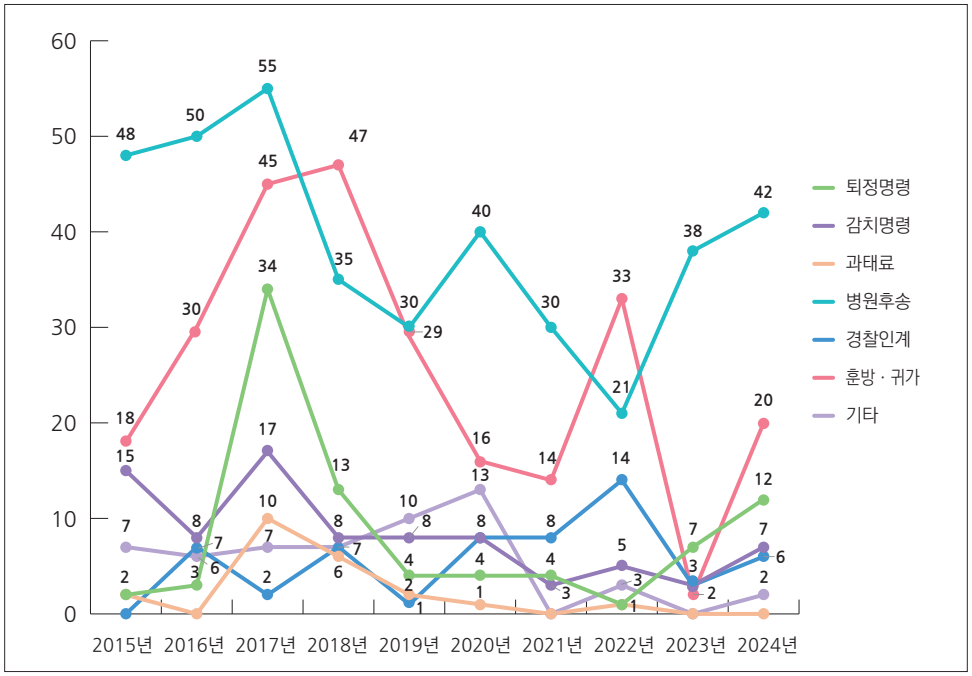

4. 결과 분석

위 자료는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전국 법원의 사건 · 사고 발생보고서를 매월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법원의 법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처리 건수는 1,013건이다.

처리 결과의 비율 순서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119 병원후송 424건(41.8%), 훈방 및 귀가조치 260건(25.7%), 퇴정명령 96건(9.5%), 감치명령 89건(8.8%), 경찰인계 58건(5.7%), 과태료 처분 23건(2.3%), 기타 63건(6.2%)로 나타났다.

감치결정이 과태료 결정에 비하여 약 4배 정도 많고 법정 내 소란 발생 시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는 5.7%에 이르지만 법원에서 형사고발하는 조치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훈방 및 귀가조치의 비율이 25.7%로 기타조치를 제외한 그 외 제재조치가 26.3%로 훈방과 제재조치는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정 내 발생하는 사건 · 사고의 절반 정도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중한 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 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119신고에 의한 병원후송이 가장 많았고, 소란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보안관리대원이 설득하여 훈방하거나 귀가조치를 하였고, 퇴정명령을 한 경우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소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감치명령, 과태료 처분 및 경찰에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III. 법정 외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현황 및 조치

법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외에 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나 사건 · 사고발생보고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사 내 종합민원실, 총무과 감사계 사무실 및 각과 사무실 등에서 재판의 불만, 직원의 불친절,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및 다툼 등으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총무과 감사계 직원 또는 보안관리대원이 설득하여 자진 귀가시키거나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형사처벌 사례

1. 개요

법정소동 등 법정 내 소란행위는 경미한 경우 보안관리대원이 설득하거나 귀가조치 또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으로 종료되기도 하지만 소란행위에 폭력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정소동죄, 법정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형사법정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대규모 불법시위대가 법원청사 출입문을 손괴하고 청사 내에 무단 침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복도를 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의 범죄로 처벌 받는 등 과거와 비교하여 심각한 보안침해 범죄사건이 있었다. 법원청사 및 법정 내에서 발생한 아래 형사처벌의 주요사례를 통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현장 대응 및 조치 등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사례

다음은 사법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소동, 법정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최근 법원 내에서 발생한 주요사건 등 사례를 소개하고 사안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도록 한다.

사건: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번호: 2024고합○○○ 서울 남부지방법원
발생일시: 2024. 8. 28.

내용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던 중, 2021년 경 피해자 △○○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3. 6.경 ○○○○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24. 2.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사실을 포함하여 약 △△여 명으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24. 8.경까지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였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목격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12:5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와 '3M' 반코팅 면장갑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해자의 재판이 진행될 위 법원 ○호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14:26경 위 ○호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면장갑을 꺼내어 오른손에 끼고 가방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향하게 오른손에 쥔 후,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증인신문을 참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제껴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소동으로 인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결과: 징역 5년,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138조(법정소동의 점)

사건: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사건번호: 2024고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발생일시: 2024. 7. 4.

내용

1. 법정소동

피고인은 2024. 7. 4. 11:2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4고단○호 재물손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검사 ○○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자 화가 나, "징역 1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석 책상을 내려치고, 계속해서 검사가 구형 이유를 진술하자 "아! 때리려면 때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므로 법정질서유지 및 감치 재판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피고인을 검사 뒤편에 위치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격리하자, 피고인은 위 대기실에서 다시 "씨발!"이라는 등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던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법원 경위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원 제○호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위 법원 경위 김○안, 이○기, 손○안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몸으로 김○안을 밀쳐 넘어뜨리고 김○안의 바지에 침을 뱉고, 손과 몸으로 이○기를 밀치고 손○안을 향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위 김○안, 이○기, 손○안의 법정 소란행위 방지 및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결과: 징역 6월,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사건: 법정소동
사건번호: 2022고단○○○ 서울서부지방법원
발생일시: 2022. 12. 6.

내용

피고인은 2022. 2. 15. ○역에서 역무원 ○○을 협박하고, 철도경찰관 ○○를 폭행한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사실로 2022.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12. 6.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2고정○호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위 사건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의 증언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가 검사 신문 중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증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님. 누군가 얼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소리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폐시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위 이○○에게 "너 얼굴 봤다 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법정경위와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검사가 신문을 다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이○○에게 "이렇게 하면 좋게 안끝난다"고 말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진행을 계속 방해하면 퇴정하겠다고 경고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후 재판장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해 물어보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재차 자리에서 일어나 차폐시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내가 거기 역무원한테 뭐라고 폭언합디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결과: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번호: 2019고단○○ 창원지방법원
발생일시: 2019. 10. 22.

내용

피고인은 2019. 10. 22. 14:20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호 법정 방청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사건(2019고정○○호)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물과 커피를 마시던 중, 법원보안관리대원 ○○으로부터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에게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 ○○○으로부터 언행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커피잔을 법정 벽면을 향해 던져 그 안에 있던 커피를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소란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법원보안관리대원들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명하였다.

1. 법원보안관리대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14:50경 위 창원지방법원 ○호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받은 법원보안관리대원 △△ 및 교도관과 함께 위 법정 옆에 있는 재소자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과 교도관을 향해 "놔라 씨발놈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을 밀치고,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질서유지에 관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도관 김△△ 및 법원보안관리대원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법정에서, 위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감치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및 교도관과 함께 법정 옆에 있는 재소자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교도관 김△△의 허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 ○○의 손목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의 왼쪽 팔 부위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치 결정의 집행에 관한 교도관 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고, 법정질서유지에 관한 법원보안관리대원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상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사건: 법정모욕
사건번호: 2025고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발생일시: 2025. 7. 10.

내용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합○호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2025. 7. 10. 10:30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29에 있는 위 법원 ○호 법정에서 위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 ○○○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퇴정하면서 법원 직원 및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재판장을 향해 "판사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법정 경위와 교도관의 제지를 받아 수용자 대기실로 복귀하면서 "판사 개새끼 씨발놈, 내가 안했다니까 아 진짜 좆같네", "아 진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결과: 징역 4월,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번호: 2025고단○○ 서울서부지방법원
발생일시: 2025. 1. 19.

내용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은 2025. 1. 19. 0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법원 후문 인근에서 '윤○○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 · 시위를 진행하던 중 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일

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3:26경 일부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이 파손하여 강제로 개방한 법원 1층 현관 출입문 셔터 아래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 법원 1층 로비까지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사건번호: 2025고단○○○ 서울서부지방법원
발생일시: 2025. 1. 19.

내용

2025. 1. 19. 03:00경 법원이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 시위 참가자 중 다수가 이에 항의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법원 후문을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하였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으며,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당직실 내 CCTV 서버 등을 파손하고, 일부는 판사실이 위치한 건물 7층까지 진입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은 2025. 1. 19. 0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법원 후문 인근에서 '윤○○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 · 시위를 진행하던 중 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팔로 강제로 들어 올려 위 출입문을 통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 법원 7층까지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1층 유리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으로 위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인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법원 7층에 이르러, 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등의 이유로 법원 7층 복도를 배회하는 등 수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결과: 징역 4년,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3. 사례 분석

위 주요사례를 종합하면 법원 내 사건 · 사고는 단순한 법정소란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 불만의 표출이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 흉기범행 · 청사침입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례들은 법정 내 질서유지 문제가 개별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차원을 넘어 재판당사자 · 증인 · 법원공무원 및 법원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관련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정소란은 우발적 언동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구형 결과에 반발하여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내려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치재판 여부 결정을 위한 격리 이후에도 대기실에서 욕설, 법원경위에 대한 밀침과 물건 투척으로까지 범행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 창원지방법원 사례에서도 방청 중 제지를 받은 사람이 소란행위를 계속하다가 재판장의 구속명령과 감치결정 집행 과정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법정 내 소란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형사범죄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천지원 사례와 창원지방법원 사례 모두 법정 인접 대기실이나 이동 · 호송 과정에서 법원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이어졌다. 이는 후속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제압, 분리, 이동통제), 보호장비 사용이 구체적으로 규범화되지 않으면 실질적 질서회복으로 완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출입통제와 검색체계의 한계는 중대한 위해사건으로 직결될 수 있다. 202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에서는 피고인(별건 피해자)이 그동안 재판을 방청해 온 사람으로서 혼잡한 시간대에 가방 속에 흉기와 장갑을 숨긴 채 검색대를 통과한 뒤, 법정 안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살인미수와 법정소동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법원 출입 혼잡 시간대 검색의 집중도 저하, 가방 내 은닉물 확인의 한계 등 복합적 취약요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에서 피고인은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몸을 일으켜 시설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증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였다. 이는 차폐시설 설치 자체만으로는 증인보호가 완성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현장 배치와 대응절차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들에서는 집회 ·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법원 건물 외벽과 출입문을 손괴하며,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여 판사를 찾기 위한 수색행위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법정소란이나 민원인 난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집단적 보안침해로서 청사 외곽경계, 출입문 방호, 건물 내부 동선 통제, 층별 접근차단, 경찰과의 공조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법원의 핵심 보호법익인 재판의 독립성과 법원기능 자체가 직접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자체 대응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경찰과의 현장지휘 및 증원체계, 고위험 재판 또는 집회상황에 대한 사전 공조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절 청사방호 대책 현황

I. 2016년 안전한 근무환경 TFT

1. 배경

2016. 6. 9. 패소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직무수행 중인 법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가족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전문기관에 전국 법원 청사의 보안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법원 보안운용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법원 청사보안 TFT'를 구성하여 법원 청사보안설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57]

2. 대책 및 성과

법원보안관리대 공통매뉴얼 마련,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편 및 지휘체계 개선, 종합상황실 구축 예산확보(CCTV 교체 포함), 법원직원 보안교육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보안교육 기간 연장 및 과목 개선, 법원보안관리대 내부강사 양성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안전강화를 위하여 주출입구의 수를 최소화하여 모든 출입구에 문형검색대와 X-ray 소형화물 투시기 배치,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색 실시, 스피드게이트, 비상벨, 사각지대에 CCTV 추가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무자와 민원인 간 직접접촉 차단을 위하여 유리차단막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57) 법원게시판 (2016. 6. 16.),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민원실 등 근무공간의 안전강화 방안에 관한 안내말씀', http://gw.scourt.go.kr/intranet/archive/backup2016.nsf/0/5DD389CFA8DFE3FC49257FF200737271?opendocument&option=portal&type=portal&slocal=Y (2026. 3. 4. 최종 확인).

II. 2019년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T

1. 배경

2018. 11. 27.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정문에서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법정이나 청사 안팎의 난동 등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도 높아짐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안전한 법원을 위한 물적 · 인적 토대를 마련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 능력의 향상, 피해 직원의 조기 업무 복귀를 위한 지원 대책, 민원서비스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였다. 2018. 12. 19.부터 2019. 3. 19.까지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법원청사의 구조개선, 보안설비 보완, 보안담당 인력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신변위협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58]

2. 대책 및 성과

법관 집무실 등 주요 업무공간에 전자시건 장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시작한 민원부서의 유리차단막은 27.2%의 설치율로 계속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예산요구를 하여 3~4년 내 전국 법원 모든 민원실에 설치를 목표로 보안설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59] 또한, 보안담당인력의 주기적인 전문교육, 자체 모의훈련, 직무교육실시, 상황발생 시를 대비한 신속한 전파체계를 담아 보안매뉴얼을 현행화하고, 별정직 보안관리대원의 일반직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우수 직원의 표창, 국내연수 지원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신변위협에 대하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조치 방안과 매뉴얼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 검토과제로 사법부 보안컨트롤 역할 강화와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8)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실,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을 위한 TFT 종합보고서 (2019), 2.
59) 유리차단막은 2023. 6. 14. 기준 전국법원 및 지원, 시 · 군법원, 등기국, 등기과 · 소의 민원접수창구 등에 설치율 95%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2023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참조).

III. 2023년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1. 배경

2023. 8. 14. 청주지방법원 소속 주무관이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민원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고 법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TFT가 구성되었다.

TFT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각급 법원 현실에 맞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물론 각급 법원 보안담당자, 법원노동조합 추천위원 등이 포함되어 3개월 간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8개 법원에 대한 출장 등의 활동을 통하여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전국법원장회의에 보고하여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60]

2. 대책 및 성과

사전 예방책으로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구조 개선과 현장 대응책으로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사후 구제책으로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방안으로 나누어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사구조 개선안으로 청사출입구 통제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모델을 소개하였으며 청사 여건별 대응방안과 시 · 군법원의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한 민원부서의 유리차단막 설치는 2023. 6. 14. 기준 전국법원 및 지원, 시 · 군법원, 등기국, 등기과 · 소의 민원접수창구 총 2,740여 접수창구에 설치율 95%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61]

아울러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법원공무원의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선하고, 법정 내 특이상황 대처방안과 각급 법원의 보안장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책으로 심신피해에 대한 의료

60)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24. 1. 16.), 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580&gubun=6 (2026. 3. 4. 최종확인).

61)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종합보고서 (2024. 1.), 20.

비 지원방안과 법적 대응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Ⅳ. 2024년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1. 배경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방청객(피해자)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직후 바로 대책회의를 통해 법정 보안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하여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62]

2. 대책 및 성과

법원 청사의 출입 시 검색단계에서 보안강화를 위하여 물적 측면으로 검색장비를 개선하고 인적 측면에서 법원보안관리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검색강화 사실에 따른 외부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도 확대하였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법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정근무 시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안지원 인력의 확충 · 활용안과 보안관리대원 증원을 위한 대책 마련, 보안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확대방안, 법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Ⅴ. 소결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TFT 운영과 종합대책 수립을 통하여 출입통제 강화, 보안장비 확충, 시설개선, 법정 내 질서유지 지원 등 청사방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62)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24. 10. 4.), 법원행정처,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01&gubun=6 (2026. 3. 4. 최종확인).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원 청사와 법정의 안전 확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실제 현장의 위험요소를 완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대체로 시설적 · 운영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 구조, 조직 운영체계, 인력구성 및 현장 대응기준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사방호의 실효성은 단순히 검색장비나 물리적 차단시설의 확충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위험상황 발생 시 이를 일관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다원적 직렬구조에 따른 업무 불균형, 지휘 · 감독체계의 비효율성, 유형력 행사기준의 불명확성, 보안정책의 지속적 점검과 보완을 담당할 전담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청사방호 대책은 필요하고 유효한 대응이기는 하지만 법원보안관리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근본적 개선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과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 · 인사 · 제도적 규범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문제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조직운영상 비효율성

I. 직렬 구성의 다원성

앞서 법원보안관리대 직렬 구성의 내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경비관리대의 기존 법원보안업무를 담당하였던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전문분야 계약직공무원(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9호)으로 선발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직렬로 전환하고 있다.

2025. 7. 1. 기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 1,061명 중 법원경위 현원은 116명(10.9%), 보안직류(구 방호원) 현원은 55명(5.1%), 청원경찰 현원은 34명(3.2%), 보안관리직류[보안관리 657명, 보안관리대원(별정직) 3명, 일반임기제9호 196명]856명(80.6%)으로 구성되어 크게는 4개의 직렬이 법원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 법원경위

가. 법원조직법상 법정 사무 집행기관

법원경위는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상 근거가 있었고, 법원보안관리대를 구성하는 다른 직렬과 다르게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를 둔다.”라고 별도의 설치 근거 규정이 있는가 하면, 제2항에서는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3항에서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이면서 일부 직무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법원보안관리대원과 차이점이 있다.

[법원조직법]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항에서 법원경위의 구속영장 집행보조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 제4항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권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경위가 법원보안관리대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구성원과 달리 법정질서 유지와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 등 재판절차와 직접 연계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기능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일 조직 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불균등하게 만들고 업무배치 및 지휘 · 감독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및 기능을 재정비함에 있어서는 법원경위의 고유한 직무영역과 일반 보안관리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 · 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2. 방호원

보안직류(구 방호원)은 1963년 법원공무원직제령 제55호에 의하여 기능직 방호원으로 최초 규정되어 법원청사 방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2013. 12. 12.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대법원 규칙 제2507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보안직렬로 임용되었다. 2014. 12. 30.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대법원 규칙 제2579호)으로 보안경비 직렬과 보안 직렬이 보안관리 직렬(보안관리직류 + 보안직류)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이다.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7730호)으로 법원경비관리대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2025. 7. 1. 기준 전국 법원에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3. 청원경찰

가. 제도 개관[6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담당을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 제도는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962. 4. 3.(법률 제1049호)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각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

63) 김재광 · 양지수, 민간경비업법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박영사 (2022), 173−183.

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즉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민간경비 제도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며, 시간외 수당도 경찰공무원 단가로 받지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 직급도 없고 승진도 없다.[64]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업무 수행 시 지휘체계 및 조직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수에 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하는 순경, 15년 ~ 23년까지는 경장, 23년 ~ 30년까지는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65]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이 순경에서 경위까지 근속승진하는 데 최소 15년 6개월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여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이 30년이 지나서야 경위급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66]되고 있다.

사법부 내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법원보안 업무의 직렬 통합 정책으로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없이 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하여 2025. 7. 1. 기준 전국 법원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직무 범위

청원경찰에 부여된 직무상 권한은 경비구역의 경비목적 범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거동 수상자의 정지 · 질문 · 조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 등 적절한 보호조치(동법 제4조), 위험상태 발생 시 경고 · 억류 · 피난 등의 조치 또는 통행의 제한 · 금지조치를 통한 위험발생 방지(동법 제5조), 범죄예방 및 저지를 위한 경고 · 제지 등의 범죄예방조치(동법 제6조), 범인체포,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 또는 경찰장구의 행사(동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등의 권한이 있다.[67]

이처럼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라 경비구역의 경비업무 수행을

64) 중부일보, '14년간 경찰 최하위 계급 보수받는 청원경찰 처우개선시급' (2025. 7. 3.),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7144 (2026. 3. 4. 최종확인).
65)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2항 청원경찰의 보수.
6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2025. 7. 14.), 의안번호 1145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67) 신형석,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치안정책연구소 (2021), 12-13.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68]

II.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1. 직렬 상호 간 업무 불균형

법원경위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근거 규정 외 제64조 제2항에서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81조의 구속영장 집행의 보조업무와 제151조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감치의 집행 권한 업무를 규정해 놓은 이유로 법원경위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동일 구성원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정보안 업무를 우선적으로 전담하여 왔다.

반면, 보안직류(구 방호원)와 청원경찰은 같은 법원보안관리대의 구성원이면서 법정보안 업무보다는 주로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 실무이다.

출입자의 보안검색, 청사 내 소란행위 등 직무방해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담당하는 청사방호 업무는 일반적으로 법정보안 업무에 비하여 비선호 업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는 1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업무편차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에서 제외되는 법원경위, 보안직(구 방호원), 청원경찰의 각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 상호 간 순환보직의 원칙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함께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구성원인 법원경위, 보안직류, 보안관리직렬, 청원경찰 상호 간의 사무분담 편성에 있어서 업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69]

---

68) 신형석,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치안정책연구소 (2021), 8.

6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16–17 재구성.

2.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 업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보조 업무[70]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감치 집행업무[71]는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즉, 법원경위는 그 집행업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원경위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795호, 개정 2022. 2. 7.) 제60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항에서 '구속영장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 법원경위 **그 밖의 법원직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밖의 법원직원**'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현장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 제한과 직결되는 영역의 권한부여를 하위규범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아울러 예규는 사무처리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부규범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권한주체를 새로이 포섭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실무와 법률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에 사법경찰관리가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더구나 구속피고인이 아닌 때에는 법정에 교도관도 없는 경우가 있다.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법원경위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자연 감소되어 현재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1,061명 중 116명(전체 10.9%)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인적 구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

70)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71)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따라서, 법원경위가 입회하지 않는 법정에서 보안관리직렬의 법정 내 구속영장 집행보조 업무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감치 집행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법원경위에 한정하지 않고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승진 불균형으로 인한 지휘체계의 취약성

앞서 제2장 제2절의 Ⅱ. 법원보안관리대의 인적구성 현황표를 보면 법원경위 및 보안직류는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채용을 중단한 이후 당시 8급, 9급 경위서기(보) 및 보안직류는 순차적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2025. 7. 1. 기준 8급, 9급 현원은 각 0명이 되었다.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없이 보안관리 직렬로 충원하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렬 통합 정책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으로 입직한 대원 중 일부가 2026. 1. 1.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일반승진하였다.

보안관리직류의 승진이 다른 직렬(예: 일반관리직)에 비하여 늦은 이유는 과거 별정직(임기 10년 계약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 보안관리직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조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근무기간 중 일부만 반영되어 근속기간이 짧게 인정되었고,[72] 더구나 위 현황표를 보면 보안관리직렬의 보안관리주사보(7급) 정원은 10명[73]만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승진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5급, 6급 정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직체계도 법정보안팀장은 법원경위 직렬이, 청사방호팀장은 보안직(구 방호원) 중 선임이 각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정경위나 보안직류가 없는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선임(8급)이 팀장을 담당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장이나 팀원으로만 장기간 근무하게 되어 보안관리

72)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2011. 7. 28.이전) 근속승진 9급→8급: **7년**(현: 5.6년)/ 8급→7급: **8년**(현: 7년) 같은 예규 제8조 제3항에 따라 별정직 10년 중 경력의 50%를 인정하되, 해당계급 근속승진 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므로, 7년의 1/2인 3.6년 인정. 그러므로 별정직 10년 + 일반직 3.6년 총 13.6년이 지나야 8급 근속승진이 가능하므로 다른 일반관리직과 동일 시점에 근무를 시작하여도 8급 승진이 6.6년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73)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33호, 2025. 12. 24. 공포)에 의하면 2026. 1. 1.자로 보안관리주사보(7급) 정원이 29명으로 조정되었음.

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동기 부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4.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다원적 직렬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원보안관리대원 Y(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법원경위는 법정보안 업무에 한정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보안은 작은 지원 단위에서 겸임을 하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창설 당시부터 통합하여 구분 없이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법원경위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그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대부분 7급 이상이 되었고 청사보안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J(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현재 법원경위는 법정보안 업무만 담당하고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보안관리직렬은 청사보안과 법정보안 업무를 순환하면서 모두 수행하므로 업무적으로 부담이 크다.

법원보안관리대원 H(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이 여러 직렬로 나뉘어져 하나의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사무분담과 직렬 간 보수의 차이도 있다 보니 동질감보다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이 시간이 흐를수록 합쳐지고 단합되어야 앞으로 법원보안관리대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III. 조직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1. 지휘 · 감독 체계

[표 17] 지휘감독 체계 및 근거

지휘 · 감독	내용	근 거
– 각급 기관의 장(법원장) – 재판장	– 청사관리권 – 법정경찰권	– 법원청사관리내규 제3조[74] – 법원조직법 제58조
⬇		
– 법원보안관리대장	총무과장(사무국), 사무과장	–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
⬇		
– 법원보안관리대원 (법정보안 + 청사방호)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3조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3조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구성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조에서는 '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법정경찰권은 법원조직법 제58조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법정경찰권은 재판장이, 청사관리권은 법원청사관리내규 제3조에 따라 대법원(법원행정처차장)과 각급 법원별 소속 기관장(법원장)이 지휘 ·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총무과장이,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사무과)장이 법원 일반의 모든 행정업무 외에 법정 및

74) 각급 법원장은 청사관리관으로서 법원청사관리내규에 따라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보안 등 청사관리권을 가짐. **청사관리권**은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행사하는 **사법행정권**이 발현되는 한 모습이고 청사관리 등 보안 관련 행위는 공동체를 위한 위험방지 작용으로 실질적인 **행정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다[홍정선, 기본행정법 제7판, 박영사 (2019), 575.].

청사보안 업무까지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집중도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업무관리 · 감독 체계

가.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및 9항에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2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안전관리관을 두고 그 분장 사무(별표 1의9) 중 4호에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보안관리대에 대한 지휘권은 각급 기관의 장과 재판장이 가지며, 법원행정처의 안전관리관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관리 · 감독 기능과 정책수립 기능은 안전관리관 소속의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담당하며 인원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서기관 1명), 서무계[75](사무관 1명, 법원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보안관리서기 1명)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보안관리대원의 관리 · 감독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75)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 · 직위별 임무)
① 보안관리대원의 임무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를 적용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직위별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대법원보안관리대장**
   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
   나. 대법원보안관리대 지휘 · 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
2. **서무사무관**
   가.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제 규정 검토 및 정비
   나.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발전방안 검토
   다. 청사보안 및 법정보안 관련 업무 지휘 및 감독
   라. 집회 · 시위 및 언론취재 통제 및 감독
   마.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정기 보고서 종합
   바. 국회 및 국정감사 관련 업무
   사. 대법원보안관리대 관련 민원상담 및 제안 검토
   아. 보안관리대원 관리 및 근무감독
   자. 기타 행정업무 및 지시된 사항

[표 18]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9] 〈개정 2014. 9. 1.〉

명칭	분장사무
안전관리관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비상계획 업무와 법원보안관리 업무

(1) 법적 근거 및 각 조직의 임무 정의

비상계획 및 재난 · 안전관련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전시 동원 대비 계획수립 등)'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2(안전책임관)에 의하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76]장은 해당기관의 재난 ·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조항은 안전책임관의 담당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8(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서 안전책임관[77]은 기관의 재난 ·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직위에 임명하도록 운영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안전관리관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의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비상대비 담당공무원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동원 등 신속한 비상대비 전환태세 준비를 위하여 기관의 을지연습, 비상대비계획, 동원자원관리 등 비상대비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는 법원조직법 제55조의2가 직접적인 근거로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질서유지 및 방호, 보안장비(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운용과 유형력의 행사 기준이 법률에 의해 특정되어 있다. 또한 규칙과 예규에 근거하여 법원 출입자의 검색, 청사방호, 법정 질서유지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7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와 시행령 제3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포함)와 지정방식을 정해 헌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도 안전책임관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77) 법원내부 직제상 '안전관리관'은 재난안전법 체계의 '안전책임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비상계획은 중앙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재난총괄) 및 동원 · 민방위 체계와의 기획 · 연습 중심이 핵심인 반면, 법원보안관리는 경찰 등 치안 및 현장대응과 연계가 필요하므로 두 조직의 대외 협력 네트워크 또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감독 · 점검 기능과 집행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관 내 재난 ·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두고 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점검 · 훈련 등에 대하여 관리 · 감독의 기능을 하는 성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안전관리관이 현장보안의 집행기능인 보안관리대 업무까지 동시에 맡으면 '자기 점검'[78]이라는 모순으로 내부통제 기능[79]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보안관리대의 본래 기능은 대법원의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라는 점에서 전국 법원의 보안관리대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제4장 국내 기관별 청사보안 · 경비 현황에서 각 기관별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의 분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계통 및 관리 · 감독 체계와 관련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원보안관리대원 K(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현재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총무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나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이 어렵다고 본다. 서무담당관 정도의 부대장급 책임자가 없어서 조직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리대원만 동일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안일함이 형성되어 긴장감과 통제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 안전관리관은 단순히 군 경력이 아닌 보안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인력이 담당

7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집행라인과 점검라인이 겹치면 독립성요건 충족이 어려우므로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79) 감사원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2023)과 각 부처 · 지자체가 준용하는 자체감사 기준에 의하면 점검기능이 피점검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같은 부서가 설계 · 집행 · 평가를 동시에 맡으면 통제의 설계효과 및 운영효과가 왜곡된다고 지적한다.

해야 한다. 비상계획업무와 보안업무를 분리하지 못하고 군 경력자 위주로 보직이 운영되다 보니 전국 법원의 보안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원보안관리대원 R(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보안관리대장, 법정보안팀장, 청사보안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휘통제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 대원은 일반임기제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상급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공식 지휘계통보다 개인적인 친분, 학연 등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P(경위주사: 경력 10년 이상)

- 총무과장이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겸임하는 현재 체계로는 1~2년마다 보직변경이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Ⅳ. 분석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및 직렬 통합 정책 이후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 보안직류, 청원경찰, 보안관리직류 4개의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하여 직렬 상호 간의 업무 불균형과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집행업무의 명시적 근거 부재, 직렬 구성원 간 승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부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본 법원보안관리대의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제5장 개선방안에서 각 직렬 간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의 삭제 및 통합 방안과 직렬 간 정원 통합, 직급 간 정원 조정 방안 등 관련 법률과 규칙 등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 및 업무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 총무과장의 보안관리대장 업무 겸임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직

제의 필요성과 부대장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비상계획업무와 법원보안관리대 관리업무의 분리여부에 대하여는 국회, 행정부 등 다른 기관의 업무분장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부분의 시사점을 발굴하여 사법부 내 별도의 보안지원과 또는 보안관리국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절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의 불명확성

I. 근거 및 기준

1. 근거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요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부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규정을 법원의 조직규범인 법원조직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체계적으로 법원조직법은 조직규범으로서 조직법상 권한의 배분만을 규율하는 규범임에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규범 구조상 조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신체적 유형력 행사 및 보안장비의 사용 요건을 그 강도와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80]

2.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 권한과 보안장비 사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성과 최소성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 내지 상당성의 원칙을 기본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80) 최정명 · 장인호,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0호 (2022), 323-324 부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또한 같은 조항은 일정한 위험상황 또는 질서위반 상황을 전제로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의 행위태양, 위해의 정도,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어떠한 수준의 조치가 허용되는지,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까지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81]

특히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의 사용이 그 강도와 위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하면 경비봉과 가스분사기의 사용요건을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구별 없이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82]

3.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비교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비교는 경찰관의 직무와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이 수사와 치안을 포함한 일반적 공공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데 비하여 법원보안관리대는 재판의 안전과 질서유지, 법정 및 청사의 방호라는 제한된 목적 아래 활동하므로 양 제도는 그 법적 성격과 기능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직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요청되고, 질서위반자의 행위 태양과 위해 정도에 따라 유형력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기준도 경찰과 동일한 직무를 전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침해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서 설치목적 및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유형력의 행사와 보안장비의 사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하면 법원 내 소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신체적인

81) 최정명 · 장인호,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0호 (2022), 323-325 부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82) 상게 논문, 323-324.

유형력 및 보안장비 사용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3항은 청사 출입자의 검색 권한을 규정하였지만 이에 수반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질문과 신원확인 등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직무질문의 규정이 없다.[83]

출입자 검색권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색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징후나 출입 목적의 불명확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신원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검색권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직무질문은 유형력 행사 이전 단계에서 위험 여부를 선별 · 차단하기 위한 덜 침해적인 예방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무질문 규정의 도입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색권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요건 · 절차 · 한계를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법원보안관리대는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해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대응수단이 제한된다. 법정구속, 감치집행, 현행범 체포 등과 같이 법원청사와 법정에서 대상자의 도주 방지 및 질서유지가 직접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19]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유형력 행사 비교[84]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유형력 행사 요건 규정	
법원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10. 16.[법률 제20465호, 시행 2024. 10. 16.]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	일부개정 2024. 3. 19.[법률 제20374호, 시행 2024. 9. 20.]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

83) 최정명 · 장인호,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0호 (2022), 327.

84) 상게 논문, 322-323.

법원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30.]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원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법원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 ·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 · 구속영장과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법원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II. 요건의 불명확성

1. 포괄적 규정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 및 보안장비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발동사유로 4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실무자 판단의 핵심이 되는 위험의 정도, 긴급성(임박성), 대상자의 행위태양(저항수준),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 발동요건의 판단 요소가 명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제지필요성의 판단이 개별대원의 경험과 재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사후적으로도 정당한

행사인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법 제2항 제4호는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서문란의 외연이 넓은 만큼 경미한 항의, 소란, 언행까지 유형력의 행사로 연결될 위험(과잉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신체적 제압의 정도(밀기, 끌기, 꺾기 등)와 장비사용의 요건(경비봉, 가스분사기의 사용 가능상황, 금지 상황, 사용 후 조치 등)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2. 경찰청과 비교

가. 규칙 제정(경찰청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무기 ·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과 경찰 내부적으로 전자충격기 · 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하고 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85]

나. 3대 원칙

위 규칙에는 기존의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서 더 나아가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② 대상자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

③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5) 경찰청 홈페이지, '전국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만들어' 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1B000001121590000 (2026. 3. 4. 최종확인).

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

미국, 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알기 쉽게 경찰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도식화하였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식화] 86)

[표 20] 경찰청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식표

대상자 행위	경찰관 대응
순응	협조적 통제
소극적 저항	접촉 통제
적극적 저항	저위험 물리력
폭력적 공격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공격	고위험 물리력

⇨

물리력 행사 연속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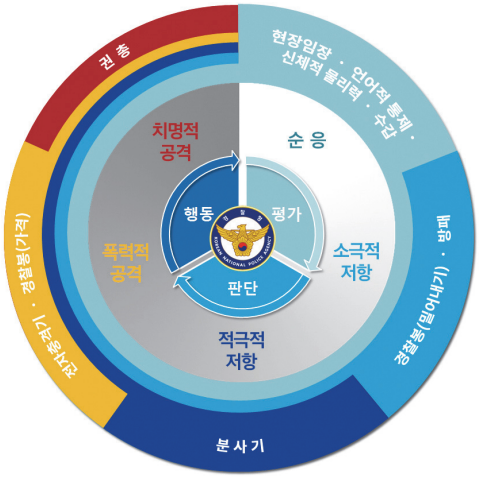

86)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경찰청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식표.

〔단계별 물리력 수단 사용 및 대응수준〕[87]

[표 21] 대상자 행위에 따른 단계별 물리력 수단 및 대응수준

대상자 행위		경찰관 대응 수준	
순응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	협조적 통제	▸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안내 ·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소극적 저항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음,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	접촉 통제	▸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 신체 일부 잡기 · 밀기 · 잡아끌기, (물체를 잡고 있을 때)쥐기 · 누르기 · 비틀기 ※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기
적극적 저항	▸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체포 · 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 체포 · 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밀침	저위험 물리력	▸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
폭력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 주먹 · 발 등을 사용하여 공격,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회피	중위험 물리력	▸ 대상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신체부위, 경찰봉 이용한 가격 ※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밀기 ※ 전자충격기 사용
치명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총기류(공기총 · 엽총 · 사제권총 등) △흉기(칼 · 도끼 · 낫 등) △둔기(망치 ·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임박,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위험한 신체적 폭력	고위험 물리력	▸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 권총 ※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

87)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대상자 행위에 따른 단계별 물리력 수단 및 대응수준.

3.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법정 질서유지 및 청사방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법관 및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관 E(지방법원 민사단독재판장, 주당 평균 기일: 1회 이상)

- 재판 진행 중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법정에 머무르며 재판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 감치까지 가지 않는 정도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재판장의 퇴정명령 시 그 집행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법정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물리력 정도는 필요하다.

법관 B(가정법원 소년단독 재판장, 주당 평균기일: 1회 이상)

- 법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개입시점과 대응하는 수위조절이 미숙한 경우가 있다.
-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호소년의 돌발행동 시 1명의 보안관리대원만으로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

변호사 B(주된 근무지: 서울지역, 월평균 법원방문 횟수: 15회)

- 악성 민원인의 경우 청사 밖으로 퇴거조치를 하고 있으나 최소한으로만 인정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보안관리대원도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어 결국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으로 힘들고 개인 입장으로서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워 문제를 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사조사관 A(○○가정법원, 조사주사보: 경력 10년 이상)

- 조사실에서 조사 중 당사자가 돌발행동을 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인근 법정의 보안관리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지만 이후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진정할 때까지 달래고 심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법원보안관리대원 A(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는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세부기준과 요건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문구는 보안요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상황별로 일관되지 않은 대응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대원의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 B(법원경위: 경력 10년 이상)

- 법정보안은 피고인 또는 방청인에 의한 소란, 자해시도, 폭력행위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이다.
-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보안관리대원을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D(경위주사보: 경력 15년 이상)

-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유형력의 행사 기준과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는 그 판단이 어렵고 대상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발생하므로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 공통된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

법원보안관리대원 L(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현재 법원조직법상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공통된 보안장비 운용 매뉴얼은 있으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 Q(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법정에서 퇴정은 재판장의 지시로 할 수 있으나 청사 내 각 실 · 과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청사 밖으로 퇴정 조치는 대상자의 화가 진정될 때까지 설득하면서 지켜보

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법원보안관리대장 S(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 법원보안관리대 인원이 부족하고, 법정구속 시 교도관이 법정 내에 없을 때에는 피고인을 임시로 인치할 장소와 감시인원이 없다.
- 피고인을 교도소까지 인계할 차량도 부족하여 도주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법정구속 시 보호장비의 사용권한이 필요하다.
-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의 행동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C(법원서기관, ○○지방법원 근무)

- 18시 이후 감치결정으로 피감치자를 구치소로 인계하는 경우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피감치자를 보안관리대원의 차량에 태우고 구치소에 이동한 사례가 있었다. 피감치인이 차량내부에서 위력을 가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피감치인의 신체를 포박할 수 있는 수갑이나 포승 장구 등 사용 권한이 없어서 보안관리대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III. 분석

경찰의 물리력(유형력) 행사의 규범 체계는 상위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장비 무기사용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고 제10조 제6항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방법 ·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할 기본원칙(3대 원칙), 단계별 물리력 수단 사용 및 대응수준을 규정(물리력 행사 연속체 도입)함으로써 법률, 대통령령, 예규에 이르는 다층적 · 세부적인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은 제55조의2 제2항 내지 4항에서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규정

하고 제1항에서 설치, 조직, 분장 사무에 관하여서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유형력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명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하위 규범으로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감치, 퇴정,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행사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만 보안관리대원이 유형력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 규범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5장 개선방안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법제화 및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3절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및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I. 보안관리 권한의 한계

1. 법정경찰권의 한계

법정경찰권한이 미치는 시간적 · 장소적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이는 순수한 사법행정권 또는 청사관리권의 문제가 된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따라 퇴정하여 법정에서의 심리를 방청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청사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청사관리관은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건조물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88]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에 근거한 형사재판에서 불구속피고인의 법정구속 업무,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에 의한 법관이 명하는 감치사건의 집행업무에서 피감치인의 신변을 법관이 명하는 집행장소인 관할구치소, 경찰서유치장, 검찰청사내 구치감 등으로 피감치자의 호송업무를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장구인 수갑, 포승줄 등 인신구속 장구사용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감치인의 도주

8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Ⅱ (2025), 454.

및 자해사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청사관리권의 한계

종합민원실 등에서 민원인이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에 직무상 일정범위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의 사용 권한이 있으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방위적 차원인 권한의 한계 때문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질서문란 행위자(제1호~제4호)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유형력이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방위적인 차원의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 청사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험예방과 관련하여 법원 청사 외부(청사 인근)에서 발생한 행위가 확대되어 법원의 보안 및 방호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사관리 권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 권한(법정경찰권 및 청사관리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원보안관리대원 D(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소란행위를 하는 민원인의 제지와 동시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우선이므로 상황실에 인력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감치 · 구속영장 집행 시 계호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유치 공간도 없어서 경찰, 교도관의 협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법원보안관리대원 E(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적인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경찰대가 도입되어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청사 보안을 위하여 방어적 물리력을 행사하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법원보안관리대장 K(법원서기관, ○○지방법원 근무)

- 계속적인 소란이나 난동 시에 보안장구(가스분사기, 삼단봉)를 사용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범이 아닌 한 이를 제압하기 위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해야 하고 행위자의 신체를 억압할 수 있는 경찰장구(수갑, 포승 등)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L(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법원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차량 접촉사고, 도난, 절도 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사권과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마샬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경범죄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사권과 강제력이 도입되어야 한다.
- 감치재판으로 피감치인을 호송해야 하는데 경찰, 교도소에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장시간 피감치인을 계구 없이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경찰에 인계한 경우가 있다. 감치집행 시 수갑, 계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권한이 있어야 한다.

II. 기존 청사방호 대책의 한계점

1. 구조적 한계[89)]

가. 사건 대응형 TFT

그동안의 TFT(Task Force Team)는 법원 청사보안 또는 법정 보안과 관련된 중요 사건 · 사고 발생 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원 구성원들로 TFT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 · 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의 보안관리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청사 및 법정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TFT는 지속 가능한 상설조직이 아니고 소관 부서별(기획조정실, 재판사무국, 대법원보안관리대, 인사운영실 등)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세부 실행은 일선 법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중 ·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나. 책임부서의 필요

기존 TFT에서 검토된 중 · 장기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부족한 보안 시설을 보완하고 유지 ·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나 조직이 필요하다.

2.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가. 시설물 확충에 집중

기존 TFT에서 주로 논의되고 마련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을 위한 대책들은 X-ray 화물투시기, 문형검색대, CCTV설치, 스피드게이트, 스크린도어, 유리차단막 설치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설물 확충 중심으로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시설물들은 법원의 보안대책 강화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이라 할

8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79-80 부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수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각급 법원의 환경과 구성원 등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운용과 연동된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나. 제도 개선 방안 필요

그동안 TFT 논의 과정에 시설 중심의 대책과 병행하여 청사방호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의 제 ·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은 있었지만 장기적 검토 과제로 남겨 놓는 등 법원청사 관리업무에 관하여 체계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은 부족했다. 특히,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는 법원조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퇴거조치 정도의 소극적인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

제4절 제복

I. 의미

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 착용한 사람이 특정한 직업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착용자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은 그 착용자의 직업과 성격을 인지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직업과 역할에 따르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90] 그리고 제복은 단순히 기능적인 의복을 넘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91]

90) 백재은, “경찰 제복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1 (2010), 148.
91) 김민지, “권력으로 재생산된 몸과 패션디자인 표현연구”, 패션비지니스 제22권 2호 (2018), 66 부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1. 제복 디자인의 구성요소[92)]

가. 상징성

제복은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내재하고 계속적인 사용에 의해 시각 기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적 집단의 미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 상징성은 소속단체의 독창적 이념과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 착용자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 계급, 조합, 단체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복에 인위적인 성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소속하는 집단의 명예와 권위를 표시하고 착용자는 제복에 따라 제약을 받기도 한다. 또한, 제복의 상징성은 제복을 바라보는 상대로 하여금 착용자에 대한 합법성, 책임감, 신뢰도, 사회에 대한 공헌의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나. 기능성

제복에서 기능성은 직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구조, 형태, 소재 등의 측면이 고려되어 디자인이 결정되고 제작된다. 또한, 작업 능률의 향상과 유쾌한 기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착용자의 입장 및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상복과 달리 매일 같이 장시간 착용하는 옷이므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이어야 하며 착용자의 근무내용, 활동량, 계절적 환경요인, 위생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하며 관리도 용이해야 한다.

다. 심미성

심미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으로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 등의 복합적인 것이며 전통이나 유행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의복에서의 심미성은 의복이 주는 큰 역할인 동시에 착용자는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디자인에 있어서 구성요소로 요구된다. 특히, 제복에서 요구되는 심미성은 소속 집단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소속 집단 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

92) 백재은, “경찰 제복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1 (2010), 149 부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2. 착용 효과

법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복이 주는 상징성은 법 집행기관이라는 시각적 효과와 권위의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내 및 통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식별하게 함으로써 법원 질서유지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법원을 방문하는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법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장비의 휴대가 안정적이고 제복의 소재가 기능성과 활동성을 갖추어 편하다면 출입통제, 보안검색, 긴급상황 시 대처가 빠르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II. 대한민국 경찰 제복

1. 서설

제복은 조직의 권위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착용자의 직무 수행 방식과 대외적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원보안관리대와 같이 공적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제복은 단순한 복장에 그치지 않고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권력 행사 조직인 경찰 제복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변화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원보안관리대 제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가 된다.

2. 변천

경찰은 1984년 이후 약 10년 단위로 복제를 개선하고 있다.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5년에는 일반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은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93]

93) 아시아 경제, '세금 들여 왜 저리 촌스럽게, 한번 정하면 10년 새 경찰복 두고 와글와글' (2025. 7. 25.),

과거 통일된 색과 형태로 권위를 강조하고 제식과 의전 요소가 강했던 반면, 최근에는 기능성 있는 소재로 계절별 복장을 갖추어 순찰과 치안현장에서 활동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현장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찰 근무복 변천〕[94]

[그림 9] 경찰관 근무복 변천과정



3. 제복 개선

경찰은 경찰의 날 창립 80주년(2025. 10. 21.)을 맞아 경찰제복 개선에 착수하였다. 그간 10년마다 근무복 색깔이 바뀐 데 따른 국민의 혼란을 막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록색 제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국민들이 이를 폴리스 컬러(경찰의 색)로 인지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폴리스 네이비(Police navy)는 경찰이 현직 디자이너와 함께 제작한 일명 '경찰만의 색'으로 경찰의 상징성을 담아냈다. 이번 경찰복제 개선은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어 근무복인 남색바지에 외근용 점퍼를 남색으로 바꾸고, 경찰모는 깊이를 키우고 바닥에 두어도 꼿꼿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었다.[95]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2513541199861 (2026. 3. 4. 최종확인).

94) 네이트 뉴스, '창설 80주년 경찰청 제복 10년 만에 변경, 디자인 소재 개선' (2024. 4. 14.), https://news.nate.com/view/20240414n05192 (2026. 3. 4. 최종확인).

95) 조선일보, '촌스럽다 논란 지우고 개편, 경찰 10년만에 새근무복 공개한다' (2025. 10. 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0/21/ZN3GB4HFE5ERTPASCUC6CXLHRI (2026. 3.

III.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1.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제복 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원보안관리대원 A(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근무 제복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소재 · 디자인 · 사이즈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급 및 교체 주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현행 제복은 무전기 장착 시 안정성이 떨어져 근무 중 흔들림이나 이탈로 인해 현장 대응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하복 착용 시에는 무전기 고정력이 더욱 약화되어 신속한 교신 및 안전한 장비 운용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보안관리대 B(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근무복의 교체주기를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셔츠는 각 계절별로 2벌(추동) ~ 3벌(하복) 지급되고 교체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점퍼는 춘추(1벌), 동복(1벌)의 교체주기가 3년, 재킷은 춘추동(1벌), 하복(1벌)으로 교체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다. 평일에 매일 입는 경우 2년 정도가 되면 헤지고 헐어서 입기가 쉽지 않으므로 교체주기를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

법원보안관리대원 C(보안관리서기보: 경력 10년 미만)

- 현재처럼 요대에 장비를 착용한 후 재킷을 입으면 외부적으로 장비휴대가 주는 시각적인 위압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활용이 어렵다. 장비노출이 용이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활동성과 기능성 있는 소재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법원보안관리대 D(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단화의 경우에는 쿠션이 없고 땀이 차며 뛰는 데 불편하므로 법정근무가 아닌 청사보안 업무를 하는 때에는 검정색 계열의 운동화로 대체하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4. 최종확인).

법원보안관리대장 A(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법정에서는 제복을 착용하고 여름철에 한하여 간편복 지급이 필요하다. 일부 법원에서는 기능성 있는 간편복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일된 디자인이 없어서 타 법원으로 전출하는 경우 착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개선 요청 의견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제복 개선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하복 착용 시 무전기 고정력이 약화된다는 의견과 요대에 보안장비를 착용하고 그 위에 재킷을 입는 경우 외부적으로 장비휴대가 주는 시각적 위압감이 없고, 즉각적인 활용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장비노출이 용이한 디자인과 활동성, 기능성 있는 소재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다.

법정 보안이 아닌 청사보안 근무의 경우에 활동성과 기동성을 생각한다면 단화보다는 검정색 계열의 운동화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법원에서는 여름철 청사보안 근무자에 한하여 기능성 있는 간편복을 자체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통일된 디자인이 없어 타 법원으로 전출 시 착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시도 있다.

Ⅳ. 분석

법원보안관리대원 제복 및 장구류 등은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급 주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근무복의 교체주기를 줄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과 비교하면 경찰은 춘추복, 동복, 하복은 상 · 하의 각 1년에 1벌씩 지급하고 그 외 품목은 3년에 1벌씩 지급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경우 2년에 2벌 지급하고, 점퍼는 3년에 1벌, 지급하므로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도 제복의 교체주기가 3년을 넘어가는 품목은 없기 때문에 법원보안관리대 재킷의 경우 춘추동(1벌), 하복(1벌)의 교체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다는 의견은 개선안으로 공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경찰의 제복 개선 방향은 기능성 있는 소재로 현장에서 활동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복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제4장

외국 법원 및 국내 기관의 보안조직 현황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교 ·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법원의 보안조직 운영 방식과 국내 주요 기관의 보안조직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원 보안은 청사 · 법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재판의 안전과 질서, 이용자의 권리보장, 위기상황 대응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므로 조직의 소속 · 지휘체계, 법적 근거, 임무 범위, 인력 · 장비, 현장 대응 및 유형력 행사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2절에서는 주요국의 법원 보안조직을 중심으로 보안업무의 담당 주체(전담기관, 경찰, 민간위탁 여부), 조직의 설치 및 통제 구조, 법정 · 청사보안의 역할 분장, 보안장비 운용 및 유형력 행사 기준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원보안이 '재판 기능의 보호'라는 목표 아래 어떠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는지 우리 제도 개선에 직접 적용 가능한 요소(규범화, 전문화, 협업체계 등)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국내 기관 중 청사보안 및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법원보안관리대와의 비교 기준을 정립한다. 특히 기관별로 보안임무의 범위(출입통제 · 검색, 질서유지, 비상대비), 권한 부여 방식, 장비 · 인력 등 운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원 보안조직의 역할과 권한 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구체화한다.

이와 같은 비교 검토는 단순한 현황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제5장에서 제시할 개선방안(조직 · 인력 · 지휘체계의 정비, 유형력 행사 기준의 명문화, 보안장비 체계 개선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법원 보안'의 특수성과 공공기관 보안의 일반원칙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개선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제2절 주요국 법원 보안조직 현황

I. 미국

1. 현황

가. 연방법원의 보안담당기관

미국 연방법원의 보안은 연방마샬(U.S. Marshals Service, USMS)을 중심으로 연방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및 국토안보부 산하 (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연방마샬(USMS)은 연방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 2020년 기준 94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및 약 838개 사법시설에서 연방법원 판사, 배심원, 기타 연방 사법부 구성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와 재판절차의 안전한 진행, 법정 및 법원 청사 내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법원보안 책임을 지고 있다.[96]

보안계획과 설계에 관한 결정은 위 각 기관과 지역 법원보안위원회(Court Security Committe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원보안위원회의는 연방법원 판사, 연방마샬, 연방총무국, 검찰청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97] 그 지역의 법원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계획을 개발하며 법원시설과 보안체계의 설계를 검토하고 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 및 역할을 조정한다.[98]

나. 연방마샬(U.S. Marshals Service)

(1) 소속

미국 내 94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의 보안을 담당하는 연방마샬

96) U.S. Marshals Service, “Judicial Security Fact Sheet 2020”,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fact-sheet?utm (2026. 3. 4. 최종확인).

97) U.S. Marshals Service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MS-AOUSC/GSA Court Security Agreements (2006-2020)”, https://www.governmentattic.org/50docs/USMSmouCourtASec_2006-2020.pdf (2026. 3. 4. 최종확인).

98) Federal Bar Association, “Judicial Security Poses Continuing Challenge”, https://www.fedbar.org/wp-content/uploads/2009/10/judicialsecurity-pdf-1.pdf?utm (2026. 3. 4. 최종확인).

(USMS)은 직제상 법무부 산하 국(局, Bureau)에 해당하고,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마샬보(Deputy Marshal) 등 직원은 연방법[28 U.S.C. § 561(f)]에 의하여 연방마샬(USMS) 국장이 임명한다.[99]

2024년 기준 연방마샬(USMS)은 약 4,038명의 U.S. Marshal 및 Deputy U.S. Marshal과 약 1,528명의 행정 · 구금 담당 인력 등 총 5,500~5,700명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94개 연방 사법구(Federal judicial district)와 200여 개의 하부 사무소(Sub-offices), 4개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550개 이상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100]

(2) 임무

(가) 연방법원 경비 및 법관 등의 경호

연방법원 판사와 법원직원, 증인, 배심원을 경호하는 것이 연방마샬(USMS)의 주요 임무이다. 법정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법원시설 밖에서 법관 등을 경호한다.

(나) 체포 · 구금 및 호송

연방마샬(USMS)은 연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연방 범죄로 수감 중 도주한 수형자, 집행유예, 보호관찰, 가석방 및 보석 조건을 위반한 자, 도주자 등을 추적 · 수사(Fugitive investigation)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담당한다.[101] 또한, 연방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연방법원에 회부된 피의자 및 연방법원에 의해 구금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연방교정국(BOP) 시설로 인계될 때까지 구금 · 관리하고, 이들을 각 구치시설과 법원 사이에서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02]

---

99)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28 U.S. Code § 561 –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561?utm (2026. 3. 4. 최종확인).

100) U.S. Marshals Service, "2023 Annual Report", https://www.usmarshals.gov/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Pub-2-2023-Annual-Report.pdf?utm (2026. 3. 4. 최종확인);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tatement of Ronald L. Davis, Director, U.S. Marshals Service", https://www.congress.gov/118/meeting/house/116837/witnesses/HHRG-118-JU08-Wstate-DavisR-20240214.pdf?utm (2026. 3. 4. 최종확인);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justice.gov/jmd/page/file/1489556/dl?inline=&utm (2026. 3. 4. 최종확인).

101) U.S. Marshals Serv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Policy Directives: Management", https://www.usmarshals.gov/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united-states-marshals-service-policy-directives-management.pdf?utm (2026. 3. 4. 최종확인).

(다) 증인보호

연방 증인보호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 WITSEC)을 운영하면서 조직범죄, 마약범죄, 테러리즘 등 중대 범죄 사건에서 연방정부에 협조하거나 증언한 정부 증인과 동반 가족이 그 협조 · 증언으로 인해 생명 · 신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경우 이들의 안전 · 건강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103]

(라) 압수 및 몰수

연방마샬(USMS)은 연방범죄에 제공된 현금이나 자동차, 부동산, 보석 등의 재산을 압수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한다.

다. 보안장비

(1) 무력장비

연방마샬(USMS) 감찰(Audit) 문서[104]에 따르면 마샬보(Deputy U.S. Marshals) 및 수사인력은 '주무기(권총)' 휴대가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 추가 권총 · 소총 · 산탄총 · 기관단총류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비살상(less-than-lethal) 장비로는 전기충격기(Taser) 또는 가스분사기(Pepper spray)를 선택적으로 휴대 · 사용할 수 있다.

(2) 검색장비

연방마샬(USMS)은 연방법원 출입자에 대하여 X-ray 장비로 가방 등 소지품을 검색하고, 방문자는 금속 탐지 장비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무기(총기류, 칼) 등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가 금지되고, 해당 물품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출입이 거부된다.[105]

---

102) U.S. Department of Justice,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242 of the 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8", https://www.justice.gov/archives/olp/file/1293286/dl?inline=&utm (2026. 3. 4. 최종확인).

103) U.S. Marshals Service, "Witness Security",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witness-security?utm (2026. 3. 4. 최종확인); U.S. Department of Justice, "Organization, Mission and Functions Manual: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justice.gov/doj/organization-mission-and-functions-manual-united-states-marshals-service?utm (2026. 3. 4. 최종확인).

104)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udit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s Controls over Weapons, Munitions, and Explosives", https://www.oversigh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8-09/a1833.pdf (2026. 3. 4. 최종확인).

라. 유형력 행사

(1) 행사 방법

(가) 비치명적(Less-lethal) 유형력

신체적인 수단으로 밀기, 잡기, 넘어뜨리기 등을 하거나 수갑 등 구속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봉, 화학제(Pepper spray, tear gas) 등을 사용할 수 있다.[106]

(나) 치명적 무력(Deadly force)

총기 사용이 대표적이며 생명 또는 중대한 상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107]

(2) 행사 단계[108]

(가) 긴장완화(De-escalation) 우선

비교적 안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기 전 구두 경고나 설명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 단계적/비례적(Force continuum) 행사

객관적 합리성과 필요한 수준의 유형력 사용 원칙에 따라 구두명령 → 신체적 통제 → 비치명적(Less-lethal) 장비 → 치명적 무력(Deadly force)으로 단계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리력의 수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105) U.S. Marshals Service, "What to Expect When Visiting a Courthouse",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what-expect-when-visiting-courthouse (2026. 3. 4. 최종확인).

106)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Law Enforcement: Federal Agencies Should Improve Reporting and Review of Less-Lethal Force", https://www.gao.gov/assets/gao-22-104470 (2026. 3. 4. 최종확인).

107)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s Updated Use-of-Force Policy", 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22/05/23/departments_updated_use-of-force_policy (2026. 3. 4. 최종확인).

108)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s Updated Use-of-Force Policy", 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22/05/23/departments_updated_use-of-force_policy (2026. 3. 4. 최종확인).

(다) 치명적 무력 사용의 제한

미국 법무부는 도주만을 막기 위한 치명적인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만 차량에 총을 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하여 여러 제약을 두고 있다.

(3) 유형력 행사 근거

연방법(28 U.S.C. §566, 권한과 의무)에 연방마샬(USMS)의 중범죄자에 대한 총기휴대와 무영장 체포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행정규정[28 C.F.R. §0.111(d)-(f)]에 연방마샬(USMS) 국장의 법정 보안요구의 시행, 법관 · 법원공무원 보호, 연방청사 보호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처정책["Department of Justice Policy on Use of Force" (2022. 5. 20.)]으로 연방마샬(USMS)을 포함한 법무부(DOJ) 소속 모든 법집행기관에 적용되는 통일된 물리력 사용 기준을 정하고, 판례[109]에 맞추어 객관적 합리성 · 필요성 · 비례성 · 긴장완화(De-escalation)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법원 내부 기준(U.S. Courts Design Guide, Court Security Resource Guide)에 법원보안 설계 · 운영 기준으로서 법원 측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 · 인력 · 장비 기준을 명시하고, 연방마샬(USMS)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보안정책 · 물리력 행사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110]

(4) 유형력 행사 기준

(가) 객관적 합리성(Objective reasonableness)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관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 대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인지 여부, 저항과 도주 시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111]

---

109)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
→ 체포 · 정지 과정에서의 과도한 무력 사용 여부는 제4수정헌법의 "객관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985)"
→ 비무장 도주 피의자에 대한 치명적 무력은 "도주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110)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U.S. Courts Design Guide",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u.s._courts_design_guide_2021.pdf?utm (2026. 3. 4. 최종확인).

111) Justia,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90/386/?utm (2026. 3. 4. 최종확인).

(나) 필요성(Necessity)과 최소한의 사용

다른 안전하고 실효적인 대안이 없을 때에만 무력사용을 허용하며 경고나 제지 등으로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물리적 제압이나 장비사용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112]

(다) 비례성(Proportionality)

대상자의 행위가 단순히 소란 또는 언어적 모욕 수준이면 비치명적, 최소한의 힘으로 제한하고,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총기, 흉기 등의 위협)인 경우에는 치명적인 무력까지 비례적으로 허용한다.[113]

(5) 유형력 행사 요건

(가) 공통 요건(장소 불문, 법원 내외 동일)

체포, 호송, 법정 경비, 법원명령의 집행, 연방법원 및 법관보호 등의 공무수행 중이어야 하고 대상자가 불법 침입, 폭력, 법원명령 위반, 구금거부, 탈주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판사, 배심원, 방청객 등에게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체적인 위협이 존재하여야 한다. 미국 법무부 정책은 가능하면 구두 경고, 긴장완화 등 대체수단을 먼저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마샬이라면 동일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힘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114]

(나) 비치명적 유형력 행사 요건

법정 및 청사 내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이다. 난동자의 퇴거 또는 저항하는 피고인의 신체를 제압하거나 구속 상태의 유지, 체포 · 구속을 거부하거나 호송 도중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에 신체를 통제하거나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

---

112)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s Updated Use-of-Force Policy”, 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22/05/23/departments_updated_use-of-force_policy (2026. 3. 4. 최종확인).

11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985)”.

114) U.S. Department of Justice, “1-16.000 - Department of Justice Policy on Use of Force”, https://www.justice.gov/jm/1-16.000-department-justice-policy-use-force (2026. 3. 4. 최종확인).

(다) 치명적 유형력 행사 요건

대상자가 총기, 흉기를 가지고 즉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거나 즉시 공격을 가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량 등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려는 행위, 생명 · 중대한 신체손상의 위험, 다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없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사이에 생명 위협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총기 등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115]

마. 미국 법무부 부서 공통 유형력 사용 정책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부서 공통 유형력(무력) 사용 정책
(Department-Wide Use of Force Policy) 2022. 5. 20.

I. 정책 목적 및 기본 원칙 (Purpose and Guiding Principles)

법무부의 정책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법무부 소속 모든 법집행관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물리력(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물리력 사용은 언제나 공공의 안전 확보, 법집행관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보호, 법의 집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II. 적용 대상 (Scope of Application)

본 정책은 다음 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무부 소속 연방 법집행기관에 적용된다.

- 연방수사국(FBI)
- 마약단속국(DEA)
- 주류 · 담배 · 화기 · 폭발물국(ATF)
- 미국 연방마샬서비스(USMS)
- 연방교정국(BOP)
- 기타 법무부 소속 법집행기관

III. 물리력 사용의 일반 원칙 (General Use-of-Force Standard)

1. 객관적 합리성(Objective Reasonableness)

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

115)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s Updated Use-of-Force Policy", 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22/05/23/departments_updated_use-of-force_policy (2026. 3. 4. 최종확인).

는 사후적 판단이나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당시 법집행관이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필요성**(Necessity)

물리력은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비례성**(Proportionality)

사용되는 물리력의 수준은 대상자의 행위, 위협의 정도, 상황의 긴급성에 비례해야 한다.

4. **최소 필요력 원칙**(Least Amount of Force Necessary)

법집행관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IV. 긴장완화(De-escalation)의 의무

법집행관은 합리적이고 안전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또는 사용과 병행하여 긴장완화(de-escalation)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긴장완화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 구두 명령, 설명, 설득
- 거리 확보 및 시간 지연
- 엄폐 · 차단 등 전술적 재배치
- 백업 인력 도착을 기다리는 조치
- 비치명적 대안 수단의 고려

V. 치명적 무력(Deadly Force)에 관한 특별 기준

1. 치명적 무력의 정의

치명적 무력이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모든 물리력을 말하며, 총기 사용이 대표적이다.

2. 사용 요건

법집행관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

  법집행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손상의 위험이 존재할 것.

- **불가피성**(No Reasonable Alternative)

  해당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것.

- **비례성 및 목적 적합성**

  치명적 무력 사용은 생명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3. 제한 사항

단순한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한 치명적 무력 사용은 금지된다.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고사격은 허용되지 않는다(특정 교정시설 상황 등 예외 제외).

가능한 경우, 치명적 무력 사용 이전에 구두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VI. 비치명적 물리력(Less-Lethal Force)

법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비치명적 물리력 또는 비치명적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객관적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 최소 필요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치명적 물리력 사용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사용은 금지된다.

2. 시사점

우리나라의 법원보안관리대가 사법부 소속임에 반하여 연방마샬(USMS)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법원 명령의 집행과 사법부 보안 업무를 주된 역할과 임무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연방마샬(USMS)은 연방 사법부 보안에서 최종 권한(Final authority)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보안요건 설정, 위협평가, 시설 및 인적보호를 일관된 지휘와 기준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요건은 연방마샬(USMS) 자체 지침도 존재하지만 법무부(DOJ)의 전 부처 공통 정책은 연방마샬(USMS)을 포함한 연방 법집행 인력의 물리력 기준 설계에 직접적인 기준점이 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 정책은 판례를 기반으로 범죄의 중대성, 대상자의 즉각적 위협 여부, 적극적 저항 또는 도주 시도 여부 등의 요소를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요건으로 하여 객관적 합리성, 필요성과 최소한의 사용, 비례성 등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에 반영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영국

1. 현황

영국의 사법시스템과 심급체계는 매우 복잡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별개의 사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사법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을 위한 재판보조시스템 역시 그 명칭과 업무에 있어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116] 이하 잉글랜드 · 웨일스 법원 위주로 보안조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잉글랜드 · 웨일스

잉글랜드 · 웨일스 법원의 청사보안은 법무부(MOJ) 산하 법원행정기관인 HMCTS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가 시설관리, 보안용역 계약과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원 청사 출입 및 검색 등 일상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117]

(1) 법정경위(Court security officer)

법원 청사보안을 담당하는 법정경위(Court Security Officers)는 'Courts Act 2003'에 따라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118]가 임명하거나 HMCTS가 민간 보안업체와 외주 계약하는 방식으로 채용되며 출입자의 소지품 검색,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목적 등으로 출입의 제지, 퇴거, 판사 요청 시 법정에서 대상자의 퇴거 조치 등의 권한을 가진다.[119]

(2) 임무 및 권한

법정경위는 재판 및 법원업무가 방해나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116)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0) -각국의 재판보조 시스템- (2011), 276.
117) GOV.UK, "HM Courts & Tribunals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courts-and-tribunals-service?utm (2026. 3. 4. 최종확인).
118) GOV.UK,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https://www.gov.uk/government/ministers/secretary-of-state-for-justice (2026. 3. 31. 최종확인). 여기서 Lord Chancellor는 영국의 헌정체계상 사용하는 직명으로, 현재는 통상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직을 겸하는 장관급 공직자를 의미한다.
119) Legislation.gov.uk, "Courts Act 2003, Part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part/4 (2026. 3. 4. 최종확인).

청사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원 건물 내에 있거나 출입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수색할 수 있다. 수색을 거부하거나 물품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건물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특히, 판사의 요청이 있으면 법정 내에서 퇴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질서유지 및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압수할 수 있다.[120]

(3) 보안장비

법원출입 시 워크스루형 바디 스캐너를 통과하고 추가적으로 휴대용 검색기(Hand-held scanner)를 사용하여 반입금지 물품을 검색한다. 총기 · 흉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은 압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121]

(4) 유형력 행사 방법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통제(제압)를 할 수 있으며 2025년 잉글랜드 · 웨일스 법원 보안요원 교육 내용에 사람을 제압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122]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불응 시 압수가 가능하고 증거관련성이 있으면 경찰에 인계하기까지 최대 24시간 보관할 수 있다.[123]

(5) 유형력 행사 기준

법정경위의 유형력 행사는 퇴거, 제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힘(Reasonable force)으로[124] 행사해야 하며, 재판업무의 지연 및 방해 없는 진행과 질

120) Legislation.gov.uk, “Courts Act 2003, Part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part/4 (2026. 3. 4. 최종확인).
121) GOV.UK, “Going through security at a court or tribunal building”, https://www.gov.uk/entering-court-or-tribunal-building?utm (2026. 3. 4. 최종확인).
122) Legislation.gov.uk, “The Court Security Officers (Designation) Regulations 2005”,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5/588/made (2026. 3. 4. 최종확인).
123) Legislation.gov.uk, “Courts Act 2003, Part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part/4 (2026. 3. 4. 최종확인).
124)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Crime and Courts Bill [HL] Bill No 115 of 2012-13”,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13-4/RP13-4.pdf (2026. 3. 4. 최종확인). 조문 자체는 “reasonable force”를 정의하진 않지만, 영국 의회 연구보고서는 자기방어 · 범죄예방 맥락에서의 ‘합리적 힘’ 판단을 설명하며 Archbold, Smith & Hogan 같은 대표 실무/교과서 인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서유지, 청사 내 사람의 안전 확보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25]

나. 사법절차와 법원 운영에 관한 법률(Courts Act 2003)

Part 4 법원보안

51조(법정경위)

(1) 법정경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조 제1항에 따라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126]가 임명하였거나,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사람

나.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가 법정경위로 지정한 사람

(2)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는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가. 법정경위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나. 어떤 사람이 법정경위로 지정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

(3) 이 편(Part)의 목적상, 법정경위가 그가 법정경위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제복이나 배지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에는, 그 보안요원은 직무 수행 중인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2조(수색 권한)

(1) 직무 수행 중인 법정경위는 다음을 수색할 수 있다.

가. 법원청사(court building) 안에 있거나 법원청사에 들어가려는 사람

나. 위 사람의 소지 물품

(2) 제1항은, 보안요원이 사람에게 외투, 재킷, 모자, 장갑 또는 신발 외의 의복을 벗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이 편에서 "법원청사"란 다음 요건을 갖춘 건물을 말한다.

가. 제1조에 언급된 법원들의 업무가 수행되는 건물

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53조(출입 배제 · 퇴거 또는 제지 권한)

(1) 직무 수행 중인 법정경위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을 법원청사(또는 법원청

125) Legislation.gov.uk, "Courts Act 2003, Section 5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section/53 (2026. 3. 4. 최종확인).

126) GOV.UK,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https://www.gov.uk/government/ministers/secretary-of-state-for-justice (2026. 3. 31. 최종확인). Lord Chancellor는 영국의 헌정체계상 사용하는 직명으로, 현재는 통상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직을 겸하는 장관급 공직자를 의미한다.

사의 일부)에서 출입 배제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수색을 허용할 것

나.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요구받았을 때 소지 물품을 제출할 것

(2) 직무 수행 중인 법정경위는 제3항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법원청사 안에 있는 사람을 제지할 것

나. 사람을 법원청사(또는 법원청사의 일부)에서 출입 배제하거나 퇴거시킬 것

(3)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의 업무가 방해 또는 지연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

나. 질서를 유지할 것

다. 법원청사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것

(4) 직무 수행 중인 법정경위는 판사 또는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의 요청이 있으면 법정(courtroom)에서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포함된다.

54조(물품의 제출 및 압수)

(1) 직무 수행 중인 법정경위는 법원청사 안에 있거나 법원청사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이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그 사람이 물품 제출을 거부하면 그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3) 사유는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법원청사(또는 그 일부)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법원청사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범죄의 증거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증거일 수 있는 경우

2. 시사점

잉글랜드 · 웨일스 법정경위는 법원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민간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잉글랜드 법률은 법정경위의 유형력 행사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요건으로 검색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출입의 배제 또는 퇴거 등 합리적 수준의 유형력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목적, 요건, 수단을 법률로 명시화함으로써 현장 근무자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이 되어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 기준을 만들 때 엄격하고 명확하게 만들수록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독일

1. 현황

가. 법정보안관리대

(1) 조직의 근거 및 특징

독일 법원의 보안업무는 법정보안관리대원인 법정경위(Justizwachtmeister)가 담당하고 있다. 법정경위는 연방 차원이 아닌 각 주(州)정부 법무부 소속의 행정직 공무원이며, 조직 운영 방식과 구체적 권한은 개별 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법정경위 조직이 갖는 핵심적 특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소속과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규율된다는 점, 둘째, 법정경위의 역할과 권한이 법률과 하위규범을 통하여 다층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셋째, 법정경위는 단순한 보조인력이 아니라 법원 내 질서유지 · 보안, 재판 진행 지원, 인치 및 구속집행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점이다.

(2) 지휘체계

법정경위의 조직적 배치는 주 사법부 산하의 각급 법원(Gerichte)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법정경위의 법적 신분과 임무 범위는 주법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0a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상

위 관할권자는 주 사법부 장관이며 직접적 기관은 각급 법원의 기관장(Behördenleitung)이다. 실무 지휘권자는 법원별 설치된 보안대(Wachtmeisterei)의 대장이 되며 현장에서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자로서 재판 중에는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을 행사하는 재판장(판사)이 있다.

이 체계에 따라 법정경위는 상황에 따라 ① 사법행정 조직의 명령, ② 재판장의 법정경찰 명령 ③ 법정보안관리대[127]의 자체 권한 등 서로 다른 지휘명령을 적용받게 된다.[128]

(3) 운영 방식

법정경위는 주 소속의 공무원(Beamte)으로 채용되며 법원 단위로 보안대가 설치되고 내부적 지휘권이 보안관리대장(Leiter der Wachtmeisterei)에게 부여된다. 재판업무와 보안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분장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개별 법원은 자체적인 보안규정(Sicherheitskonzept)을 통해 운영된다.[129]

(4) 역할 및 권한

(가) 법정 및 법원 청사의 보안 기능

법정경위의 1차적 주요 임무는 법원청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은 법정경위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률차원에서 규율한 대표적인 사례[130]라 할 수 있는데, 제30a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정경위는 법원 건물 및 부속 외곽 공간에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안권한은 기관장의 질서유지권(Hausrecht)[131]에 근거하여 행사되며(노르트

127) 법정경찰 업무부서를 의미하는 "Justizwachtmeisterdienst"를 법정보안관리대, 그 대원인 "Justizwachtmeister"를 법정경위로 번역한다.

128) Tilman Müller · Thomas Stollenwerk, "Befugnisse der Justizwachtmeister", DRiZ (2024), S. 192, '독일 법정경위 권한의 범위와 한계'(이하 Müller/Stollenwerk, DRiZ, 2024)는 이러한 구조를 "다원적 지휘 시스템"(polyzentrische Befehlsstruktur)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정경위의 역할이 단일 기능에 머물지 않고 광범위한 공권력 행사로 확장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129) 2015년 3월 9일 법무부 일반 명령(JMBl. NRW S. 107)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규칙 (2370 – Z. 18) – 2018년 1월 19일 개정, 이하 업무규칙(Dienstordnung für den Justizwachtmeisterdienst AV d. JM vom 9. März 2015 – JMBl. NRW S. 107 – in der Fassung vom 19. Januar 2018 – JMBl. NRW S. 23 –).

13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0a조, 제31a조, 제31c조; Müller/Stollenwerk, DRiZ 2024, S. 192-195.

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a조), 구체적으로는 출입통제(신분 확인, 가방 검색, 금속 탐지 등), 위험물 · 금지품의 압수, 보안장비 운영(스캐너 · 감시장치 등), 혼잡 · 소란 등 질서침해 예방, 상시 순찰 및 상황 대응의 임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권한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132]에서도 기관장의 질서유지권 및 법정경위의 집행권한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독일 법원 보안체계의 기본 골자라고 할 수 있다.[133]

(나) 재판 지원 기능

법정경위는 단순히 보안 인력에 머무르지 않고, 재판업무 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판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0a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 및 검사의 명령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지원 업무로서는 법정 내 질서 유지(법정경찰권 보조), 방청객 관리 및 좌석 배치, 피고인 · 증인 보호, 구속영장 집행 보조, 법정 내 증거 압수, 법정 내 물리력 행사 등이 있다.

독일 법원조직법(GVG) 제176조는 재판장에게 광범위한 법정질서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정경위는 이러한 법정경찰권에 의한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구인 및 구속 집행 기능

법정경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인치(Vorführung)와 보호조치(Gewahrsam), 감시(Bewachung), 체포(Festnahme)의 집행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0a조 제1항 제2호는 "법정경위는 구속된 자 또는 소환된 자의 법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인치 및 감시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경위는 구속 피의자 · 피고인의 인치, 절차상 불출석자 강제 구인, 법정 내 또는 법원 내 임시 구금, 도주 방지를 위한 교정적 조치(수갑, 발목보호구 등), 증인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인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34]

---

131)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10) -각국의 재판보조시스템- (2011), 390(Hausrecht: 질서유지권으로 해석).

132) BVerwG, Beschluss vom 17.5 2011-7 B 17/11.

133) Müller/Stollenwerk, DRiZ 2024, S. 192-195.

법정경위의 인치업무는 인치 목적의 구금 등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공권력 행사가 수반되는 집행권한이 인정된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c조 제3항]. 이는 법정경위가 사법경찰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일부 수행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c조 제3항[135]이 이러한 사법경찰적 기능의 근거가 된다.[136]

나. 권한체계의 법적 근거

[표 22] 독일 법원보안 관련 권한 체계표

권한주체 및 근거	권한의 내용(주요 기능)	법적 근거	각 권한의 위계 관계
기관장(법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 법원 청사 전체 출입 통제 – 금지품의 압수 · 보관 – 청사 내 질서 유지 –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 (검색, 금속탐지기, 보안스캐너 등) – 위험 시 퇴거 · 출입금지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 (JustG NRW) 제31a조	– 법원 전체 공간(복도 · 출입구 · 대기실 등)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 – 재판장의 법정경찰권보다 법정 내부에서는 후순위(법정은 재판장의 우선권) – 법정경위는 기관장의 질서유지권 조치를 우선 집행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행사	– 법정 내부 질서 유지 – 소란자 제지 · 퇴정명령 – 법정 내 체포 · 구속 명령 가능 – 재판 진행 방해 요소 제거 – 휴대폰 · 녹음기 등 압수 가능	독일 법원조직법 (GVG) 제176조 이하	– 법정 내부에서는 최우선 권한자 – 기관장의 질서유지권 보다 법정에서 우위 –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집행

134) 인치지침 Richtlinien für die Tätigkeit der Bedienstete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im Rahmen von Vorführungen (Vorführrichtlinie) RV d. JM vom 26. Februar 2009 (1400 E – I. 2/07) – in der Fassung vom 9. Dezember 2011 –.

135) "법정경위는 인치 목적으로 사람을 구금(Gewahrsam)할 수 있다."

136) Müller/Stollenwerk는 이러한 권한을 "경위의 독자적 강제력 행사권(Eingriffsbefugnisse)"으로 평가하며, 이는 보안직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준경찰권적 지위로 확장되는 특징이라고 분석한다(Müller/Stollenwerk, DRiZ 2024, S. 193-194).

권한주체 및 근거	권한의 내용(주요 기능)	법적 근거	각 권한의 위계 관계
법정경위의 자체적 권한 행사	1) 질서유지 · 보안 기능 – 위험 대응(자체 판단 가능) – 금지품 검색 · 압수 – 출입 통제 수행 2) 재판지원 기능 – 인치(Vorführung) · 구금 – 법정 내 질서유지 보조 3) 집행권 – 판사 명령 · 질서유지 명령 집행 – 위험 발생 시 자체적 조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 (JustG NRW) 제30a조, 제31c조	– 기관장(법원장)과 재판장의 명령의 집행 주체 – 독자적 판단권 있음(청사보안 · 급박한 위험 대응) – 법정에서는 재판장 명령이 최우선 – 청사 운영에서는 기관장의 명령이 우선

각 권한은 중첩되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경위는 최종적으로 재판장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c조 제4항[137]].

다. 유형력 행사의 근거

법정경위(Justizwachtmeister)는 법령에 의해 명확한 강제력 행사권, 즉 물리력 ·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준(準)사법경찰적 기관이다. 이들의 권한은 법정 및 청사 내 안전 확보, 재판질서 유지, 구금 및 인치, 위험 방지, 공공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 기능으로서 인정된다. 유형력 행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a조, 제31c조, 제31d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집행방식은 각 주에서 정한 법원보안관리대 직무규칙[138] 및 인치지침[139]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137) "법정보안관리대는 제31a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직원의 명령과, 제31b조에 따른 법정경찰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38) Dienstordnung für den Justizwachtmeisterdienst AV d. JM vom 9. März 2015 (2370 – Z. 18) – JMBl. NRW S. 107 – in der Fassung vom 19. Januar 2018 – JMBl. NRW S. 23 –.

139) Richtlinien für die Tätigkeit der Bedienstete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im Rahmen von Vorführungen (Vorführrichtlinie) RV d. JM vom 26. Februar 2009 (1400 E – I. 2/07) – in der Fassung vom 9. Dezember 2011 – [2009년 2월 26일자 법무부 훈령(1400 E – I. 2/07) 법원보안관리대의 법정 인치 업무에 관한 지침 (인치지침) – 2011년 12월 9일 개정, 이하 인치지침].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가) 법정보안관리대 임무

제3장 법원과 검찰의 직원

제4절 법정보안관리대

제30a조(법정보안관리대의 임무)

(1) 법정경위로 구성된 법정보안관리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법원 건물 및 그에 부속된 외부 구역에서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2. 법원 또는 검찰의 심리나 기일에의 인치(Vorführung) 및 그 과정에서 구인된 자의 감시
3.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의 집행

(3) 법정보안관리대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의 법정경위가 수행한다.

(나) 안전과 질서(Sicherheit und Ordnung)

제4장 안전과 질서

제31a조(기관장의 조치)

(1)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각 기관의 장(長)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직원은 정상적인 직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에는 특히 법원 건물 및 그 부속 외부 구역에서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가택권)가 포함된다. 제2문은 제1문에 따른 기관의 전자적 시설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여 적용된다.

(2) 기관의 장과 그로부터 위임받은 직원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원 건물(인치대기구역을 포함) 및 그 부속 외부 구역을 광학적 · 전자적 장비를 통해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018년 5월 17일 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개인정보보호법(DSG NRW)」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2. 일반적 점검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적 점검의 범위 내에서 개인 및 휴대 물품을 기술적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검사 또는 수색할 수 있다.
4. 무기, 위험물 및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타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5. 법원 건물 및 그 부속 외부 구역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을 동행(수행)할 수 있다.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법원 건물 및 그 부속 외부 구역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7.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을 법원 건물 및 그 부속 외부 구역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8.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을 전자적 시설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4) 제1항 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집행은 법정보안관리대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b조(법정경찰의 조치)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제176조부터 제18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명령은, 연방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제31g조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된다. 제31a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c조(법정보안관리대의 조치)

(1) 법정보안관리대는 제30a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30a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31a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30a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정보안관리대는 인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을 보호구금(Gewahrsam)에 둘 권한을 가진다.

(4) 법정보안관리대는 제31a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직원의 명령과, 제31b조에 따른 법정경찰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31d조(자유박탈 시의 특별조치)

제31a조부터 제31c조까지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유의 박탈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자가 타인이나 물건에 대한 폭력행위를 할 위험이 있거나,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감시만으로는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를 결박할 수 있다.
2. 해당자가 도주하였거나 허가 없이 법원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하여 법원건물 또는 자유박탈에 관한 관할 시설로 인치할 수 있다.
3. 구인대기실(Vorführhafträume) 내에서는 도주 · 폭력행위 ·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광학적 · 전자적 장비를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 1월 13일 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형집행법(Strafvollzugsgesetz NRW) 제69조 제4항과 2018년 10월 12일 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법형집행 정보보호법(Justizvollzugsdatenschutzgesetz NRW) 제24조 제5항 및 제7항 제2문을 각각 해당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제31e조(경찰법의 준용)

제31a조부터 제31d조까지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공포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Polizeigesetz NRW)(GV. NRW. S. 441)의 각 해당 조항을 각각 당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준용한다.

1. 제12조(신원확인)에 있어서 제1항 제4호를 제외한 규정
2. 제13조(허가증의 확인)
3. 제35조(보호유치) 중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규정, 그리고 제36조, 제37조(유치의 집행) 중 제4항을 제외한 규정, 제38조(임시구금) 중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규정
4. 제39조(개인에 대한 수색)
5. 제40조(물건에 대한 수색)
6. 제43조부터 제46조(물건의 압수, 보관, 처분 및 폐기)에 관한 규정. 이 경우 압수되어 보관 중인 물건은 즉시 일반 행정청, 수사기관 또는 교정시설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31f조(불복신청의 효력)

본 장(章)에 따라 법정보안관리대가 취한 긴급조치(unaufschiebbare Maßnahmen)에 대한 불복신청(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1g조(명령의 집행)

(1) 본 장에 따른 명령의 집행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2003년 2월 19일 공포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행정강제집행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NRW, VwVG NRW)(GV. NRW. S. 156, ber. 2005 S. 818)의 각 해당 개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강제수단으로는 대집행(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행정강제집행법[VwVG NRW] 제59조)과 직접강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행정강제집행법[VwVG NRW] 제62조)가 사용된다.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법정보안관리대 업무규칙

법정보안관리대 업무규칙(Dienstordnung für den Justizwachtmeisterdienst)

2015년 3월 9일자 주 법무부 행정명령(2370 – Z. 18) – JMBl. NRW S. 107

2018년 1월 19일 개정 – JMBl. NRW S. 23 –

1.1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 행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사법기관에는 법정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법정경위)이 배치된다.

1.2

법정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속의 집행공무원(Vollzugsdienstkräfte)이며 현행 법령 및 행정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 행사 중 직접강제(Unmittelbarer Zwang)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2.1

법정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법청사 내의 평온, 질서 및 안전의 유지 –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며, 이는 청사의 보안계획(Sicherheitskonzept)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b) 기일 및 재판의 수행 보조 – 법정 외에서 열리는 기일도 포함하며, 법정경찰의 명령에 따라 직접 법정경찰조치를 집행할 의무를 진다. 재판장 또는 위원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필요시 자체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피구금자의 법정 또는 기일 출석을 위한 인치 및 기타 인물의 강제 인치(Vorführung) 수행.

d) 법원 건물 내에서 인치되었거나 구금 중인 자, 또는 특별한 명령에 따라 감시되어야 하는 자의 감시 · 감독.

e) 인치, 임시체포, 강제출석, 구금, 수색 또는 압수와 관련된 명령의 집행 및 이에 대한 지원. 다만, 이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경찰, 일반집행공무원, 집행관 등)이 수행하여야 하며, 법정보안관리대 공무원은 그러한 담당 인력이 법적 또는 사실적 사유로 동원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동한다.

2.2

법정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은 위 명시된 임무 외에도 명령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권력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징수업무(Beitreibungsdienst), 소년구금 집행 시 일반집행공무원의 업무, 다른 사법기관에서의 공무 수행 등이 포함된다.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인치지침

인치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정보안관리대 직원의 지침(인치지침)

Richtlinien für die Tätigkeit der
Bedienstete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im Rahmen von Vorführungen
(Vorführrichtlinie)

2009년 2월 26일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의 훈령(RV) (1400 E - I. 2/07)

- 2011년 12월 9일 개정 -

서문

인치(Vorführung)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 것은 각 기관장(Behördenleitung)의 권한에 속한다.

I. 일반 규정

1.

인치대상자의 재판기일 및 심리에의 구인, 이들의 법원 내에서의 계호(Bewachung) 및 관리는 법정보안관리대의 소관이다. 구금된 자를 교정시설(JVA) 직원으로부터 인계받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인치 업무 수행 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직무 수행 시에도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무전기(Handfunksprechgerät)뿐만 아니라, 수갑(Handfesseln) 및 보호 장갑(Schutzhandschuhe)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5.

출입구 보안검색(입구 검색 등)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에게서 위험한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압수 · 보관하여야 한다.

체포된 인원은 체포된 후 지체 없이 인치실(Vorführzelle)로 인치하여야 한다.

6.

자살 예방(Suizidprophylaxe)의 일환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치 기간 동안 신발 끈, 벨트, 넥타이, 끈, 라이터 및 기타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 내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II. 인치(Vorführung)

1.

인치자를 교정시설 직원으로부터 인계받기 전에 당직 교정직원에게 명시적으로 질문하여,

해당 인원을 계호함에 있어 특별한 안전조치 또는 보호조치(예: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살 위험에 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I.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인계 시 인치자는 가능한 한 두 명의 법정경위가 팀을 이루어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 확보와 신체 검색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여야 한다. 인치자의 신체나 소지품에서 위험한 물건이 발견될 경우 이를 압수 · 보관하여야 한다.

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행정집행법(VwVG NW) 제73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정에 인치하는 과정에서 인치자의 이동의 자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수갑 및 필요하다면 발목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인치자를 인치실에서 별도의 복도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재판정으로 인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치자는 기본적으로 이동 경로 전체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로 이동시켜야 한다.

라. 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1) 수갑(Handfesseln) 및 족쇄(Fußfesseln)를 사용한 포박

법정경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로, 도주 방지 · 폭력행위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사용 기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d조 제1호 및 인치지침 I. 2.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행정집행법(VwVG NW) 제73조[140]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도주우려, 공격적 행동, 자해위험, 법정 및 청사 내 안전 확보 필요, 인치로(일반 통행로를 지나는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인치지침 I.).

14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행정집행법(VwVG NW) 제73조(사람에 대한 포박)**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구금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로 인해 그러한 행위가 예상된다고 인정될 때 포박할 수 있다.
1. 집행 담당 공무원 또는 제3자를 공격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가치가 적지 않은 물건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탈출장치 시도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자살하거나 스스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량 방어 장구 등

인치 중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착용이 허용되며 특히, 보호장갑은 인치지침 I. 2.에서 보안의 필요에 의하여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3) 휴대용 무전기(Handfunkgerät)

팀 단위 활동이 원칙인 독일 법정경위에게 필수 장비로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휴대하게 하고 있다(인치지침 I. 2.).

(4) 금속탐지기 및 스캐너

이는 “질서유지권(Hausrecht)을 통한 보안조치”로서 출입구 검문 시 사용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a조 제2항에 근거한다.

마. 유형력의 행사 요건

법정경위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a조(질서유지권 기반 조치), 제31c조(법정경위 고유 권한), 제31d조(구금자 대상 특별 조치)이다.

이들 조항에서 확립된 유형력 행사의 요건은 ① 구체적 위험(Gefahr)방지 ② 법정질서 침해 ③ 재판실효성 확보 필요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구체적 위험 방지(Gefahrenabwehr)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a조 제2항 제5호 내지 7호는 법정경위가 사람 · 시설에 대한 현재의 구체적 위험, 폭력행위의 개연성, 자해 위험, 타인 공격 가능성, 도주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1d조 제1호는 구금자에 대하여 “자해 또는 타해 위험발생 시 즉각적인 물리력 및 통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2) 법정질서 침해 대응

법원조직법(GVG) 제176조 이하의 법정경찰권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 집행을 위

하여 법정경위는 법정 소란자의 물리적 제지, 강제 퇴정, 법정 내 체포(Festnahme) 보조, 휴대품 · 증거의 압수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법정경위는 판사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c조 제4항).

(3) 재판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피고인 · 증인의 인치(Vorführung) 과정에서 재판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바. 비례성의 원칙

독일 형사소송 전체에서 핵심 원칙인 비례성 원칙은 법정경위의 강제력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 세 가지 원칙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141]

(1) 적합성(Geeignetheit)

법정경위의 강제조치는 재판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며 위험을 제거하는 데 실제로 유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소란에는 수갑보다는 퇴정 명령이 우선된다.

(2) 필요성(Erforderlichkeit)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경위는 그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동일한 목적 달성을 할 다른 완화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강제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치 중 폭력 가능성이 낮은 자에게 족쇄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상당성(Angemessenheit)

강제력 행사 등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보호하려는 공익을 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행사된 유형력이 과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상당성에 위배되어 위법한 강제조치가 될 수 있다.

---

141) Müller/Stollenwerk, DRiZ 2024, S. 193.

사. 사법경찰적 권한[142] 행사

(1) 피고인 · 재소자 인치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법정경위가 직접 인치 및 구금 업무를 담당한다. 인치 과정에서는 도주,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경위는 단순한 보조적 직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도주 방지 · 구속 유지 · 필요한 물리력 행사와 같은 사법경찰적 권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c조 제3항은 "법정경위는 인치 목적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구금(Gewahrsamnahme)할 권한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금지품 · 위험물 압수 및 보관

법원 출입 시 금속탐지기, 수하물 검색 등을 통해 위험물 반입을 통제하며 일부품목은 보관 후 귀가 시 반환하지만 불법무기, 마약류 등은 반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러한 경우 "보관"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압수 및 증거수집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법법(JustG NRW) 제31e조는 주 경찰법(Polg NRW)의 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정경위가 위험물의 강제적 압수 · 보관 · 인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3]

2. 시사점

독일의 법정경위는 주정부 법무부 소속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조직 운영과 구체적 권한은 개별 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법원 출입 시 검색과정에서 위험물 · 금지품에 대한 압수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인 법정 및 청사의 질서유지권 외에 피고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인치 및 구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치 및 구금 과정에서 도주방지 및 구속유지에 필요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수갑과 족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당사자를 구금할 수도 있도록 주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집행법에서는 대상자를 포박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규칙과 인

142) 재판장의 권한 아래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적인 강제력 행사 등 특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정경위가 독자적인 수사권이나 영장집행권 등 사법경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143) Müller/Stollenwerk, DRiZ 2024, S. 194.

치지침에서는 수갑과 족쇄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여 법체계가 상위 법률에서 하위지침에 이르기까지 권한의 위임과 요건 및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Ⅳ. 일본

1. 현황

가. 법정 및 청사보안 업무

(1) 법정 질서유지

일본 재판소법[144]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정에서 질서유지는 재판장 또는 개정한 1인의 재판관이 법정에서 재판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이 있는 경우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71조의2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 개정 전 · 후에라도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파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은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법정경위(廷吏)

일본 재판소법 제63조에 의하면 각 재판소에 법정경위를 두고 법정경위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 및 그 밖의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사무를 취급하며 각 재판소에서 집행관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소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 법정경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정리'라는 별도 직명 보다 법원직원(예: 재판소 사무관 등)이 법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45]

(나) 재판소 사무관 등

'법원 질서유지 책임에 관한 규칙'[146]에 의하면 재판소가 재판장 이외의 직원에게

144) 일본 「裁判所法」(1947. 4. 16. 法律 第59号, 2019. 6. 26. 法律 第44号 개정).
145)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事務総局分課規程」(最高裁判所規程 第5号, 2025. 1. 29. 최종개정).
146) 最高裁判所, 「法廷の秩序維持等にあたる裁判所職員に関する規則」(1952. 9. 16. 最高裁判所規則 第23号).

재판장이 법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하는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여 실무상 종래 재판소 사무관 등 재판소 직원이 법정경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재판소 직원 제도의 개편에 따라 법정경위에 해당하는 직책은 독립된 전담직제로 운영하기보다 재판소 사무관이 업무분장에 따라 법정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47] 따라서 해당 업무는 재판소 사무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에서는 법정경위라는 명칭이 삭제된 것일 뿐 법정경위의 업무는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법정경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소 사무관 등은 법정 내에서 재판 진행을 보조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집행자로서 법정 내 소란 등으로 제재 절차가 필요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은 법원직원(재판소 사무관 등) 또는 경찰관에게 행위자를 구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148]

(다) 파출경찰관

파출경찰관이란 재판소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재판장이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요구에 따라 재판소에 파출된 경찰관을 말한다. 최고재판소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하여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찰관을 파출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149] 재판소에 파출된 경찰관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반경찰권에 기초하여 재판소의 청사 및 법정 등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150]

일본 재판소에서는 독립적 · 상설적 보안경비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출경찰관은 재판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 상황에 대응하는 핵심적 보안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151]

파출경찰관은 법정경위와 달리, 재판의 심리진행이나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147) 田口真義, “裁判所の廷吏”, 法学館憲法研究所, 2018, https://www.jicl.jp/articles/opinion_20181119.html (2026. 3. 4. 최종확인).
148) 일본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1952. 7. 31. 法律 第286号, 2025. 5. 23. 최종개정).
149) 最高裁判所事務総長, 「裁判所法における警察官の派出要求について」(1963. 11. 7. 通知).
150) 河上和雄 · 小林充 · 植村立郎 · 河村博 編, 『注釈 刑事訴訟法 第3版 第4巻』, 立花書房, 2012, 162頁.
151) 中山善房 · 古田佑紀 · 原田國男 · 河村博 · 川上拓一 · 田野尻猛 編,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 訟法(第3版) 第6巻」, 青林書院, 2022, 49頁.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고 추가적인 폭력이나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52] 또한, 피해자나 증인 등의 신체적 안전과 절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정경비를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 법원 청사보안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총무국, 인사국, 경리국으로 구성되며 경리국은 조달, 시설, 청사운영을 담당하며 각급 법원에 사무국을 두고 청사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53] 청사 경비업무는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방식으로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업체는 시설경비, 출입통제, 순찰 및 방호 등의 보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54]

민간경비업체는 경비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법원청사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법원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불응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55]

나. 유형력 행사 수단

(1) 재판소 사무관 등

재판소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퇴정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법정 등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최고재판소 규칙 제6호, 2006. 5. 12. 일부개정) 제2조에 의하면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명한 사항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그 밖에 온당하지 아니한 언동으로 재판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한 자는 2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법원직원

152) 中山善房 · 古田佑紀 · 原田國男 · 河村博 · 川上拓一 · 田野尻猛 編,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第3版) 第6巻」, 青林書院, 2022, 49頁.

153) 最高裁判所事務総長, 「下級裁判所の事務局等の組織について」(事務総長依命通達, 2025. 2. 14. 일부개정); 最高裁判所, “裁判所の組織について”, https://www.courts.go.jp/saiyo/siritai/soshiki/index.html (2026. 3. 4. 최종확인).

154) 東京警備保障株式会社, “警備事業”, https://www.tokyo-keibi.co.jp/security-service/ (2026. 3. 4. 최종확인). 다만 이 자료는 민간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시설경비, 출입통제, 순찰 등 보안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155) 東京高等裁判所, “入庁時の所持品検査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courts.go.jp/tokyo-h/about/osirase/syojihinkensa/index.html (2026. 3. 4. 최종확인).

(재판소 사무관 등) 또는 경찰관은 재판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구금할 수 있다.

(2) 파출경찰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사무관 등이 수행하는 퇴정조치, 구금집행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일반경찰권이 작용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따른 최소한도의 권리 · 자유 침해 및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사용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며 위해 발생을 수반하는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156]

(3) 민간경비업체

민간경비업체는 경비업법[157]에 따라 경비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호용 호신장비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며, 법원청사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도 법원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2. 시사점

일본은 법정질서 영역에서 재판장의 지휘하에 재판소 사무관 등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동시에 폭력범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은 경찰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파출경찰관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하에 행사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체계 아래에서 운용되며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가지지 않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호신용구도 법령상 제한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는 상시 인력 · 설비 운용에 강점이 있으나 유형력 행사 및 강제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일본 법원 보안조직의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는 주로 파출경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6) 일본 「警察官職務執行法」(1948. 7. 12. 法律 第136号, 2025. 6. 1. 시행).
157) 일본 「警備業法」(1972. 7. 5. 法律 第117号, 2025. 6. 1. 시행).

제3절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 현황

I. 국회

1. 방호체계

국회의 경호체계는 현재 3선으로 운영 중이다. 1선인 국회경위는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아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으로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업무를 담당한다. 2선인 국회방호원은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으로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업무를 맡는다.

국회경위와 국회방호원은 국회사무처 산하 경호기획실이 담당조직이므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국회경위는 '국회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방호원은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를 근거로 조직되어 있다.

3선인 국회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사당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을 경비한다.[158] 국회경비대 조직의 설치 근거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 규칙' 제31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 기동대, 22경찰경호대, 국회경비대,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는 직할대로 조직되어 있다.

가. 국회경위직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또한, 제144조 제1항에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경위직은 국회 본회의장, 각 위원회 회의장 내부 질서유지 및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 내 경위직은 60여명이다.

158) 네이트 뉴스, '국회, 경호체제 개편시동...경위, 방호통합추진' (2025. 3. 25.), https://news.nate.com/view/20250325n15480?utm (2026. 3. 4. 최종확인). 국회사무처는 2024. 12. 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위와 방호로 나뉜 국회 경호직군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안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사무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나. 국회방호직

국회방호직은 국회 내 청사 출입통제 및 일반경비 · 방호,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 공채로 채용한 국회경위직과 달리 방호직은 특채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위직과 달리 방호직은 본래 10급 기능직이었으나 10급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국회경위직과 방호직 모두 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다. 같은 급이지만 두 직렬은 시험과목이 다르다. 헌법과 행정법총론을 치르는 경위직과 달리 방호직은 헌법과 사회 과목을 본다. 국회 내 방호직은 현재 150여명이다.[159]

다. 국회경비대

국회경비대는 1951년 내무부 훈령으로 설치되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대테러 업무 등 국회경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120여 명 규모로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와 테러 및 집회대응, 주요인사 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60] 국회법 제144조 제2항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서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상시 파견되어 국회 외곽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2. 임무 및 권한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 질서유지를 의장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부경찰권과 의회가택권의 행사 주체는 국회의장이다. 내부경찰권은 국회 내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이나 방청객은 물론,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실력으로 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회가택권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국회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내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국회의 질서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다.[161]

159) 네이트 뉴스, '국회, 경호체제 개편시동...경위, 방호통합추진' (2025. 3. 25.), https://news.nate.com/view/20250325n15480?utm (2026. 3. 4. 최종확인).
160) 이상훈, "국회경호 · 경비제도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27권 제1호 (2025), 181.
161) 전진영, "국회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01호 (2024), 2.

국회법 제150조에 따르면 회의장 내 현행범 체포권한으로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위는 의장의 지휘하에 제한적 체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권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질서유지 권한에 기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국회 고유의 보안조직인 국회경위직과 국회방호직은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국회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 1991. 12. 12. 국회규정 제336호)은 국회청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등 기타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장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방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162]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내지 14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및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하여 퇴거, 제지, 현행범 체포, 신체검사 등 강제처분에 필요한 유형력 행사의 근거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162) 국회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 1991. 12. 12. 국회규정 제336호)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의회 경호와 의회 방호 등 국회보안 업무는 국회사무처 산하 경호기획실에서 담당하고 비상계획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다.[163]

'국회사무처 직제'[164] 제5조의2(경호기획관)에 따르면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국회의 경호 및 방호, 국회의 방청,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출입증의 발급 · 관리,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9조(기획조정실)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밑에 비상계획관으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여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직장예비군의 편성 · 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사보안 업무와 비상계획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II. 행정부(중앙행정기관 · 정부청사)

1. 방호체계

정부청사의 관리에 관한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으로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청사의 관리는 대통령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에 근거한 행정안전부훈령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으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출입통제,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768호, 시행 2025. 9. 23.) 제5장 제4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서울,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 전체의 운영, 시설보안 관리를 총괄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아래 청사보안기획과를 두고 각 청사 관리과 경비인력이 출입통제 및 순찰, CCTV관제, 차량통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65호 2024. 10. 10. 일부개정)에 따

163) 국회 홈페이지 / 국회사무처 조직도, 국회사무처 전화번호 일람표 검색.
164) '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 제00235호, 2023. 4. 10. 일부개정).

르면 시설관리책임자[165]가 경비인력, 조직운영 및 지휘감독 체계 등에 관한 자체경비와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 · 방호 인력으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 직렬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하고 있다.

2. 임무 및 권한

각 청사별로 출입보안 매뉴얼[166]을 제정하여 보안검색, 위험물 반입제한, 출입자 통제 및 퇴거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비 및 방호인력은 청사 방문 인원 · 차량의 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물품검색, 국무위원 및 정부청사 귀빈 의전, 통합 상황실 운용 및 관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인 등에 대한 대응, 청사 내부 방호 및 방범순찰 등의 청사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유사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지원은 가능하나 독자적인 경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167]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 및 매뉴얼 코너에 각 청사별로 세부 보안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출입증 발급 · 회수, 방문객 등록, 차량통제 절차, 보안검색 절차(금속탐지기, X-ray 검색, 수하물 검사), 폭력 · 난동, 무단 농성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절차(1차 언어적 제지 및 주의→2차 퇴거요구→3차 경찰출동 요청) 등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청원경찰 방검복 · 삼단봉 사용 매뉴얼'에 의하면 "삼단봉은 폭행, 흉기 난동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방어 및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대상자의 신체를 삼단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고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

165) 정부청사출입보안지침 제2조 2호 시설관리책임자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66)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정책자료 법령 매뉴얼 참조.

167)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공무원 운영규정' 제4조(임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2024. 5. 21.)을 입법예고하였다.[168] 그 주요내용으로 제10조(청사출입관리)에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11조(청사 질서유지)에서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12조에서 방호 인력을 청원경찰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유형력 행사의 주체를 경찰 작용 수행이 가능한 조직과 연결하였다. 이는 기존 대통령령「정부청사관리규정」만으로 정부청사의 출입제한 · 강제퇴거 등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방호인력의 유형력 행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768호, 시행 2025. 9. 23.)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제24조에 따르면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정책국을 두고 국장으로 보하며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제5장 제40조에서는 청사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두고 본부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제40조 제6호에서 정부청사의 보안 · 방호 · 방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하여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를 분리하였다.

III. 헌법재판소

1. 방호체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제471호, 2024. 7. 1. 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68)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757호 (2024. 5. 2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하며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2. 임무 및 권한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려는 인원과 차량통제, 위험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자 등의 검색 및 주차통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판관 및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총무과장은 심판정 관리부서의 요청을 받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정 개정일에 심판정 내부에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36조(평의, 변론 · 선고 시의 질서유지)].

청원경찰은 일반경찰과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질서유지 등의 행정적 권한만 행사하며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역시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물리력 행사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목적 확인과 신분확인 등 검색, 주차통제, 순찰 및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제5호의 각 규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기타 보안대원의 협조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 제한이나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보안관리대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헌법재판소 내규 제

284호 2024. 6. 20. 전부개정) 제2조 8호에 보안장비로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개인방호 장구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하는 사람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헌법재판소 내규 제394호 2025. 2. 26.일부개정)에 의하면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관련 조치사항 중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지시를 과장 전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보아 청사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행위에 대하여 중지, 제거, 퇴거 등 강제처분에 필요한 유형력 행사의 근거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시행 2025. 1. 1.) 제7조, 제11조에 따르면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을 두고 행정관리국에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 인사과, 청사관리과를 둔다.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총무과에서 보안관리대 운영, 비상계획 ·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호 · 의전 및 보안업무는 주무관이 담당하고, 청사보안, 비상대비, 예비군 업무는 전문경력관 나군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총무과장이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가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Ⅳ. 검찰청

1. 방호체계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1317호, 2022. 9. 30. 일부개정)에 의하여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담당하고,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으로 하여금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청사방호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은 청사의 출입, 방호 및 경비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임무 및 권한

청사방호 및 경비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은 청사 내·외곽 방호 및 차량통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방호공무원은 청사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외 검찰청사에 관한 방호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사의 출입통제가 주요업무 내용으로 대검찰청 청사방호 직원의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1317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25조(방호장비관리) 제4항에 개인·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는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는 경우,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 청사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에는 방호·경비요원이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5호, 2021. 12. 1. 일부개정)에 출입증 발급관리, 보안검색, 출입제한 및 출입금지 대상, 위험물 반입금지, 청사 내 질서유지, 비상상황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316호, 시행 2025. 2. 25.) 제3조에 의하면 대검찰청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을 두어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관리,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1317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6조에 의하면 청사방호담당관은 비상안전관리관으로 하며 청사의 출입, 방호 및 경비 절차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실태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제18조에서는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를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담당하게 하고 청사방호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안전관리관이 비상대비업무와 청사보안업무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 국내 기관별 보안조직이 주는 시사점

1. 법적 근거 마련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에 대하여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으로, 헌법재판소는 규칙으로, 검찰청은 예규에 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사방호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하위 규정들이 헌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는 각 청원경찰을 보안 · 경비 업무의 일부 구성원으로 조직함으로써 '청원경찰법' 법률에 따라 각 시설의 경비, 보안검색,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통제, 위험발생 시 퇴거요구 등 공용물에 대한 경찰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안 수준의 출입제한, 퇴거 과태료 등 공용물 경찰권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제2201716호, 2024. 7. 12.)하였다.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는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청사 출입의 제한, 보안검색, 위험물 반입 통제, 질서유지, 위험상황 발생 시 제지 · 퇴거 요구 등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적 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설치와 권한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일반 국민이 빈번히 출입하는 공간이고, 법정과 청사 내에서의 보안조치는 재판절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긴장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보안조직의 권한 근거와 한계를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국내 기관별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헌법재판소는 규칙, 검찰청은 예규에 각 보안 관련 근거를 두고 있어 규범 형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청사방호와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가 기관별로 상이한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도 출입제한, 퇴거 및 질서유지 등 공용물 경찰권적 기능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사보안 영역 전반에 관하여 보다 상위의 명확한 규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원보안관리대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부 기관보다 제도적 기초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율은 주로 조직의 설치와 명칭, 개괄적 기능을 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보안현장에서 문제되는 출입통제, 퇴거 요구, 위해행위 제지, 보안장비 사용, 유형력 행사 등 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 · 절차, 책임에 관하여는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현재의 규범체계만으로는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권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안업무 수행자와 출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이후 통합정책에 따라 청원경찰의 신규 채용이 중단되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전과 같이 청원경찰법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부 준용 구조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되기 어렵다. 청원경찰이 자연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보안기능은 사실상 법원 고유의 인력과 규범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과 직무를 외부 제도의 보충적 준용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법기관의 특수성과 법정 · 청사보안의 현실을 반영한 자체적인 규범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보안관리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단순히 설치 근거를 두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직무범위와 권한, 유형력 행사 기준, 보안장비 사용, 출입통제 및 퇴거조치의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와 책임체계까지 포괄하는 규범적 기반을 정비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의 직무집행법 제정을 검토하고, 적어도 그 전단계로서 유형력 행사와 보안조치의 기준 · 절차를 구체화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법원보안관리의 법적 명확성과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전한 재판환경 조성과 사법작용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유형력 행사 규정의 구체성

청사보안 업무에서 유형력 행사는 법정 및 청사 내 위험상황을 제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일반 행정청사와 달리 재판 당사자, 증인, 민원인, 구속피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밀집하는 공간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 쉬운 장소이므로, 보안업무 수행자가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대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규범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지 유형력 행사를 허용하는 일반적 근거만으로는 법원보안관리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국내 기관별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는 퇴거 · 제지 · 현행범 체포 · 신체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과 요건은 외부에 확인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보안검색 절차와 폭력 · 난동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나 상위 법률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법률안이 추진된 바 있다. 또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분사기 사용기준 및 관리지침'[169]에 의하면 가스분사기 사용요건과 절차가 있으나 각 상황 단계별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요건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가스분사기 사용 등 일부 유형력 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169) 정부청사 청원경찰 분사기 사용기준 및 관리지침
제6조(사용요건) 분사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정부청사 경비구역 내에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절차)
① 분사기 사용 전 직원 및 방문객 등을 격리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 또는 현장책임자는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분사기 사용 명령을 한다.
③ 분사기 사용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3회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비교는 청사보안 영역에서 단순히 유형력 행사 권한의 유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가 제도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청사방호 및 경비를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예규에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원경찰법상의 강제력(출입통제, 퇴거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상위 법률 근거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법원보안관리대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은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원칙과 장비 사용 시 일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문제되는 상황별 대응기준까지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단순한 소란과 적극적 폭행의 구별, 언어적 위협과 현실적 위해의 구별, 신체적 접촉에 의한 제지와 장비 사용 사이의 단계적 선택, 흉기 소지 상황에서의 대응수준, 사후보고 및 점검 절차 등은 현장 대응의 적법성과 상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럼에도 기준이 포괄적 · 추상적으로 남아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대응 수준이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유형력 행사 규정의 구체화는 단지 대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 행사의 한계와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명확한 기준은 현장 대원에게는 상황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지휘 · 감독자에게는 교육과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며, 청사 출입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고 또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결국 구체적 규정은 현장 대응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상호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조화시켜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는 '최소한도'라는 일반원칙에 더하여 위험의 정도와 상황 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응기준, 사용 가능한 보안장비의 종류별 요건과 제한, 제압 이후의 후속조치, 보고 및 사후심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내부 참고사항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최소한 현장 집행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별 규범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현장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대응 수준을 구조화함으로써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없으면 동일한 위해 행위에 대하여 담당자마다 대응의 편차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대응 위험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별 대응 기준은 재량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니라 재량행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장치여야 한다. 즉 재량을 줄이는 데 있지 않고 추상적 규범의 재량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 기준의 구체화는 법원보안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재판환경 조성과 사법작용의 정당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비상대비와 청사보안 업무의 조직 분리

국회는 직제상 기획조정실 소속의 비상대비(전시계획) 기능과 경호기획관의 일상 청사보안 · 경호 기능을 조직상 명확히 분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비상정책국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보안 · 방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두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총무과 소속의 주무관이 경호 · 의전 ·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청사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는 전문경력관으로 담당하여 총무과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비상안전관리관이 두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검찰청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경비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사무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는 모두 법원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그 업무의 목적과 성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비상대비 업무는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교육 · 훈련, 점검 및 평가 등 관리 ·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청사보안 업무는 출입통제, 보안검색, 법정질서 유지, 위험상황 발생 시의 즉각적 대응 등 현장 집행기능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양 업무를 동일한 조직체계 아래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 · 감독 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안전관리관 체계가 비상대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현장 보안업무까지 함께 관장하는 구조에서는 보안업무의 계획 · 집행 · 점검이 사실상 동일한 지휘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보안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른바 '자기 점검'의 한계로 인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사

고 예방과 사후 점검은 상호 견제와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관리와 집행이 동일 체계 내에 결합되어 있으면 이러한 통제구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청사보안 업무는 일반적인 안전행정과 달리 법정과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재판절차의 안정성과 법정질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그럼에도 이를 비상대비 업무의 연장선에서 관리할 경우 청사보안의 특수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보안관리대의 본래 기능이 대법원의 법정보안과 청사방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 조직이 전국 각급 법원의 보안정책과 현장 집행기능까지 함께 겸하면서 총괄하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의 조직 분리는 단순한 사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보안관리의 전문성 · 독립성 ·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비상대비 부서는 재난대응과 안전총괄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청사보안 부서는 보안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조직의 운영과 평가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기능적 분리를 통하여 각 업무의 목적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재판환경의 조성과 사법작용의 안정적 수행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개선방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법원경찰대 도입 방안

I. 서설

앞서 제2장 법원보안관리대의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은 과거 1988년 법원경찰대 설치안 입법시도와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 단계의 제도 검토 등 여러 차례 사법부 소속 보안 · 경찰인력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으며 이후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창설과 2014년 이후 법원보안관리대로의 명칭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정 및 법원청사 내 보안을 위해 일정 범위의 대응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원조직법 제61조 법정 질서위반자에 대한 감치 집행, 형사소송법 제81조에 근거한 구속영장 집행 등 신체 안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갑, 포승 등 인신구속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피감치인 또는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시도 등 돌발상황에 적극적인 대처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정 및 각 실 · 과, 종합민원실 등 법원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에서 민원인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유형력 행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상황을 감내 · 수습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법원청사 방호와 관련하여 대규모 불법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손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당직판사 집무실을 찾아다니며 신변을 위협하는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전정보 수집이나 적절한 현장 대응이 부재하였던 점, 재판 관련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무기사용 권한이 없어 테러에 대비한 물적 수단과 대응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170] 등은 사법부에 독립적인 경찰권한을 부여할 필요에 관한 문제의식을 재차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다.

---

170)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266 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과 위협 양상을 전제로 할 때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는 단순한 조직 신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보안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로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법원 소속 경찰권한의 부여는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기능분담의 경계 설정,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법행정 부담 등 다각적인 쟁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원경찰대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다음 구체적 도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도입 시 제반 검토사항[171]

1. 권력분립의 문제

경찰은 그 수행하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과 행정경찰(Police administrative)로 나누어진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미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위한 사후적 활동을 의미하며, 행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한 권력 작용을 의미한다.[172]

이러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나 통제를 배제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태생하여 대륙법계 국가에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취지는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173]

법원경찰대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일반경찰권을 보유한 행정부와 사이에 권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수사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청사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한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히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사와 법정의 안전을 스스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유지 권한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제가 된다. 특히 일반적 범죄수사나 치

171)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277-286 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
172) 이정회,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대검찰청 (2007), 21.
173) 이정회,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대검찰청 (2007), 21.

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와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일반경찰권과 구별된다. 청사방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적 행사와 안전한 재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에서 분리된 연혁적인 이유가 사법작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사법기관의 지휘 ·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174]이라면 이런 논리의 전제에서 국가기관을 달리하는 우리 헌법상 사법부는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어 사법부 내 사법행정 작용으로서 경찰권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의해 행사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결국, 현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정경찰권을 재판장에게 위임한 현행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내 경찰권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가. 제도 배경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라는 제목 아래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 및 송치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175]

나. 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는 교도소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보호감호소장, 치료감호시설소장, 보호관찰소장,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정

174) 이정회,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대검찰청 (2007), 22.
175) 김주원,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9.

자격의 국가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산림보호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등의 일정요건의 공무원이 있고, 같은 법률 5조의 각 호[176]에서 규정된 자로 그 소속 관서장의 제청으로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일정요건의 공무원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 특징

일반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차이점으로 일반사법경찰은 직무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찰활동을 수행하지만 특사경은 법률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일반사법경찰은 방범, 경비, 교통 등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특사경은 환경, 산림, 철도 등 그 직무범위의 제한을 받는다.[177]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개별 법령에 명시한 경우(식품위생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준용할 수 있다.

라. 수사권

특사경 제도는 국가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송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앞서 제2장 제3절 법원 내 발생하는 사건 · 사고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법정소동, 법정모욕,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형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폭력죄, 협박죄,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행위의 태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범죄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그 범죄수사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보안관리대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획정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수사권의 중복이나 경찰 및 검찰과의 수사권 범위의 혼란 초래, 법원보안관리대

176) 같은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지정한 각 기관내부 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사무, 철도경찰사무, 소방공무원, 실습림 및 관리림 보호사무, 국가유산보호사무, 계량검사공무원, 관세조사업무, 어업감독, 광산안전원, 공중위생단속업무, 의료단속업무, 방역관 역학조사관, 청소년보호업무,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긴급안전점검업무 등 각종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177) 최종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 187.

의 수사권 행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 훈련 과정의 필요, 법원에서 수사하고 판결까지 한다면 이에 대한 공정성 및 정당성의 시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면 특사경 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78]

3. 신변보호 조치 규정 도입

최근 법원 내외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물론, 재판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변보호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09년~2018년(10년) 동안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인원은 총 1,197명으로 요청 대상자는 소송당사자(68%), 증인(30%), 법관(1%)에 이르고 있다.[179] 법관만을 보더라도 2025년 한 해 신변보호 요청은 1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180] 비록 위 수치들은 집계기간과 대상이 상이하고, 국정감사 자료 등 인용보도에 기초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적어도 법원 구성원과 재판관계인에 대한 신변보호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최근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사자 또는 증인 등의 신변 및 신상보호에 대하여 대법원 내규인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내규에 의할 경우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에 대외기관 간의 협력의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관을 두고 신변 및 신상정보에 관한 협의를 위해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고 있다.[181]

현재 법원보안관리대가 법원 청사 외부에서 법관 등 사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 신변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권한이 부재하다. 이런 경우에는 위 내규 제3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경찰관의 파견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변보호업무를 수행 중 위해 가능성에 대해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찰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변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182] 따라서 법원경찰대 도입을 통하여 법관 및 사법

17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59-60.
179) 법률시대, '(국감자료) 법원 내 신변보호요청 10년간 총 1,197명' (2019. 10. 5.),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53&utm (2026. 4. 8. 최종확인).
180) 한국경제신문, '법관 신변보호 요청 폭증…"판사 가만 안둬" 좌표찍기도' (2026. 2.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82257 (2026. 4. 8. 최종확인).
181)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278.

업무 종사자와 당사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 청사 외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4.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법원경찰대를 도입할 경우 법원경찰에 부여될 재판기능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긴급동행영장,[183] 소재탐지촉탁,[184] 불출석 증인을 위한 구인영장집행,[185] 법원에서 내린 각종 감치 관련의 법집행권한[186] 등이 있다. 특히, 소재탐지촉탁과 증인의 소환을 위한 구인영장집행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는 재판실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187] 현재 소재탐지촉탁이나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집행이 실무상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경찰대 도입 시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도입 방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5.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집행관의 강제집행현장에서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경찰원조 요청에 대하여 경찰이 민사사건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국가구제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는 강제집행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만약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그 존립의 근거부터 흔들릴 수 있다.[188]

---

182)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278.

18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소년법」 제14조 참조.

184)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185) 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52조 참조.

186) 서현웅,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151-152 참조.
재판명시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 법원경찰 도입과 감치시설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18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에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증거능력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전에 취하는 절차로서 의의를 고려할 때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는 실무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는 채권자 측이 자체 고용한 경비용역들로 하여금 집행현장에 끼어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국가구제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189]

가. 경찰원조의 실질화

경찰의 유형력 행사는 강제집행과정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공권력이다. 집행관이나 집행보조자의 유형력 행사는 그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집행방법이므로 경찰원조의 실질화는 합법적이고 원활한 강제집행 구현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현행 집행관법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경찰이 집행관 원조 요청에 협조할 것을 의무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다.[190]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집행원조

법원조직법의 개정 또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무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를 집행관의 원조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근거 법률에 명시화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초동대응을 신속하고 계획성 있게 수행할 수 있고, 집행방해 억제력도 제고할 수 있으며, 집행현장의 일관된 안전관리를 유지하여 국가구제원칙을 확립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법체계와 제도의 취지, 법원의 인력과 조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른 사무분담 및 전문교육 · 훈련 등 다양한 부수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

188) 손흥수,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417.
189)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66. 집행관 설문조사 결과 집행관의 대인적 유형력 행사 허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0)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208.

6. 지휘체계 구성

가. 지휘체계

법원경찰대를 설립할 경우 법원경찰의 기능이 법원보안과 재판기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지휘체계는 현 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체계와 동일하게 청사관리권이 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청사관리 부분은 법원장의 지휘 아래, 법정 내 질서유지와 명령의 집행 등 재판기능 지원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정책 총괄부서

제5장 제2절 Ⅱ. 2. 법원보안관리대 업무관리의 체계화 참조.

7. 인권침해 방지 및 부당소송 지원 대책 마련

가.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 방지 대책은 법원경찰대의 도입 시 물리력 행사와도 관련성이 있지만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찰청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응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10년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 중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반복 사례는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191] 이와 같은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 스스로도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유형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인권의식의 강화, 보안장구 사용 교육의 실질화, 윤리교육의 함양,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

19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통계자료/ 위원회 통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0&boardNo=7611490&menuLevel=3&menuNo=120 (2026. 3. 4. 최종확인).

(1) 인권의식 강화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유형력 행사자의 인권의식 정도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력 행사자와 개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92] 따라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민과 유형력 행사자가 함께 인권의식 향상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민간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193]

(2) 보안장구 사용 교육의 실질화

보안장구 사용에 있어서 기본 매뉴얼의 숙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보안 장구의 선택과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련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의 방법은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한 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현장상황에 따른 실전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3) 윤리교육 함양

유형력 행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헌장의 제정과 윤리교육 등 또한 필요하다. 이 헌장이 유형력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철학을 제공하여 윤리교육과 함께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당소송 및 고소 · 고발로부터 대응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 책임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 · 고발을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192) 김지선,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 67-69 재구성.
193) 김지선,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2018), 30-31 일부 재구성(가.항~다.항).

받은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또는 선임비용을 보장하고 있다.[194] 다만, 보장 제외 사유로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한편, 보안관리대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상 고소 · 고발 또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송지원도 필요하다.

보험은 사후 재정보전 수단일 뿐 수사초기 단계의 진술과 증거, 법률구성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담부서(예: 감사, 소송 수행팀 등)에서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보전과 아울러,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일괄지원이 가능한 절차 마련도 필요하다.

8. 인터뷰 내용

다음은 법원경찰대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 내 업무관련자, 집행관 및 일선 경찰관들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D(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경찰권 중 수사권까지 도입할 필요성은 없으나 법정과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한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F(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미만)

- 감치재판 및 구속영장 집행 시에 대상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치재판이 끝나고 교도관이나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를 피고인대기실 등에 유치하거나 그런 장소가 없는 경우 보안관리대 사무실에서 지키며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과 장비 지급이 필요하다.

법원보안관리대 M(법원경위: 경력 10년 이상)

- 만약 법원경찰대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장에게 법정경찰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사관리권에 근거한 유형력 행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4) 법원행정처, '법원보안관리대 공통매뉴얼' (2022), 221.

법원보안관리대장 H(법원서기관, ○○지방법원 근무)

- 수사권까지 도입할 필요성은 없으며,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현장의 대응력과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규정대로 관련 수칙만 잘 지킨다면 제압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을 가지고 보안관리대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집행관 A(○○지방법원, 집행관 경력 3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에 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관이 원조요청을 하는 방안은 체포, 구금 및 법원 외부에서 권한 행사는 물론, 인원 충원 등 해결할 관련 문제들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집행관 B(○○지방법원, 집행관 경력 3년 이상)

- 집행방해 행위는 각 사건마다 채무자의 불만과 행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대처방안은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집행관 C(○○지방법원, 집행관 경력 2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에 경찰권을 부여한다면 경찰에서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출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경찰관이 집행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저항이 심한데,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집행현장에 대동한다고 하여 상황이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추후 해당 대원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많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행관이나 법원보안관리대나 모두 법원에서 나온 같은 부류로 알고 더욱 강하게 저항할 우려가 크다.

경찰관 A(○○경찰서 근무, 경력 13년차 경사)

- 법원에서 불출석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서를 각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서에서는 각 지구대로 촉탁사항을 지시하고 보고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업무에 대하여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인력도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법원에서 자체 경찰대를 도입하여 구인영장 집행, 소재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경찰관들은 경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관 B(○○경찰서 근무, 경력 20년차 경위)

-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지역 경찰서에서 원조요청에 응하고 있다. 혹시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대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민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만약, 법원경찰대가 도입되어 집행현장에 경찰을 대신하여 출동한다면 경찰로서는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도 줄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III. 도입 방안[195]

1. 수사권 포함 여부

법원경찰대를 도입할 경우 경찰의 수사권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에 법원 청사 내 범죄 또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상대로 발생하는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하자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법원보안관리대가 행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이의 권한 불분명, 수사권의 중복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 일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상당 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고, 충분한 실무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한 교육과 훈련만으로 수사권 행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전담 구성원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현재의 다원적 직렬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법원보안관리

19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59-70 부분을 발췌 및 일부 재구성.

대의 직렬 통합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법원 청사에서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현장에서 체포하고 직접 수사하여 자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공정성과 정당성의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 타 기관 중 자체보안 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법원소속의 자체 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가 곧바로 수사권 부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본래 기능이 법정질서 유지와 청사방호에 있는 이상 그 권한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출입통제, 위험물 · 금지물품의 확인 및 보관, 위해 우려자에 대한 퇴거 · 격리 · 출입제한, 현행범인 체포와 도주 방지,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의 사용, 긴급상황에서의 현장 통제와 경찰 인계 전까지의 일시적 제지 ·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한은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동 요건과 한계, 장소적 · 시간적 범위,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 사후보고와 책임통제 절차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사권을 제외한 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는 독자적인 공권력 행사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단순한 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나 예규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방식,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의 사용,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인권보호 및 사후통제 장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직무집행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구인영장 집행 및 소재탐지 권한 부여 여부

앞서 검토한 법원경찰대 도입 시 고려사항 중 법원보안관리대에 구인영장의 집행권한, 소재탐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단순한 보안조직의 보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방호라는 본연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 재판기능 지원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는 대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도입 여부를 단정할 사항

이라기보다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본래 기능, 형사소송절차상 집행 권한의 성격, 경찰 등 외부기관과의 역할 분담, 인력 · 예산 및 교육훈련 체계,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구인영장을 포함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집행권한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집행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해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 본연의 업무인 법정 및 청사보안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선은 법원보안관리대에 위와 같은 권한을 직접 부여하기보다 경찰 협조절차의 구체화, 사건별 회신기한의 설정, 재판지연 우려 사건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행 제도하의 단기적 개선과제로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쟁점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 · 축적하면서 향후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중 ·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원조 여부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집행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에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조의 수범자를 경찰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물리력 행사의 전문기관을 경찰로 설정하고, 경찰은 일반 치안과 폭력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훈련,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절차는 분쟁해결 절차의 일환으로서 사적구제를 방지하고 집행권원에 기초한 권리실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법절차이다. 집행관 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실효성 있게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정당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집행절차에서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분노와 불만뿐 아니라, 정당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불만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므로 그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중립적 분쟁해결기관이어야 할 사법부가 만약, 법률 개정으로 법원보안관리대가 물리력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관의 원조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은 사법부가 사회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일방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강제력 행사의 주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는 집행관 제도의 중립성과 법원의 제도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보안관리대가 집행과정에 관한 집행원조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집행현장에 경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장 지휘와 물리력 사용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할지 불명확해지고, 이는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보안관리대가 집행관 원조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집행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법원보안관리대의 인력 및 조직의 여건과 전문성을 넘는 과도한 역할 부여로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4. 청원경찰의 증원 배치 방안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원경찰은 개별기관 또는 시설이 자체 비용부담으로 경찰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치안 인력을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이 아닌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 신분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라 경비구역의 경비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법원경찰대 창설을 위한 논의 내용으로 청원경찰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당시 예산상의 문제, 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안으로 경찰공무원 파견요구 규정, 형사판결 시 검사의 출석 요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196]

196)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269.

2025. 7. 1. 기준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으로서 청원경찰은 전국 법원에 34명이다.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후 직렬 통합 정책 이후 신규채용 없이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중이다.

청사방호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적극적으로 증원 배치하는 방안은 현재 보안관리직렬과 인적구성을 배분하여 청사방호와 법정보안을 이원화하고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법정보안과 청사보안을 함께 담당해야 하는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취지와 직렬 통합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앞서 제3장 제1절 Ⅰ. 직렬 구성의 다원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민간인 신분으로는 공무원 직급과 승진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지휘체계 및 효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임용과 배치는 미리 시 · 도경찰청장의 승인과 결정을 필요로 하고,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 ·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청사방호에 대한 외부기관의 간섭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원경찰을 증원 배치하는 방안은 채택하기 어렵다.

Ⅳ. 소결[197]

법원보안관리대에 수사권을 포함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국내 다른 기관들이 자체 경비 · 방호 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가 없으며, 국회경비대의 경우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며, 외국 법원의 보안조직 역시 법원 소속으로 자체 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가 경찰권 행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용절차에서부터 경찰공무원에 상응하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사후 지속적인 교육 · 훈련과 직무수행 연수과정 등을 새로이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현행 법원보

19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62-66 부분을 발췌 및 재구성.

안관리대의 인력구성 및 운영체계로는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의 시간적 · 제도적 한계점이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편, 청원경찰을 증원하여 적극적으로 배치하자는 방안은 법원보안관리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차선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라 경비구역의 경비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198]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자는 절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법원경비대 신설 이후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렬 통합정책으로 청원경찰 인력은 자연 감소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명에 불과하고, 보안관리직렬은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청원경찰은 청사방호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법정보안과 청사방호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원경찰 직렬의 인원을 다시 증원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여 재설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동안의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렬 통합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원보안관리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청원경찰을 다시 증원하여 적극 배치하는 방안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경찰권과 청사관리권을 바탕으로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와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3항 및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물건 확인을 위한 출입자 검색을 하고,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청사출입의 제한, 퇴거조치, 법원청사의 특정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 금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행위가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현행범[199]으로 체포할 수 있으므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의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법령상 권한이 국내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법원경찰대 도입과 관련하여서 단기적으로 현행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

198)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참조: 제3장 제1절 Ⅰ. 직렬구성의 다원성 3. 청원경찰 나. 직무범위.
199)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규범 정비(직렬통합, 지휘체계보강, 유형력 행사의 기준 및 절차 마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법원경찰대 도입 가능성을 선택지로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조직운영상 개선방안

I. 다원적 구성원의 통합

1. 기능적 통합

가.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

(1)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원경위를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현재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실익은 크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창설로 기존의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기능은 통합되었고 이후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원 내 보안업무는 통합조직인 법원보안관리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이 존치됨으로써 법원경위만이 여전히 법정사무의 우선 담당 주체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 내부의 보직순환과 사무분담의 불균형, 기능적 통합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에서 법원경위를 별도의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 계속 규정하는 것은 법원보안관리대라는 통합조직의 설치 취지와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정질서 유지와 법정 내 안전 확보는 이제 특정 직렬의 고유사무라기보다 법원보안관리대 전체가 담당하여야 할 통합적 보안업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64조 제2항의 사무분담 규정 역시 이미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이 법원보안관리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에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법원보안관리대 내부의 구체적 사무분담은 인력구성, 청사 규모, 법정 운영상황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한편,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200]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예규 제10조(재판 전의 준비) 및 제11조(법정질서유지활동)의 규정[201]을 살펴보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에서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 수행 기능

200)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10조(재판전의 준비)

① 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청객에게 법정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재판에 관한 집단적인 소란행위에 대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질서유지활동)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지하여야 한다.

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휴대폰 벨소리 · 옆 사람과 큰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부채질을 하는 행위,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
2.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몸을 젖혀 눕는 행위,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
3.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비의 휴대 및 촬영

②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관을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를 신속히 제압하여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결국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둘 경우 통합조직으로서의 법원보안관리대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가 유지되어 특정 직렬 중심의 업무 고정, 지휘체계의 혼선, 직렬 간 사무분담의 불균형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경위의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별도 지위와 그 사무분담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은 삭제하고 그 기능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와 분장사무 체계 안으로 흡수 ·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적 통합을 실질화하고, 보직순환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장차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권한을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에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경위가 송달 실시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이후 법원경위 신규 채용이 중단되어 그 인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2019. 7. 1.부터 송달전문집행관 제도 도입과 2019. 10. 11.부터 집행관 통합송달(주간, 야간, 휴일송달을 각 1회씩)을 민사본안 사건으로 확대 시행[202](법원경위 송달은 제외)하여 집행관 송달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원경위 송달은 자연 감소하게 되었다.

법원경위 송달은 집행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며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우편에 의한 송달불능 시 집행관의 송달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집행관 송달 실시에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법원경위 송달방법을 선택하여 법원경위 송달촉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경위는 어디까지나 집행관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보충적인 송달실시 기관이라는 점은 법률문언상 명백하다.[203]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202)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2019. 9. 16.),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247&gubun=3 (2026. 3. 4. 최종확인).

203) 전문식,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32, 276-277.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송달실시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송달보고서 이외 추가적인 송달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속해 있는 법원경위를 이용하는 경우'일 것이다.[204] 이처럼 법원경위 송달은 재판부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속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인 송달 실시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 재판부 일원으로 법정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송달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법원보안관리대의 통합운영이라는 연속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실무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보안관리대의 주된 임무는 법정 및 청사보안과 질서유지임을 고려할 때 송달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송달업무는 집행관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205]

(3)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경위의 법원보안관리대로의 기능적 통합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Y(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가 하나의 직렬로 통합되면 사무분담과 지휘체계가 명확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직렬을 통합하여 법정보안과 청사보안을 함께 담당한다면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청사보안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직렬 통합 시에 직렬 간 이해관계가 달라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배려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T(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다원화된 체제하에서는 서로 이질감이 있어 보인다. 직렬을 통합하여 일원화한다면

204) 전문식,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32-33.
205) 전문식,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277.

거리감도 없어지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서로 유대관계가 깊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진 각자의 업무를 상호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통합 초기에는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 당장 인위적으로 직렬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법원경위, 보안직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와 그 자리에 보안관리 직렬이 충원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S(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지원의 경우에는 소수인원이라 법정보안과 청사보안을 구분하여 나누지 않고 법원경위가 팀장이 되어 청사방호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만약, 법원경위와 보안관리 직렬을 통합한다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206]

법원조직법에 별도 규정된 법원경위에 대한 법정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삭제하여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원보안관리대에 그 기능을 흡수시켜 통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표 23]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 ④ (생략) 〈신설〉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제64조〈삭제〉

20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35. 일부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형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구속영장 집행보조 업무와 제151조 증인인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감치 재판의 집행업무는 명시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정경위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경위 이외의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법 규정은 법원경위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 법원경위 외에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법 규정이 실무에 맞지 않아 제81조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로, 또한 '법원경위'를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으로, 제151조 제4항의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을 '법원공무원'으로 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207] 여기에 수정안으로 제151조 제4항의 '법원경위'를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법원경위 기능의 법원보안관리대로 흡수 ·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희승 대표발의, 2025. 2. 7.) 의안번호: 22079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표 24]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 ----------. ② ----------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 교도관 ·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략)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 ⑤ ~ ⑧ (현행과 같음)

2. 직렬 간 정원 통합

가. 직렬 통합[208]

법원보안관리대 직렬 통합 정책은 2005년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일관되게

20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35-37.

추진되어 왔으며 2007년 이후 법원경위, 보안직, 청원경찰의 신규 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경위, 보안직, 청원경찰이 정년퇴직하여 생기는 상위직급(5급, 6급) 정원을 보안관리직 정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직렬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보안관리대 구성원의 80%를 차지하는 보안관리직이 8급, 9급에 머물러 있으므로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 직렬 통합의 핵심은 보안관리직 7급 이상의 정원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제2장, 제2절, Ⅰ. 1. 인적 구성편의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급별 인원 현황표'(2025. 7. 1.자)를 보면 전체 정원 988명 대비 현원은 1,061명으로 정원(－73)이 부족한 상태였으나,[209] 2026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처와 증원(＋73) 협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 규칙 제3233호, 2025. 12. 24. 공포)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였다.

단순 수치상으로 법원경위와 보안직의 현원이 0명인 각 9급 정원(7명, 95명) 및 8급 정원(144명, 2명)을 합산한 현원(－248명)을 보안관리 8급 및 9급 정원 608명(89＋519)대비 현원 856명(294＋363＋3＋196)의 초과분(＋248명)에 충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법원경위 직렬의 정원은 232명이지만 법원경비관리대 신설 이후 채용을 중단하여 자연감소 및 8급, 9급의 상위직급 승진으로 현원 0명, 그 외 7급 이상으로 현원은 116명에 이르고, 보안직의 정원은 98명으로 자연감소 및 8급, 9급의 상위 직급 승진으로 현원 0명, 그 외 7급 이상으로 현원은 55명에 이르고 있다.

향후 기획예산처와 직제협의 과정에서 자연 감소되는 법원경위직 7급 정원을 보안관리직 7급 정원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7급 인력증원을 촉진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 보안인력의 증원 · 감원 검토를 위한 청사 구조별 적정인원의 산출과 팀장 등의 역할에 따른 직급체계의 점검 및 산출을 위한 '법원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연구용역을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여 2025. 상반기 완료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직심의관실 및 인력담당부서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정보안과 청사보안의 근무형태를 반영한 효율적 인력배치와 법원 청사별 구조적 적정인원의 산출 및 팀장과 팀원의 역할 등에 따른

20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33호, 2025. 12. 24. 공포)에 의하면 2026. 1. 1.자로 보안관리주사보(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정원을 29명, 보안관리서기(8급) 정원을 32명, 보안관리서기(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정원을 77명, 보안관리서기보(9급) 정원을 161명,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정원을 392명으로 2026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처와 증원(+73)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음.

직급체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정원과 각급 기관별 정원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직제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인터뷰 내용

아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렬 간 정원 통합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P(경위주사보: 경력 10년 이상)

- 법원경위와 보안관리직렬이 통합된다면 현재의 법원경위 직렬의 7급 정원에 보안관리서기들이 그대로 승진하면서 승계되어 선후배라는 동질성과 소속감이 더 생길 것으로 본다.
-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특성에서 필요한 상·하 관계의 장점을 잘 살려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직렬의 상위직급 정원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또한 법원경위 직렬의 서기관 정원을 확보하여 법원보안관리대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K(경위주사: 경력 10년 이상)

- 현재 보안관리직렬 중 보안관리서기보, 보안관리서기, 일반임기제가 전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기수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경위, 구)방호직,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하나의 직렬로 자연 통합 될 것으로 본다.
- 반면 법원경위, 구)방호직, 청원경찰은 소수 인원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직렬 간 갈등 상황으로 갈 수 있으므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배려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G(경위주사보: 경력 10년 이상)

- 보안관리 직렬의 많은 후배들이 별정직이나 임기제를 거치며 나름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으나 7급 정원이 부족하여 승진이 늦어지며 8급서기, 9급서기보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안관리 직렬의 7급 정원을 많이 확보

하여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 현재의 법원경위와 구)방호원은 순차적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다. 직급 간 정원 조정

각 직렬 간 정원통합 시 고려할 중요한 요소는 직급 간 정원 조정이다. [표1]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급별 인원현황표 하단의 총계표를 보면 9급 정원은 661명, 8급 정원은 235명, 7급 정원은 45명, 6급 정원은 40명이다. 7급 정원(전체 4.3%)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법원경위가 34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7급 보안관리 직렬 정원은 10명이었으나, 2026. 1. 1.자로 일반승진 발령(전국 29명)[210]이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법원행정처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2025년 직제협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경위와 보안직 구성원들의 근속승진에 따라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 초과한 현원이 같은 직렬의 하위직급 정원에 흡수되어 전체 정원이 유지되므로 직제상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조직 차원의 검토 및 직제협의 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승진 정원 부분이다.[211]

법원경위와 보안직 구성원들의 자연 퇴직에 따라 발생되는 상위직급(5급, 6급) 정원 초과분을 보안관리직의 정원으로 순차 전환함으로써 직렬별 정원 통합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보안관리 실무현장에서는 보안관리직의 7급 승진을 촉진하여 팀장업무를 수행하고 근무동기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안관리직 7급의 일반 승진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12]

---

210) 인용한 정원표 상 정원 10명은 2025. 7. 1.자 기준이었으나, 2026. 1. 1.자로 일반승진(보안관리서기에서 보안관리주사보) 발령이 있었음.

21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39.

21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37-39 일부 재구성.

II.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의 체계화

1. 지휘계통의 체계화[213]

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 필요성

현행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4조 제4항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 미설치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겸임 구조는 한편으로 총무과장이 재판업무 지원과 청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안업무를 인력 · 예산 · 시설관리 등 행정지원 체계와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예컨대 출입통제 동선 조정, 시설 · 장비 조달 및 유지보수, 근무편성의 조정, 유관부서(시설 · 전산 · 민원 등)와의 협업 등은 총무과장 권한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업무로서 겸임 체계는 보안 관련 의사결정이 기관 운영 의사결정과 분리되지 않고 즉시 반영 ·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총무과장은 재판업무 지원 및 기관의 다수 행정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특성상 법정 및 청사보안업무까지 상시적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기 쉽다.

보안업무는 출입검색, 현장제지, 상황실 관제, 비상대응 등 즉응성을 요구하는 현장 집행 성격이 강하고, 사건 · 사고 발생 시 지휘 · 보고, 사후 조치까지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전담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현장 지휘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겸임 체계의 장점을 살리되 일정 규모 이상 기관(특히 종합청사 법원)부터는 보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독립 직제(서기관급 등)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전문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임제 법원보안관리대장 및 부대장 설치

(1) 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총무과장 겸임이 아닌 전임제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서기

21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41-42 일부 재구성.

관급을, 또한 법정보안담당관으로 경위사무관을, 청사보안담당관 겸임 법원보안관리대의 부대장으로 법원사무관을 각 보임하여 법정보안과 청사보안 업무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를 확대하여 현재 여러 법원이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전국 종합청사 11개 법원(기관) 중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청사 관리를 주관하는 종합청사 법원[**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법 · 서울회생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전가정법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서부지원 · **대구가정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각 굵은 글씨는 관리 주관법원)]에 대하여 정원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총무과장 겸임이 아닌 별도의 서기관급으로 전임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만, 서기관급 법원보안관리대장을 증원하는 것은 기획예산처[214]와 직제협의 단계에서 해당 직급의 정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무관급으로 전임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 시범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독립청사

종합청사뿐만 아니라 독립청사를 둔 10개의 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과 사무국 설치 지원 10개(고양지원, 남양주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천안지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순천지원)에도 그 규모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임 법원보안관리대장 또는 부대장의 보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합청사와 비교하여 관련된 업무량과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무관급으로 보임하여 시범 운영 후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14) 정부조직법 개편(2025. 10. 1.)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앞으로 직제협의는 기획예산처로 전환하게 되었음.

다. 인터뷰 내용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 및 부대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무자들을 인터뷰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장 G(법원서기관, ○○지방법원 근무)

-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독립직제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위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만 법원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인원의 증원이 문제이다.
- 장기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정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력을 살리고 순차적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보안관리대장으로 보임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원보안관리대원 P(경위주사: 경력 10년 이상)

- 법원보안관리대장을 전임관리자로 변경하여 법원보안관리대 조직이 일관성 ·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구나 보안관리 직렬은 그 특성상 운동, 동문, 군대 선 · 후배 등으로 연결되면 파벌 생성 등으로 조직 내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법원보안관리대장 W(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보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선임 보안관리대원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각 법원별로 인원 현황이 다르므로 사정에 따라 행정관 또는 사무관급의 부대장을 보임한다면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각급 법원별 보안관리대장을 보안업무에만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겸임이 아닌 독립직제 보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215)]

법원보안관리대장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원서기관 전임제와 부

21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44 일부 재구성.

대장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보안관리대 규칙과 운영예규 개정(안)을 제안한다.

[표 25]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조직)** ① 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③ (생략)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조직)** ① ---------- 부대장, 담당관, 팀장, 조장 ----------. ②, ③ (현행과 같음)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4조(조직)** ① ~ ③ (생략) ④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지휘체계)** ① (생략) 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보안관리대를 지휘한다. 〈신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4조(조직)** (현행과 같음) ④ ----------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규모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업무를 보좌할 법원보안관리대 부대장을 둘 수 있다. 부대장은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보)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지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보안관리대 부대장은 보안관리대의 지휘에 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보좌한다.

2. 업무관리의 체계화

가. 의미

현재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관리 · 감독 및 정책수립 기능은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소속의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체계는 법원보안관리 업무가 안전관리관의 재난 · 안전 관리 및 감독 기능과 함께 운영된다는 점에서 청사 내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조정 ·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비상계획 · 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와 보안관리 업무가 조직적으로 연계될 경우 사건 ·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 관제 → 현장대응 → 사후 조치를 일관되게 운용하고 관련 지침 · 교육 · 점검을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순기능이 인정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관 소속의 대법원보안관리대가 전국 단위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는 각급 법원의 보안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예컨대 '안전한 법원을 위한 TFT' 등에서 검토된 중 · 장기 대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 유지할 책임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현행 시스템은 중앙에서 보안강화 과제를 관리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보안관리 업무가 현장 집행기능(보안검색, 출입통제, 법정질서 유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재난 · 안전의 관리 ·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관 체계 안에서 보안관리의 정책수립과 집행까지 포괄하는 방식은 업무의 전문성, 신속성,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장 집행 기능을 포함하는 보안관리 업무가 동일 체계 내에서 운영될 경우 '자기 점검'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는바, 법원보안관리대의 보안강화와 조직 관리의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할지 또는 안전관리실에서 보안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지에 대한 비교 ·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인터뷰 내용

비상대비 업무와 청사보안 업무의 분리 여부에 대하여 실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장 M(법원서기관, ○○지방법원 근무)
• 행정부는 전시비상대비 업무와 정부청사경비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도 비상대비 사무는 비상계획관이, 보안업무는 경호기획관으로 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법원도 안전관리관의 비상계획업무와 법원보안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 W(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법원행정처의 법원보안관리대 업무를 안전관리실에서 분리하여 보안관리과 또는 보안관리국으로 신설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업무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 개선 방안[216]

(1) 대법원보안관리대 업무의 내부적 이원화

현재 대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청사의 보안업무 외에도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관리 · 감독 및 정책수립, 집행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대법원보안관리대의 내부 인력확충 및 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보안관리대'라는 명칭의 현장 집행기능 부서에서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관리와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체계상 맞는지 의문이 든다.

(2) 안전관리관 소속의 보안지원과 신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사무(별표1의9) 중 제4호에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 중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보안지원과를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보안관리대의 관리 · 감독 및 정책수립, 집행업무를 보안지원과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21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내부보고서 (2025), 45-46 일부 재구성(1)안~(3)안.

신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지원과는 재난 · 안전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관 소속이고 현장 집행기능의 보안관리 업무까지 담당함으로써 자기 점검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

(3) 안전관리관 이외 실 · 국에 보안지원담당관 신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관이 아닌 다른 실 · 국의 분장사무로 변경하고 해당 실 · 국에 보안지원담당관을 두는 안이다. 유관 업무 관련 실 · 국으로는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관리실 정도가 될 수 있다. 보안지원담당관의 고유 업무로서 법원보안관리대 관리 감독과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법원보안관리대 조직도 함께 관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 감독 기능을 하는 안전관리관 소속으로부터 현장 집행기능인 보안관리 업무가 분리됨으로써 자체 점검과 집행기능의 동일 부서 집중이라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4) 보안관리국 설치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업무관리 · 감독 기능과 정책수립 기능을 가진 '법원보안관리국'을 법원행정처장 밑에 신설하고, 보안관리국장은 법원부이사관급으로 보하며 그 밑에 법정보안과, 청사보안과, 운영지원과를 두어 대법원보안관리대 및 전국 법원의 보안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는 안이다.[217] 다음은 각 과별 분장사무 내용이다.

(가) 법정보안과

①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법정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사건 특성별 위험도 평가 및 중요 고위험 재판 보안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정 출입 및 보안검색 기준 · 절차의 수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법정 내 위해행위(난동, 위협, 폭행 등) 대응 매뉴얼의 수립 및 교육 · 훈련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217) 최정명 · 장인호, "현행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보안국 설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2021), 234 일부 재구성.

⑤ 법정보안 관련 사건 · 사고 보고체계 운영,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청사보안과

① 법원청사 출입통제, 경비, 순찰 등 청사보안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② 방문자 · 물품 보안검색 체계 및 금지 · 제한물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③ 청사보안 관련 비상상황 대응기준(대피, 통제,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④ 청사보안시설 · 장비(출입통제, 경보, 검색장비, CCTV 등)의 도입 · 개선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⑤ 전국 법원 청사보안점검 · 진단 및 취약요인 개선 총괄

(다) 운영지원과

① 전국 법원 보안업무의 운영(조직, 정원, 인력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보안업무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장비 및 제복, 보호장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③ 보안업무 관련 규정, 지침 및 운영 등 절차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보안업무 보고, 실태조사, 통계 작성,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
⑤ 보안업무 관련 대외 협력(경찰 · 소방 등 유관 기관),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 (3)안의 장점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직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원보안관리대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한다.

[표 2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② ~ ⑬ (생략)

⑭ 〈신설〉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 · 과와 그 분장사무표

<table>
<tr><th>국명</th><th>심의관</th><th>과명</th><th>분장사무</th></tr>
<tr><td rowspan="3">사법등기국</td><td>사법등기</td><td></td><td>1.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 ·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사항
4. 등기전산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각 등기소 등기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각 등기소 등기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td></tr>
<tr><td></td><td>가족관계등록</td><td>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3.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4.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td></tr>
<tr><td></td><td>부동산등기</td><td>1. 부동산등기(사법등기심의관의 상업등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td></tr>
</table>

</td><td>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

----, 법원보안관리국을 둔다.

②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원보안관리국장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그 밑에 법정보안과장, 청사보안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둔다. 법원보안관리국은 대법원보안관리대 및 전국 법원의 보안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 · 과와 그 분장사무표

<table>
<tr><th>국명</th><th>심의관</th><th>과명</th><th>분장사무</th></tr>
<tr><td rowspan="3">사법등기국</td><td>사법등기</td><td></td><td>1. 등기 · 가족관계등록 · 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 ·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사항
4. 등기전산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각 등기소 등기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각 등기소 등기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td></tr>
<tr><td></td><td>가족관계등록</td><td>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3.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4.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td></tr>
<tr><td></td><td>부동산등기</td><td>1. 부동산등기(사법등기심의관의 상업등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는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는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정보시스템운영	1.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 ·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의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등기 · 가족관계등록관련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등기 ·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한 업무지원			정보시스템운영	1.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 ·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의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등기 · 가족관계등록관련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등기 ·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한 업무지원
재판사무국		종합민원	1.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질의회신 및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사건 기록의 열람 · 등사 접수 및 등사 교부 4. 재판사무국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판사무국		종합민원	1.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질의회신 및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사건 기록의 열람 · 등사 접수 및 등사 교부 4. 재판사무국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사	1. 민사, 행정, 가사, 특허 기타 사건(다음부터 '민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사 등 사건의 심판 참여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3. 민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등 포함)			민사	1. 민사, 행정, 가사, 특허 기타 사건(다음부터 '민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사 등 사건의 심판 참여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3. 민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등 포함)
		형사	1.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 사건(다음부터'형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 등 사건 심판의 참여 · 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			형사	1.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 사건(다음부터'형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 등 사건 심판의 참여 · 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

현 행	개 정 안
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포함)	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포함)
〈신설〉	법원보안관리국 / 법정보안과 / 1.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법정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건 특성별 위험도 평가 및 중요 고위험 재판 보안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정 출입 및 보안검색 기준 · 절차의 수립 개선에 관한 사항 4. 법정 내 위해 행위(난동, 위협, 폭행 등) 대응매뉴얼의 수립 및 교육 · 훈련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5. 법정보안 관련사고 · 사건 보고체계 운영,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원보안관리국 / 청사보안과 / 1. 법원청사 출입통제, 경비, 순찰 등 청사보안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방문자 · 물품 보안검색 체계 및 금지 · 제한물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청사보안 관련 비상상황 대응기준(대피, 통제,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청사보안시설 · 장비(출입통제, 경보, 검색장비, CCTV 등)의 도입 · 개선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전국 법원 청사 보안점검 · 진단 및 취약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법원보안관리국 / 운영지원과 / 1. 전국 법원 보안업무 운영(조직 · 정원 ·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장비 및 제복, 보호장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관련 규정, 지침 및 운영 등 절차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보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관련 대외협력(경찰 · 소방 등 유관기관),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table>
<tr><th>명칭</th><th>분장사무</th></tr>
<tr><td>안전관리관</td><td>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td></tr>
</table></td><td>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table>
<tr><th>명칭</th><th>분장사무</th></tr>
<tr><td>안전관리관</td><td>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삭제〉</td></tr>
</table></td></tr>
</table>

3. 소결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법원보안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업무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책임부서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의 관리 · 감독 기능과 현장 집행기능으로서의 보안관리 업무가 동일한 체계 내에 함께 위치하는 구조는, 보안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과 평가를 어렵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축적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전국 법원보안관리대의 관리 · 감독과 정책수립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보안관리국을 법원행정처에 설치하여 지휘체계와 업무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안관리국 설치는 직제 개편과 정원 조정, 예산 확보 등 여러 제도적 전제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재의 인력 여건과 조직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 단위 조직을 즉시 설치하는 방안은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보안관리국 설치를 중 · 장기적 개편 방향으로 설정하되, 우선적으로는 안전관리관 이외의 실 · 국에 보안지원담당관을 신설하여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사무를 분리 ·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은 현행 조직체계의 급격한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안관리 업무를 재난 · 안전관리 중심의 기존 체계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보안지원담당관 신설을 통하여 우선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한 관리 · 감독,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직 운영 성과와 필요인력을 축적한 후 보안관리국 설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 제도개선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결국 조직의 지휘계통 및 업무관리 체계의 개선은 일시에 완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보안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보안지원담당관 신설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안관리국 설치를 통하여 전국 법원의 보안정책과 현장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제3절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요건 마련

I.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218]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사용장비 및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등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최근 교정시설장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법정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재판에 출정하기 전 수형자가 잠시 대기하거나 재판을 마치고 교정시설로 복귀하기 전 머무는 곳으로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히고 곧바로 법원 외부로 연결된 승강기가 있거나 외부인에게 공개된 법정과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형자가 도주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 용이하고, 교정시설에 비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하여 도주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면서 외부로의

218) 최정명 · 장인호,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0호 (2022), 333-340 발췌 및 일부 재구성.

노출 정도가 크지 않아 법익 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21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신구속업무와 관련한 피고인의 법정구속 및 감치재판의 집행과 호송 과정 등에서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담은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구조를 기반으로 법원 청사관리권의 장소적 범위의 확장, 직무범위의 정비 및 추가, 보안장비 사용과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10조[220]의 비례원칙 및 그 파생원칙인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과 법원 보안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규정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인터뷰 내용

다음은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법원보안관리 업무담당 실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B(법원경위: 경력 10년 이상)
•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원 내 질서유지는 경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이 세부 대응지침을 법률 또는 규칙으로 마련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19) 형의 집행중인 수형자로서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에서 유치되어 있는 동안 청구인에 대해 교도관이 양손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히고, 법원 외부나 법정과 연결된 구조로 되는 반면, 법정 대기실을 담당하는 교정 인원은 소수에 그쳐 교정시설에 비해 구금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 사이의 난동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갑은 청구인의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면서 외부로의 노출 정도 또한 크지 않은 보호장비에 해당하고, 여러 명의 교도관을 보충하여 계호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쇠창살 격리시설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보호장비의 사용행위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23. 6. 29. 2018헌마1215 결정).

220)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정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법원보안관리대원 A(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유형력 행사 기준을 추상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구체적 요건과 단계별 절차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적극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D(경위주사보: 경력 15년 이상)
• 공통된 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

법원보안관리대장 Q(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청사 밖으로 퇴정 조치는 대상자의 화가 진정될 때까지 설득하면서 지켜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물리력으로 대상자를 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장 R(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현재 경찰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상황에 따른 신체적 유형력 행사기준이 명확하나 법원보안관리대는 상황에 따른 명확한 유형력 행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법원도 그러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 S(법원서기관, ○○지원 근무)
• 법정 내 감치집행이나 현행범 체포 시 도주방지 또는 안전하고 신속한 인신구속사무처리를 위하여 경찰장비 중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

3. 규정 사항

가. 청사관리권의 장소적 범위 확장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의 범위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청사방어 및 경비권한 행사의 장소적 한계는 법원청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시작된 불법집회 및 시위가 확대되어 청사난입으로 이어지는 경우, 청사보안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사방어권의 장소적 한계를 청사경비 및 방호와 관련된 법원 인근으로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1조는 법원청사와 법정에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가장 상위의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가 '재판업무 보장을 위한 보안경찰적 작용'임을 선언하는 기능을 가진다.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관련한 인근을 포함하여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법관, 법원직원, 법원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정의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규정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 중 하나로 현행 법원보안관리대 관련 규정이 권한의 내용과 장비의 범주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제2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법정", "보안장비", "위해성 보안장비", "보호장비", "현장책임자" 등을 정의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보안장비와 보호장비를 구별한 점이다. 보안장비는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통신기기, 채증용 영상기록장치 등 직무수행 장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위해성 보안장비는 그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를 따로 떼어 강화된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 삼단봉처럼 직접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제지, 후송 · 보호에 사용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장비 사용의 법적 성격과 통제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또한 "현장책임자"를 별도로 정의한 것은 위해성 장비 사용과 같은 고위험 조치에 대해 일선 대원 개인의 자의가 아니라 지휘책임이 수반되는 결정구조를 두겠다는 취지를 반영한다.

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법원청사(부속시설 및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다)와 법정에서의 직무수행에 적용하며, 법원 청사 경비 ·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기본적 장소 범위를 정하고, 세부 범위를 규칙에 맡기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각급 법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의 탄력성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라. 제4조 권한행사의 기본원칙

제4조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권한행사에 관한 헌법적 통제원리를 선언하는 핵심규정이다. 제1항은 권한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대상자의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조치의 필요성 · 상당성 · 비례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법원보안관리 업무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인 이상 그 근거뿐 아니라 한계 또한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 제4조는 바로 그 한계를 총칙 차원에서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후 제6조 이하에서 신체적 유형력 행사, 위해성 보안장비 사용,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모두 이 기본원칙의 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조항이 아니라 개별 조문 해석의 상위기준으로 기능한다.

마. 직무 범위의 정비 및 추가

법원조직법 제64조에 별도로 규정된 법원경위 업무를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에 흡수하고, 형사소송법상 법원경위 업무로 명시된 제81조 제2항 구속영장 집행 보조 업무, 제151조 제4항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감치 재판에서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의 집행업무 등 인신구속 집행업무를 포함한 송달업무 등 재판기능 지원 보조업무를 법정경위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범위로 포섭하여 그동안 각 구성원의 직렬별 혼재하던 직무권한을 정비하고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73호, 시행 2008. 1. 18.)에 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 증인 등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동안 법원보안관리대가 수행해 온 경호업무를 법률에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신

변보호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형력 행사 및 경찰관 파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 **제5조 직무의 범위**

제5조(직무의 범위)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2. 법원 청사보안과 관련된 인근을 포함한 법원청사 내 범죄의 예방 · 제지 및 질서유지
3. 법정 내 재판기능 지원을 위한 보조업무와 질서유지
4. 법관 및 법원직원 등 주요 인사의 경호
5. 증인 및 범죄피해자 등 재판절차와 관련된 자에 대한 신변보호
6. 법원과 법관에 대한 범죄예방과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 및 정보공유
7. 법원 청사 경비와 시설방호 및 안전관리와 방재업무
8. 그 밖의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의 집행

바. 보안장비의 사용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장비로는 경비봉, 가스분사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하고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많아 보안장비 수준의 강도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기충격기나 가스분사기는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수단으로써 그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유형력의 행사 및 보안장비의 사용 시 대상자에게 사전 경고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험발생을 억제하는 등 위해 감소 노력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경찰청의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기존의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서 나아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과, 대상자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의 원칙을 추가하여 도입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보안장비와 보안장구 등의 사용으로 유형력 행사의 남용으로 인

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집행법 제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 **제6조 보안장비의 사용**

제6조(보안장비의 사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 각 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장비(이하, 위해성 보안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 무기 소지자의 범죄 제지
2. 체포 및 구속영장과 감치의 집행과정에서 대상자의 도주 방지
3.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의 발생 억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위해성 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안전교육 · 안전검사의 기준,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보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사. 보호장비의 사용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는 경우 법정 내 교도관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집행 시 피고인의 도주 방지, 법원청사 내 현행범 체포 시 도주 방지, 피감치인의 보호 및 구금시설로 후송 시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의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1215 결정에서 법원과 법정대기실이 교정시설에 비하여 구금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갑은 대상자의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

면서 외부로의 노출 정도 또한 크지 않은 보호장비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의 제지 또는 체포 및 도주 방지,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의 사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제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7조(보호장비의 사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호장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4.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 또는 피감치인의 보호 및 구금시설 후송

아. 직무질문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는 법원보안관리대가 법원청사 내에서 일정한 위해상황 등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 및 경비봉 ·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써 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직무질문에 관한 법률적 명문 규정이 없다.

직무질문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적 권한을 배경으로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그 허용 여부와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질문권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현장대원별로 판단기준이 달라 자의적 집행 또는 소극적 대응이 병존할 우려가 있다.

청사보안과 법정질서 유지의 특성상 위해를 현실화하기 이전 단계에서 출입 목적의 확인, 위험징후 발견, 출입절차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흉기 소지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적극적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한 직무질문의 요건, 절차,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무질문은 신체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이 있으므로 요건(상당한 이유), 방법(최소 침해), 절차(신분, 목적 고지), 시간제한, 임의성 보장을 법률로 구체화해야 분쟁(민원, 소송, 인권침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질문에 관한 명문 규정은 재량의 여지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 최소침해, 목적의 고지, 임의성 보장, 시간적 한계 등 재량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객관화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나아가 이는 유형력 행사나 보안장비 사용에 앞서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덜 침해적인 선행수단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 객관적 · 합리적 기준, 필요 최소한 범위,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 등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 왔다.[221] 다만, 직무질문의 장소와 목적을 법원청사 영역으로, 대상 요건을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의 위험유형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 **제8조 직무질문**

제8조(직무질문)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그 부속시설 및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법원청사 및 법정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나 그 밖에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색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질문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2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에 관한 판시사항.

4. 제정안 제안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제안한다.

[표 27]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관련한 인근을 포함하여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법관, 법원직원, 법원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청사”란 법원이 사용하는 청사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다.
2. “법정”이란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절차의 질서유지를 필요로 하는 법원 내 공간을 말한다.
3. “보안장비”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로서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통신기기, 채증용 영상기록장치 등을 말한다.
4. “위해성 보안장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장비를 말한다.
5. “보호장비”[222]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제지, 구금시설 후송 및 보호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삼단봉을 말한다.
6. “현장책임자”란 보안업무 수행 현장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지휘 · 감독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법원청사(부속시설 및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다)와 법정에서의 직무수행에 적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22)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장구’로 표현하고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18헌마1215 결정에서는 수갑 등 계호장비를 ‘보호장비’로 정의하고 있음.

제4조(권한행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권한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직무수행 시 대상자의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조치의 필요성 · 상당성 및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의 범위

제5조(직무의 범위)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2. 법원 청사보안과 관련된 인근을 포함한 법원청사 내 범죄의 예방 · 제지 및 질서유지
3. 법정 내 재판기능 지원을 위한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4. 법관 및 법원직원 등 주요 인사의 경호
5. 증인 및 범죄피해자 등 재판절차와 관련된 자에 대한 신변보호
6. 법원과 법관에 대한 범죄예방과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 및 정보 공유
7. 법원 청사 경비와 시설방호 및 안전관리와 방재업무
8. 그 밖에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의 집행

제3장 장비의 사용 등

제6조(보안장비의 사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 각 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해성 보안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한다),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 무기 소지자의 범죄 제지
2. 체포 · 구속영장 및 감치의 집행과정에서 대상자의 도주 방지
3.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⑤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⑥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위해성 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안전교육 · 안전검사의 기준,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보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호장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4.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 또는 피감치인의 보호 및 구금시설 후송

②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 방법 및 사용 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직무질문

제8조(직무질문)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부속시설 및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법원청사 및 법정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나 그 밖에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색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질문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II.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223]

1. 제정 취지

법원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핵심 기관으로서, 법정과 법원청사에서의 질서와 안전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이다. 최근 법원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사건, 사회적 갈등 사안의 증가, 폭언 · 폭행 · 기물 훼손 · 난동 등 위해 행위 양상의 다양화, 흉기 · 위험물 반입 시도 및 돌발 상황의 빈발 등으로 인하여 법정과 청사 내에서 즉시적 위험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기준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 수행은 상황별 재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 · 유사 상황에서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대원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질서유지 수단으로서 감치, 과태료, 형사처벌 등 사후적 제재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즉시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안한 (가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가 법집행으로써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기 위하여 유형력 사용의 기본원칙, 단계별 대응기준, 수단별 사용요건과 한계, 절차, 기록 · 사후점검 체계를 규범화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

가. 제정의 목적

이 규칙은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법관, 법원직원, 재판관계인,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과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판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며, 유형력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인권보장과 법원 보안업무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2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호, 2019. 7. 18. 일부개정) 참조.

나. 제정의 필요성

(1) 현장 위험의 즉시성: 폭력 및 난동, 위험물 반입, 자해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지체 없는 대응이 요구되며 사후 형사적 처벌 중심의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 동일한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을 단계화 · 유형화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명문화: 법원 공간에서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비례성, 법익 최소침해의 원칙, 필요성, 상당성, 차별금지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

(4) 책임성 · 사후통제 강화: 경고, 지시, 통제, 제압 등 조치의 기록 및 보고체계를 규정하여 남용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

다. 기본 방향(핵심 원칙)

(1) 최소필요 원칙: 유형력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사한다.

(2) 비례성 · 단계성 원칙: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수단을 선택 · 강화하고, 과잉대응을 금지한다.

(3) 긴장완화 우선 원칙: 가능한 경우 구두경고, 설득, 거리두기, 동선 분리, 대피 유도 등의 비강제적 수단을 우선한다.

(4) 안전 우선 원칙: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취약자(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및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책임성 · 투명성 원칙: 조치의 근거, 과정,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고, 사후평가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반영한다.

라. 주요 내용

(1) 유형력의 개념 및 적용범위: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의 범위를 설정하고,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위해방지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사

용되는 유형력을 정의하고 적용대상 행위를 표준화한다.

(2) 대응수준의 단계화: 행위의 위험도(예: 언어적 위협 → 물리적 저항 → 폭력 · 흉기 · 집단난동 등)에 따라 대응수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허용되는 대표적인 수단과 금지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한다.

(3) 수단별 사용요건 및 한계 규정: 신체제지, 분리 및 호송, 제압, 보안장비와 보호장비 사용의 수단별 요건과 사용 중지의 기준, 의료조치 및 취약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한다.

(4) 절차 규정: 사전 고지 · 경고 원칙, 지원 요청 및 협업(경찰 · 소방 · 응급의료 등), 주변 대피, 현장 통제, 종료 후 안전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5) 사후관리 규정: 보고서 작성, 증거영상 확보, 부상자 조치, 인권침해 및 과잉대응 사례 등 자체 점검 ·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마.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차별성

행위단계 구분의 형식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양 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외형상 '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과 같은 단계 구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경찰과 동일한 작용목적과 권한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단계의 구분은 경찰제도의 고유한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형력 행사라는 침익적 작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비례성 구조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칙안은 기본원칙으로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객관적 합리성, 인권존중, 차별금지, 대체수단 우선, 사전경고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행위를 5단계로, 대응수준도 5단계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행위단계 구분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체계와 외형상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유사성은 유형력 행사 일반에 공통되는 비례성 · 최소침해 원칙의 구조적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지 법원보안관리대에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는 경찰식 권한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정된 유형력 행사

를 '위해 정도에 상응하는 최소 필요한 수준'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는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갖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를 그 목적에 맞게 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표준화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제정안 제안(1안) –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이상의 제정 취지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한다.

[표 28]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1안)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1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칭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정안에 따른 유형력 사용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유형력 사용의 정도 및 개별 유형력 수단의 사용 한계와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법관 · 법원공무원, 법원 방문자 및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유형력"이란, 법원의 청사경비 · 보안과 관련된 법원인근을 포함한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범인 체포 또는 도주방지, 사람의 생명 ·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청사 경비 ·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경찰권 및 청사관리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신체적 · 도구적 접촉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에서 "장비"란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유형력 수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원청사(부속시설 및 출입통제구역 포함)
2. 법정 및 법정과 직접 연결된 구역
3.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제4조)

제2장 법원청사 경비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의 범위

제4조(인근의 범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법원청사 경비 ·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인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청사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224] 이내의 공개공지, 보도, 도로, 광장, 완충녹지 등 통행 및 대기 공간
2. 법원 전용 또는 법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진출입로
3. 청사 정문 · 후문, 민원동 출입구 등 주요 출입동선 및 대기행렬이 형성되는 구역
4. 집회 · 시위, 충돌 우려 상황에서 청사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질서유지 · 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역
5. 그 밖에 법원장이 청사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

제5조(인근 범위의 지정 · 고지)

법원장은 제4조 제4호 및 제5호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표지판 · 안내문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제3장 유형력 행사의 기본원칙 및 일반 유의사항

제6조(유형력 행사의 기본원칙)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유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해 행위의 종류
2. 피해의 경중
3. 위해의 급박성
4. 저항의 강약
5. 대상자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수

2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제11조 제2호 가.항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7.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8. 도주 여부
9. 현장 주변의 상황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 ·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형력을 높이거나 낮추어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낮추어 보다 덜 위험한 유형력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유형력 사용 시 일반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이 인정한 유형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유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를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대상자 행위 단계 및 대응 수준

제8조(대상자 행위 단계의 구분)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행위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순응
2. 소극적 저항
3. 적극적 저항
4. 폭력적 공격
5. 치명적 공격

제9조(순응)

“순응”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도 순응으로 본다.

제10조(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지시 또는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이지만,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해당한다.

1. 정당한 이동 명령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행위
2.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티며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행위

제11조(적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체포 · 호송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적극적 저항에 해당한다.

1. 체포 · 호송을 시도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2. 팔을 잡으려는 손을 뿌리치거나 밀고 잡아끄는 행위
3. 침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

제12조(폭력적 공격)

"폭력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상태는 폭력적 공격에 해당한다.

1.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2. 주먹 · 발 등을 사용하여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3. 강한 힘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상태

제13조(치명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1. 총기류(공기총 · 엽총 · 사제권총 등), 흉기(칼 · 도끼 · 낫 등), 둔기(망치 ·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2.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4조(대응 수준의 구분)

대상자 행위에 따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대응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협조적 통제
2. 접촉 통제

3. 저위험 유형력
4. 중위험 유형력
5. 고위험 유형력

제15조(협조적 통제)

"협조적 통제"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수반하는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현장 임장
2. 언어적 통제
3.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4. 안내 ·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유형력

제16조(접촉 통제)

"접촉 통제"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청사경비 · 법정보안 목적 달성을 강제하되,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신체 일부 잡기 · 밀기 · 잡아끌기, 쥐기 · 누르기 · 비틀기
2. 삼단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기

제17조(저위험 유형력)

"저위험 유형력"이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관절을 꺾는 방법, 팔 ·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2. 분사기 사용(다른 저위험 유형력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대상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중위험 유형력)

"중위험 유형력"이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2. 삼단봉으로 중요 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제19조(고위험 유형력)

① “고위험 유형력”이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력을 말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치명적 공격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유형력을 우선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유형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전기충격기 사용
2. 삼단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하는 행위,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

제5장 개별 유형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제1절 언어적 통제

제20조(정의)

“언어적 통제”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합법적인 명령을 발하기 위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대화, 설득, 지시, 경고 등을 말하며, 대상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포함한다. 언어적 통제는 대상자의 모든 행위 유형에서 행할 수 있다.

제21조(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직접적인 유형력 사용에 앞서 언어적 통제를 통하여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언어적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시 또는 경고에 따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돌발적 위해 또는 도주에 대비하여 다른 유형력 사용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필요하게 대상자를 자극하여 위해로 이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신체적 유형력

제22조(정의)

“신체적 유형력”이란 장비 또는 보호장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 자신의

신체, 체중 및 근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3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순응: 협조적 통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아니하고 잡거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지 아니하고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② (소극적 저항: 접촉 통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대상자가 물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쥐거나 누르거나 비틀어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③ (적극적 저항: 저위험 유형력)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관절을 꺾는 방법, 팔 ·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폭력적 공격: 중위험 유형력)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가격함으로써 제압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에는 체포를 위하여 중위험 유형력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치명적 공격: 고위험 유형력) 신체적 유형력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수갑

제24조(정의)

“수갑”이란 대상자의 동작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쪽 손목에 걸쳐 채우는 금속 재질의 장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제25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언행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수갑을 착용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팔짱을 끼고 동행하는 등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움직임으로 수갑이 조여지거나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

방하기 위하여 수갑의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항거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상자의 장애, 질병 또는 신체상태로 인하여 수갑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 재착용, 한손 수갑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삼단봉

제26조(정의)

"삼단봉"이란 강화 플라스틱,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원통형 막대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제27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격리도구로서 사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삼단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② (중위험 유형력으로서 사용)

1.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의 신체를 삼단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2.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현행범 또는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하여 삼단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유형력으로서 사용) 삼단봉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단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제5절 분사기

제28조(정의)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제29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저위험 유형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대상자의 부상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
2.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되어 있는 경우(다만, 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상자의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상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다만,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유형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사람을 향하여 분사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절 전기충격기

제30조(정의 및 사용방법)

"전기충격기"란 사람의 신체에 전류를 방류하여 대상자 근육의 일시적 마비를 일으킴으로써 대상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기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전기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대상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스턴 방식
2. 대상자 신체에 전극침을 발사하여 사용하는 방식

제31조(사용 한계)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현행범 또는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연성 액체(휘발유, 신나 등), 가스누출 또는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대상자가 계단, 난간 등 높은 곳에 있거나 차량 · 기계류를 운전하는 경우
3. 대상자가 하천, 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어 있는 경우

4.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5.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되어 있는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로 인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대상자의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상자가 가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전기충격기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 부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다만,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유형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입 안에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하여 질식할 수 있는 경우

제32조(사용 시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시작 전에 전기충격기의 배터리 충전 여부 및 전기 불꽃 작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충격기를 뽑아 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전기충격기집에 휴대하여야 한다.

③ 전기충격기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동료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전파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 전기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사람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사거리(3~4.5m)에서 후면부(후두부 제외) 또는 전면부 흉골 이하(안면, 심장, 급소 부위 제외)를 조준하여야 한다. 다만,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로 전극침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체를 조준하여야 한다.

⑥ 전극침 불발, 명중 실패 또는 효과 미발생 시 예상되는 추가 공격에 대비하여 스턴 방식 사용, 삼단봉 사용 준비, 동료의 유형력 사용 태세 완비, 지원 요청 등 대비책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⑦ 전극침이 명중한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즉시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어야 하며, 제1회 사용주기(방아쇠를 1회 당겼을 때 전자파장이 지속되는 시간)가 경과한 후 대상자의 상태와 저항 정도를 확인하여 추가 전기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방아쇠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⑧ 한 명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2대 이상의 전기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거나 스턴 기능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충격기를 전기충격기집에 원위치시킨 후 양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충격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전기충격기 피탈 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6장 유형력 사용 후 조치 및 보고

제33조(부상자 확인 및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대상자에게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유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진 호출, 응급조치, 병원 후송 및 직근상급 감독자 보고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근상급 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으로 진출하여 유형력 사용 및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보고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전기충격기(스턴 방식 포함), 분사기, 중위험 유형력 이상의 삼단봉 또는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히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경위, 사용방식 및 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갑 또는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형력 수단 사용으로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고위험 유형력 사용자에 대한 조치)
①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고위험 유형력을 사용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육체적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조사를 위한 공가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 · 상담기관 연계 등)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직근상급 감독자는 해당 법원보안관리대원을 대리하여 사용보고서를 작성 · 보고할 수 있다.

3. 제정안 제안(2안) – 현행 법원조직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

현실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 직무집행법 제정이 어려운 경우, 예비적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을 근거로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가. 대법원 규칙 제정권

헌법 제108조에서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유형력의 행사 및 보안장비 사용이라는 실체적 권한을 이미 법률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상 권한을 법원에서 어떻게 행사할지 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안 업무처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두고 조직, 복무, 임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그 내용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장소적으로도 법원청사 내 운영기준 중심이어야 한다.

나. 범위

앞서 검토한 직무집행법 제정을 근간으로 하였던 하위 규칙의 내용 중 유형력 행사의 장소적 범위를 법원청사 내로 한정하고, 법원조직법을 기본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며, 직무질문의 삭제, 보안장비 사용의 한정(경비봉, 가스분사기), 보호장구(수갑, 포승)를 삭제하여 법원조직법 제55조의2가 예정한 범위(필요 최소한도, 경고 원칙, 보안장비 사용)내에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다. 주요 내용

기본원칙으로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객관적 합리성, 인권존중, 차별금지, 대체수단 우선, 사전경고 원칙을 준수하고, 대상자의 행위 5단계(순응 ~ 치명적 공격)에 따른 보안관리대의 대응수준을 5단계(협조적 통제 ~ 고위험 유형력)로 체계화하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서 열거한 보안장비의 사용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상의 제정 범위와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을 제안한다.

[표 29]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2안)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유형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2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질서유지와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유형력 및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단계별 기준, 수단별 사용 한계, 보고 및 사후 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유형력”이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청사 및 법정에서 청사경비 · 보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신체적 · 도구적 접촉 및 그에 준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에서 “보안장비”란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경비봉(삼단봉), 가스분사기와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유형력 수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 및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유형력 행사의 기본원칙 및 일반 유의사항

제4조(유형력 행사의 기본원칙)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유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해 행위의 종류
2. 피해의 경중
3. 위해의 급박성

4. 저항의 강약
5. 대상자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수
6.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7.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8. 도주 여부
9. 현장 주변의 상황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 ·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형력을 높이거나 낮추어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낮추어 보다 덜 위험한 유형력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유형력 사용 시 일반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이 인정한 유형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유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를 목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대상자 행위 단계 및 대응 수준

제6조(대상자 행위 단계의 구분)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행위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순응
2. 소극적 저항
3. 적극적 저항
4. 폭력적 공격
5. 치명적 공격

제7조(순응)

"순응"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도 순응으로 본다.

제8조(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지시 또는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이지만,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해당한다.

1. 정당한 이동 명령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행위
2.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티며 움직이지 아니하려는 행위

제9조(적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현행범 체포'(이하 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적극적 저항에 해당한다.

1. 체포를 시도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2. 팔을 잡으려는 손을 뿌리치거나 밀고 잡아끄는 행위
3. 침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

제10조(폭력적 공격)

"폭력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상태는 폭력적 공격에 해당한다.

1.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2. 주먹 · 발 등을 사용하여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3. 강한 힘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상태

제11조(치명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1. 총기류(공기총 · 엽총 · 사제권총 등), 흉기(칼 · 도끼 · 낫 등), 둔기(망치 ·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2.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2조(대응 수준의 구분)

대상자 행위에 따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대응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협조적 통제
2. 접촉 통제
3. 저위험 유형력
4. 중위험 유형력
5. 고위험 유형력

제13조(협조적 통제)

“협조적 통제”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수반하는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현장 임장
2. 언어적 통제
3. 안내 ·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유형력

제14조(접촉 통제)

“접촉 통제”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청사경비 · 법정보안 목적 달성을 강제하되,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신체 일부 잡기 · 밀기 · 잡아끌기, 쥐기 · 누르기 · 비틀기
2. 경비봉(삼단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기

제15조(저위험 유형력)

“저위험 유형력”이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관절을 꺾는 방법, 팔 ·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2. 가스분사기 사용(다른 저위험 유형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대상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중위험 유형력)

“중위험 유형력”이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유형력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2. 경비봉(삼단봉)으로 중요 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제17조(고위험 유형력)

① "고위험 유형력"이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력을 말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치명적 공격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유형력을 우선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유형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스분사기 사용
2. 경비봉(삼단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하는 행위,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

제4장 개별 유형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제1절 언어적 통제

제18조(정의)

"언어적 통제"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대화, 설득, 경고 등을 말하며, 대상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포함한다. 언어적 통제는 대상자의 모든 행위 유형에서 행할 수 있다.

제19조(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직접적인 유형력 사용에 앞서 언어적 통제를 통하여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언어적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대화, 설득, 경고에 따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상자의 돌발적 위해 또는 도주에 대비하여 다른 유형력 사용 태세

를 갖추어야 한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필요하게 대상자를 자극하여 위해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신체적 유형력

제20조(정의)

"신체적 유형력"이란 보안장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 자신의 신체, 체중 및 근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순응: 협조적 통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아니하고 잡거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지 아니하고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② (소극적 저항: 접촉 통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대상자가 물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쥐거나 누르거나 비틀어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③ (적극적 저항: 저위험 유형력)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관절을 꺾는 방법, 팔 ·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폭력적 공격: 중위험 유형력)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가격함으로써 제압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에는 체포를 위하여 중위험 유형력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치명적 공격: 고위험 유형력) 신체적 유형력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경비봉(삼단봉)

제22조(정의)

경비봉(삼단봉)이란 강화 플라스틱,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원통형 막대기로서 법원행

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제23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격리도구로서 사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경비봉(삼단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

② (중위험 유형력으로서 사용)

1.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의 신체를 경비봉(삼단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2.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현행범의 체포를 위하여 경비봉(삼단봉)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유형력으로서 사용) 경비봉(삼단봉)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경비봉(삼단봉)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다.

제4절 가스분사기

제24조(정의)

"가스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급하거나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제25조(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저위험 유형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법원보안관리대원 또는 대상자의 부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
2. 대상자의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다만,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유형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사람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유형력 사용 후 조치 및 보고

제26조(부상자 확인 및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대상자에게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유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진 호출, 응급조치, 병원 후송 및 직근상급 감독자 보고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근상급 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으로 진출하여 유형력 사용 및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보고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가스분사기, 중위험 유형력 이상의 경비봉(삼단봉) 또는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히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형력 수단 사용으로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고위험 유형력 사용자에 대한 조치)
①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고위험 유형력을 사용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육체적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조사를 위한 공가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 · 상담기관 연계 등)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직근 상급 감독자는 해당 법원보안관리대원을 대리하여 사용보고서를 작성 · 보고할 수 있다.

제4절 제복의 개선

I. 고려사항

1. 제복 개선의 판단 기준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개선은 단순한 복제 변경이 아니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수행 여건과 조직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과제이다. 제복은 외형적으로는 법원의 공적 권위와 질서유지 기능을 드러내는 표지이면서 실제로는 보안요원의 장비 휴대, 기동성, 활동성, 안전성, 착용 편의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복 개선 여부와 방향을 판단할 때에는 기능성, 착용감,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능성 측면에서는 제복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요 업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는 청사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법정질서 유지, 상황실 근무, 비상상황 대응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업무는 활동성, 장비 운용방식, 외관상 적절성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예컨대 보안검색 업무는 반복적인 동작과 장시간 서 있는 근무가 수반되므로 신축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소재가 요구되고, 법정근무는 재판의 권위와 질서유지라는 특성상 품위와 단정함을 갖춘 외관이 필요하다. 또한 돌발상황 대응 업무의 경우에는 신속한 이동과 장비 사용의 편의성, 일정 수준의 보호기능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착용감은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복의 재질, 무게, 통풍성, 계절 적합성, 신발의 쿠션감과 활동성 등은 장시간 현장근무의 효율성과 근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청사보안 근무나 출입통제 업무의 경우에는 하복의 통기성과 간편성, 신발의 활동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미성은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제복은 법원 소속 보안요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재판참여자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시각적 요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복은 법원이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품위를 반영함으로써 법정질서 유지와 청사보안의 공적 성격을 외형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제복 개선은 기능성만이 아니라 법원의 이미지와 조직 정체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 인터뷰에서도 현행 제복에 관한 일정한 개선 수요가 확인되었다. 일부 실무자는 제복의 전면 개편보다는 무전기 등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부착·휴대할 수 있는 보조장비의 추가 도입이 실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는 하절기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활동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간소복의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법정근무의 경우에는 현행 복장의 기본적인 형식과 품위를 유지하되, 청사보안 근무에는 보다 활동성 있는 복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제복 재질의 개선, 간편복 지급 및 통일된 디자인 마련 등을 통하여 대원들의 사기와 조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행 제복체계가 일정한 형식성과 상징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근무환경과 업무유형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인터뷰 내용

제복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A(보안관리서기: 경력 10년 이상)

- 제복 자체의 전면 개편보다는, 무전기를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스트랩 등 보조 장착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법원보안관리대원 C(보안관리서기보: 경력 10년 미만)

- 예산상 전체 제복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름 하복에 한하여 활동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소재로 간소복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 법정은 재판의 권위와 분위기를 감안하여 현 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청사보안 근무 시에는 더운 여름철 활동성 있는 간편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장 A(법원서기관, ○○고등법원 근무)

-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복의 재질 개선 및 간편복 지급과 함께 통일된 디자인 마련이 필요하다.

II. 국내 기관별 제복 개선 사례와 시사점

1. 개선 사례

가.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2024년 경찰청은 창설 80주년(2025년)을 앞두고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단장으로 경찰청 차장,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제 종합개선을 위하여 사전연구 목적으로 정책용역을 발주하고, 경찰 내 · 외부 인식 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류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디자인과 소재 개선을 진행하였다.[225)]

나. 소방공무원 제복 재질 개선 연구용역

소방청은 2009년 복제 개선 이후 9년 만에 복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실에 복제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구수행 기관은 복종별로 5가지 디자인을 제시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종별로 선호도가 높은 3가지 디자인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였다. 시제품 품평회와 선호도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방복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226)]

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창설 55주년이 되는 2008년을 맞이하여 해상치안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능성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멋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복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재정 교수)과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선 경찰관, 국내 유명 교수, 디자이너, 섬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직원들의 설문조사 등 대내적인 여론조

225)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2024. 4. 15.),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0415074810624 (2026. 3. 4. 최종확인).

226) 소방방재신문, '논란속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사업' (2018. 3. 26.), https://www.fpn119.co.kr/93898?utm (2026. 3. 4. 최종확인).

사와 평가회의를 거친 후 본청과 일부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착용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227]

2. 시사점

국내 경찰,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의 담당 업무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보안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제복 자체를 법원보안관리대에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그 개선 결과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정의 권위와 법원의 중립성, 민원응대의 공공성, 청사보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장대응 기관과는 상이한 직무환경을 가진다.

그럼에도 위 사례들은 제복 개선의 구체적 내용 자체보다는 그 추진 방식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제복 개선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나 일회적 예산 집행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사용자의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자문, 설문조사, 시제품 제작과 평가, 시범 착용 등 단계적 · 검증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담기구 또는 한시적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선 필요성과 범위, 예산과 시행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내 기관의 사례는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개선에 있어서도 현장 대원의 경험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며, 시제품 검증과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III. 제복 개선의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제복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과 국내 기관별 제복 개선 사례를 종합하면,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행 제복체계는 일정한 형식성과 상징성을 갖추고 있으나 직무별 특성과 근

227)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 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08. 5. 26.), '해양경찰 제복이 새롭게 바뀝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296962&utm (2026. 3. 4. 최종확인).

무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장비 휴대의 비효율, 신발의 활동성 문제, 하절기 간소복의 비통일성 등은 실제 근무여건과 관련된 개선 수요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시점에서 곧바로 제복 전반을 일시에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제복 관련 의견은 주로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개선 요구에 기초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전면적 복제 개편을 즉시 추진하여야 할 정도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법원보안관리대와 관련하여서는 직렬 구조, 지휘 · 감독체계, 유형력 행사기준과 절차 등 보다 구조적인 과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바, 제복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영상 보완적 성격의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추진방향은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하기보다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현행 제복의 문제점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한 후, 실무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부터 순차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단계적 추진 방안

우선 담당부서가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제복의 재질, 기능성, 활동성, 장비 휴대의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과 중 ·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제한된 예산과 행정역량 안에서 실효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선행

기존 제복의 춘추 · 동복, 하복 등 계절별 구성과 현재 계절 조건의 부합 여부, 방염 · 방수 · 신축성 · 통풍성 등 재질의 적절성, 무전기 · 삼단봉 등 보안장비의 휴대 편의성, 법원의 권위와 품위에 부합하는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현재 제복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복은 단순한 피복이 아니라 장시간 현장근무의 피로도, 돌발 상황에서의 기동성, 민원응대 시 신뢰감 형성, 법원 소속 보안요원으로서의 정체성 표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능성과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업무별 조건 및 근무환경 분석

법원보안관리대의 업무는 법정질서 유지, 청사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상황실 근무, 비상상황 대응 등으로 구분되며 각 업무에서 요구되는 활동성 · 기동성 · 외관상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법정근무와 청사보안근무를 동일한 착용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무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발, 하복, 재킷 또는 조끼 등 일부 품목의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색상, 표식, 기본 디자인 요소는 통일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정체성과 대외 인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디자인과 소재의 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제복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보안 · 안전 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장 기능성 측면에서는 장시간 착용에 따른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계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기성 및 보온성을 고려하며, 장비 착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하복, 간편복, 장비휴대 조끼, 기능성 신발 등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반면 전면적인 복제 개편은 그 필요성과 범위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 의견수렴 절차

담당부서 주도로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한시적 추진단 또는 자문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착용자인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성, 기능성, 장비 착용감, 계절감, 디자인 및 색상에 관한 불편사항과 개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정근무자, 청사보안근무자, 상황실 근무자 등 직무별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착용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복의 인상, 이미지, 상징성에 관한 평가를 확인하며, 필요시 법원이용자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용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되거나 시제품 제작 · 평가 등 추가 단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 추진단이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3. 추진의 우선순위

제복 개선의 우선순위는 단기 · 중기 ·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즉시 개선 가능한 품목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신발의 경우 검정색 운동화 지급이나 단화의 쿠션감 보강, 무전기 등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보조장비의 보완은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중기적으로는 하절기 간소복의 통일된 디자인 마련, 장비휴대 조끼의 시범운영 여부 검토, 근무유형별 일부 품목 차등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상징성과 기능성을 함께 반영한 제복체계 전반의 재정비 여부를 검토하되, 이는 예산확보와 규정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개선 범위가 단순한 품목 조정을 넘어 근무유형별 복제 차등화, 통일된 디자인 마련, 시제품 제작, 예산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별도 TFT 구성의 추진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법원보안관리대 제복 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완화하는 단기적 보완과, 조직의 상징성과 직무특성을 반영하는 중 · 장기적 정비를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제한된 예산과 행정역량 아래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원보안관리대의 직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제6장

결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본 연구보고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운영 차원의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 및 정책보고서 분석, 법관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조직운영 측면에서 직렬 구성의 다원성에 따른 사무분담의 편차와 승진 불균형이 지휘체계의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관리 측면에서는 각급 법원 보안관리대장의 총무과장 겸임 구조,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비상계획 업무 및 법원보안관리 업무의 통합 운영 체계로 인한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휘체계의 보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법정 및 법원 청사보안 현장에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 기준과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경찰관 도착 전까지 방어적 조치 위주로 대응하여 피해가 확대되거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정비가 요구된다.

법원의 보안관리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내부뿐만 아니라 법원청사 및 청사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대응의 제도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그간의 청사방호 대책이 시설물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법규의 제 ·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남겨지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존 청사방호 TFT에서 도출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유지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 법원 및 국내 유관기관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국 법원 보안 담당조직의 형태와 권한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보안업무의 수행 근거와 지휘체계, 유형력 행사 및 장비사용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다. 국내 기관의 사례 역시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비상대비 기능과 청사보안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 또는 보안업무 담당인력의 임무와 권한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검토 결과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개선방향이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적 근거의 명확화, 조직의 전문화, 권한행사의 구체화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한다.

제복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인터뷰 결과 하복 착용 시 무전기의 고정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요대에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킷을 입으면 장비 활용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롯하여 장비 노출이 용이한 디자인과 활동성 및 기능성 있는 소재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화는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검정색 운동화를 지급하거나 쿠션감을 추가하여 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법원경찰대 도입은 법원의 보안 · 질서유지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권력분립에 따른 제도 설계의 난점, 기존 수사 · 치안기관과의 권한 중복 및 역할의 혼선, 인력 ·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문성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법원경찰대 도입 논의를 장기적 선택지로 열어두되 우선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

특히 법원경찰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수사대상 범위의 특정이 곤란하고 경찰과의 권한 중복, 전문성 확보 및 책임구조 설계의 어려움 등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법원경찰대 논의는 수사권 포함 여부를 분리하여 중 ·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접근의 우선과제로 **첫째**, 법원보안관리대의 다원적 직렬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완화를 위하여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하여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직렬 간 정원 통합과 직급 간 정원 조정, 특히 보안관리직 7급 이상의 정원 확보 등 지휘 ·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인력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조직의 지휘계통 및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독립직제 도입 및 부(副)대장의 설치 등 지휘체계 보강을 위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규칙 및 운영예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관리관의 재난 · 안전관리 및 감독 기능과 법원보안관리 기능의 단일 통합 운영체계는 장점도 있으나 보안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 · 감독과 정책수

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성 · 비례성 · 최소 침해 등의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범화되어야 한다. 현행 기준의 포괄성은 현장 판단의 부담을 가중하고 사후 책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율 체계로 정비하되 유형력 행사 기준 및 절차, 위해성 보안장비의 종류 ·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검사 등을 위임 규정과 함께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이 법이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세부내용을 규범화한 '법원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복과 관련하여서는 법원 질서유지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성은 물론 활동성과 안전성, 기동성을 중시하는 현장 기능 중심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실무자 의견을 토대로 착용 편의성과 장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강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근무자의 신발(운동화 지급, 단화 쿠션보강) 등 즉시 개선 가능한 품목부터 추진하되 중 · 장기적으로는 법정근무(의전 · 권위 중심)와 청사보안(기동 · 활동 중심)의 차이를 반영하여 신발 · 하복 · 재킷(조끼) 등 일부 품목을 근무유형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색상 · 표식 등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는 통일적으로 설계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대외 인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업무별 조건과 환경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 · 소재 등 구성 방향을 설정하며, 예산 확보를 포함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위와 같은 현행 제도 내 실효화 조치(직렬 통합, 지휘체계 보강, 유형력 기준 및 절차 마련)를 선행하면서도 법원경찰대 도입은 법정 질서유지 및 청사보안뿐 아니라 소송절차상 집행(예: 불출석 증인 구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 소재탐지 촉탁 관련 업무, 감치 관련 집행 등)의 직접 수행 가능성 등과 연계되어 재판기능 지원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쟁점과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 축적하여 중 ·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김재광 · 양지수, 『민간경비업법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박영사 (2022)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법원행정처 송무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절차 해설』, (1991)

법원행정처,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 (2022)

_____, 『사법제도개혁 법률안 검토자료』, (1994. 3.)

_____, 『영상재판 매뉴얼』, (2023)

_____, 『외국사법제도연구(10) – 각국의 재판보조 시스템 –』, (201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25)

_____,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25)

_____,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22)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제1집』, (1993. 11.)

_____,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심의대상안건 검토자료 제2집』, (1993. 12.)

서현웅,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성낙인, 『헌법학』, (2022)

손흥수,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3)

_____,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홍정선, 『기본행정법』 제7판, 박영사 (2019)

【논문】

김민지, “권력으로 재생산된 몸과 패션디자인 표현연구”, 『패션비지니스』 제22권 제2호 (2018)

김지선,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3)

_____,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경찰학연구소 (2018)

백재은, “경찰 제복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0)

신형석,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치안정책연구소 (2021)

오관식, “법정경찰권”, 『고시계』 제36권 제5호, 국가고시학회 (1991)

이상훈, “국회경호 · 경비제도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27권 제1호 (2025)

최정명 · 장인호,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0호 (2022)

_____, “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 설치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2021)

최종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9권 제3호 (2014)

【연구 보고서 및 기타자료】

김주원,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13)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종합보고서』, (2024)

_____,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을 위한 TFT 종합보고』, (20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보안관리대 조직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2025)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 『사법부 보안강화 검토』, (2025)

이정회,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대검찰청 (2007)

전진영, 『국회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01호 (2024)

2. 국외 문헌

【단행본】

中山善房 · 古田佑紀 · 原田國男 · 河村博 · 川上拓一 · 田野尻猛 編,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第3版) 第6巻」, 青林書院 (2022)

河上和雄 · 小林充 · 植村立郎 · 河村博 編, 「注釈 刑事訴訟法(第3版) 第4巻」, 立花書房 (2012)

【논문】

Tilman Müller · Thomas Stollenwerk, “Befugnisse der Justizwachtmeister”, DRiZ (2024)

3. 언론기사 (2026. 3. 4. 최종확인)

KBS뉴스, ‘판사 눈앞에서 피고인 흉기피습, 법원 보안검색 구멍’ (2024. 8. 28.), https://www.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5977

네이트 뉴스, ‘창설 80주년 경찰청 제복 10년 만에 변경, 디자인 소재 개선’ (2024. 4. 14.), https://news.nate.com/view/20240414n05192

_____, ‘국회, 경호체제 개편시동…경위, 방호통합추진’ (2025. 3. 25.), https://news.nate.com/view/20250325n15480?utm

동아일보, 「'법원경찰대' 창설추진」, 석간 1면 (1989. 9. 2.),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890902&mode=19890902%2F0001646337%2F1

법률시대, '(국감자료) 법원 내 신변보호요청 10년간 총 1,197명' (2019. 10. 5.),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53&utm

법조신문, '법관 신변보호를' 박희승 의원 (2025. 3. 11.), 법원경비대법 대표발의, https://www.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3

소방방재신문, '논란속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사업' (2018. 3. 26.), https://www.fpn119.co.kr/93898?utm

아시아 경제, '세금 들여 왜 저리 촌스럽게, 한번 정하면 10년 새 경찰복 두고 와글와글' (2025. 7. 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2513541199861.

아이뉴스24, '경찰,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50대 유튜버 구속영장' (2024. 5. 10.), https://www.inews24.com/view/1718304

조선일보, '촌스럽다 논란 지우고 개편, 경찰 10년만에 새근무복 공개한다' (2025. 10. 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0/21/ZN3GB4HFE5ERTPASCUC6CXLHRI.

중부일보, '14년간 경찰 최하위 계급 보수받는 청원경찰 처우개선시급' (2025. 7. 3.),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7144

중앙일보, '짓밟힌 법치주의' (2025. 1.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608

한국경제신문, '법관 신변보호 요청 폭증… "판사 가만 안둬" 좌표찍기도' (2026. 2.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82257

4.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통계자료 / 위원회 통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0&boardNo=7611490&menuLevel=3&menuNo=120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2024. 4. 15.),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0415074810624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 '전국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만들어' 경찰청 보도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1B000001121590000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06. 1. 2.),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353&gubun=6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24. 1. 16.), 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580&gubun=6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보도자료 (2024. 10. 4.), 법원행정처, '법정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01&gubun=6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2019. 9. 16.),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247&gubun=3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08. 5. 26.), '해양경찰 제복이 새롭게 바뀝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296962&utm

법원게시판 (2016. 6. 16.),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민원실 등 근무공간의 안전강화 방안에 관한 안내말씀', http://gw.scourt.go.kr/intranet/archive/backup2016.nsf/0/5DD389CFA8DFE3FC49257FF200737271?opendocument&option=portal&type=portal&slocal=Y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새소식 / 제6기 신규 법원경비관리대과정 교육실시 (2011. 10. 31.), https://ed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150&gubun=41&page Index=60&scode_kname=&searchWord=&seqnum=287&utm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6호, 법원경비관리대(별정직, 9급상당)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공고 (2011. 7. 25.), https://chang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20&gubun=41&pageIndex=138&searchWord=&seqnum=461&utm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새소식 (2009. 4. 7.), https://slnam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12&gubun=41&pageIndex=85&searchWord=&seqnum=213&utm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정책자료 법령 매뉴얼

U.S. Marshals Service, "Judicial Security Fact Sheet",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fact-sheet?utm

U.S. Marshals Service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MS-AOUSC/GSA Court Security Agreements (2006-2020)", https://www.governmentattic.org/50docs/USMSmouCourtASec_2006-2020.pdf

Federal Bar Association, "Judicial Security Poses Continuing Challenge", https://www.fedbar.org/wp-content/uploads/2009/10/judicialsecurity-pdf-1.pdf?utm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28 U.S. Code § 561 -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561?utm

U.S. Marshals Service, “2023 Annual Report”, https://www.usmarshals.gov/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Pub-2-2023-Annual-Report.pdf?utm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tatement of Ronald L. Davis, Director, U.S. Marshals Service”, https://www.congress.gov/118/meeting/house/116837/witnesses/HHRG-118-JU08-Wstate-DavisR-20240214.pdf?utm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justice.gov/jmd/page/file/1489556/dl?inline=&utm

U.S. Marshals Serv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Policy Directives: Management”, https://www.usmarshals.gov/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united-states-marshals-service-policy-directives-management.pdf?utm

U.S. Department of Justice,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242 of the 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8”, https://www.justice.gov/archives/olp/file/1293286/dl?inline=&utm

U.S. Marshals Service, “Witness Security”,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witness-security?utm

U.S. Department of Justice, “Organization, Mission and Functions Manual: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https://www.justice.gov/doj/organization-mission-and-functions-manual-united-states-marshals-service?utm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udit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s Controls over Weapons, Munitions, and Explosives”, https://www.oversight.gov/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8-09/a1833.pdf

U.S. Marshals Service, “What to Expect When Visiting a Courthouse”, https://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what-expect-when-visiting-courthous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Law Enforcement: Federal Agencies Should Improve Reporting and Review of Less-Lethal Force”, https://www.gao.gov/assets/gao-22-104470

U.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s Updated Use-of-Force Policy”, 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22/05/23/departments_updated_use-of-force_policy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U.S. Courts Design Guide”,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u.s._courts_design_guide_2021.pdf?utm

U.S. Department of Justice, “1-16.000 - Department of Justice Policy on Use of Force”, https://www.justice.gov/jm/1-16.000-department-justice-policy-use-force

GOV.UK, “HM Courts & Tribunals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courts-and-tribunals-service?utm

GOV.UK,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https://www.gov.uk/government/ministers/secretary-of-state-for-justice

Legislation.gov.uk, “The Court Security Officers (Designation) Regulations 2005”,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5/588/made

田口真義, “裁判所の廷吏”, 「法学館 憲法研究所」, 2018, https://www.jicl.jp/articles/opinion_20181119.html

最高裁判所事務総長, 「下級裁判所の事務局等の組織について」(事務総長依命通達, 2025. 2. 14. 일부개정); 最高裁判所, “裁判所の組織について”, https://www.courts.go.jp/saiyo/siritai/soshiki/index.html

東京高等裁判所, “入庁時の所持品検査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courts.go.jp/tokyo-h/about/osirase/syojihinkensa/index.html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 · 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 · 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 · 라오스 ·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 · 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 · 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 · 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5. 9. 25.
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2025. 9. 26.
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2025. 12. 29.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현안 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2025. 8. 20.
현안 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2025. 9. 10.
현안 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2025. 12. 12.
현안 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2025. 12. 30.

▣ 202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2026. 1. 29.
2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2026. 1. 30.
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이현호	2026. 2. 5.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하	2026. 2. 12.
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2026. 4. 30.
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2026. 5. 18.
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6. 5. 27.
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2026. 6. 30.
9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6. 7. 16.
10	준거법의 지정, 조사 및 해석 · 적용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6. 7. 23.
11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6. 7. 24.
12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헌	2026. 7. 31.
현안 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2026. 3. 10.
현안 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6. 3. 19.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6년 7월 20일 인쇄
2026년 7월 31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414-7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4147
ISBN 979-11-6168-414-7